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68-01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연구

최종보고서

2017. 1.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 하

본 보고서를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월

주관연구기관명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연 구 기 간 : 2016.7.21. ~ 2017.1.16.

주관연구기관장 : 임 채 진

주관연구책임자 : 임 채 진

연구진

■ 책임연구원

임 채 진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회장,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연구원

이 남 규 :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윤 성 규 :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이 준 수 :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정 수 영 : 상명대학교 디자인학부 외래교수

■ 연구보조원

손 다 희 :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 보조원

박 다 슬 :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채 희 지 :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목 차

I. 연구개요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추진 방향	3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II. 사업추진방향 및 건립대상지 여건 검토

2.1. 박물관 이론 고찰	
2.1.1. 박물관 건립목적 및 추진방향	9
2.1.2. 전시 콘텐츠 검토	15
2.2. 건립 예상 부지 일반 현황	
2.2.1. 파주시	19
2.2.2. 강화군	29
2.2.3. 홍천군	37
2.2.4. 금산군	45
2.2.5. 서산시	54
2.2.6. 부여군	62
2.2.7. 음성군	70
2.2.8. 진안군	77
2.3. 건립 대상지 현황분석 및 사업여건	
2.3.1. 파주시	85
2.3.2. 강화군	88
2.3.3. 홍천군	91
2.3.4. 금산군	94
2.3.5. 서산시	96
2.3.6. 부여군	99
2.3.7. 음성군	101
2.3.8. 진안군	103

III. 박물관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3.1. 건립 기본구상	
3.1.1. 건립 기본방향	109
3.1.2. 건축 및 전시양식의 방향	110
3.2. 기능 및 규모검토	
3.2.1. 공간 기능 검토	116
3.2.2. 공간 규모검토 (스페이스 프로그램)	117
3.3.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 계획	
3.3.1. 공간구성 계획	119
3.3.2. 시설배치 계획	122
3.3.3. 평면도(안)	124
3.3.4. 외부경관 및 내부공간 예시	128
3.4. 전시컨텐츠 구상	
3.4.1. 전시계획의 기본방향	130
3.4.2. 전시물 확보 방안	135
3.5. 관리 및 운영계획	
3.5.1. 유사시설 운영조직 및 제반사항 검토	137
3.5.2. 운영조직 및 운영방식 산출	148
3.6. 사업비 투자계획	
3.6.1. 사업비 검토	152
3.6.2.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155
3.7. 향후 사업추진 방안	
3.7.1. 사업 추진 방식	156
3.7.2. 발주 방식 장·단점 비교	157
3.7.3.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사업의 발주 방식	157
3.7.4. 사업 추진 단계별 개요	159

IV.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4.1. 타당성 검토 개요

4.2. 정책적 타당성 검토

4.2.1. 정책적 타당성 검토	170
4.2.2. 기술적 타당성 검토	174
4.2.3. 법률적 타당성 검토	176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4.3.1. 재무적 타당성 검토	177
4.3.2. 제안 부지별 경제적 타당성 검토	182

V. 연구요약 및 제언

5.1. 연구 요약

5.1.1. 연구 배경 및 목적	189
5.1.2. 건립 기본계획	189
5.1.3. 사업비 투자계획 등	194
5.1.4. 건립 타당성 검토	196

5.2. 연구 제언

5.2.1. 정책 제언	198
5.2.2. 부지 선정에 따른 특성 반영 제언	199

㉸ 부록

1. 사례 분석	202
2. 관련 법규 사항	218
3. 사업추진방안별 프로세스	260

표 목 차

표 1.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후보지 현황	4
표 2. 도시지역의 박물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입지조건'의 조사	12
표 3. 도심외(교외) 지역의 박물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입지조건'의 조사	13
표 4. 파주시 위치	19
표 5. 파주시 기후현황	21
표 6. 파주시 연령별 인구구조	22
표 7. 파주시 주택관련 지표현황	23
표 8. 파주시 산업현황	24
표 9. 파주시 교육시설현황	24
표 10. 파주시 사회복지시설현황	25
표 11. 파주시 의료시설 현황	25
표 12. 파주시 문화체육시설현황	25
표 13. 파주시 문화재 현황	26
표 14. 파주시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27
표 15. 파주시 관광객 현황	28
표 16.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28
표 17. 강화군 위치	29
표 18. 강화군 기후현황	30
표 19. 강화군 연도별 인구구조	31
표 20. 강화군 연령대별 인구	31
표 21. 강화군 행정구역	32
표 22. 강화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32
표 23. 강화군 교육시설 현황	33
표 24. 강화군 사회복지 시설현황	33
표 25. 강화군 의료시설 현황	33
표 26. 강화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34
표 27. 강화군 문화재 현황	34
표 28. 강화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35
표 29. 강화군 관광객 현황	35
표 30. 강화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36
표 31. 홍천군 위치	37
표 32. 홍천군 기후현황	39
표 33. 홍천군 연령별 인구구조	40
표 34. 홍천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40
표 35. 홍천군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1
표 36. 홍천군 교육시설 현황	42
표 37. 홍천군 의료시설 현황	42
표 38. 홍천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42

표 39. 홍천군 문화재 현황	43
표 40. 홍천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43
표 41. 홍천군 관광객 현황	44
표 42. 홍천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44
표 43. 금산군 위치	45
표 44. 금산군 기후현황	47
표 45. 금산군 연령별 인구구조	47
표 46. 금산군 산업구조 변화	49
표 47. 금산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50
표 48. 금산군 교육시설 현황	50
표 49. 금산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51
표 50. 금산군 의료시설 현황	51
표 51. 금산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51
표 52. 금산군 문화재 현황	52
표 53. 금산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52
표 54. 금산군 관광객 현황	53
표 55. 금산군 박물관 현황	53
표 56. 서산시 위치	54
표 57. 서산시 기후현황	55
표 58. 서산시 연도별 인구구조	56
표 59. 서산시 연령대별 인구	56
표 60. 서산시 주택관련 지표현황	57
표 61. 서산시 행정구역	57
표 62. 서산시 교육시설 현황	58
표 63. 서산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59
표 64. 서산시 의료시설 현황	59
표 65. 서산시 문화체육시설 현황	59
표 66. 서산시 문화재 현황	60
표 67. 서산시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60
표 68. 서산시 관광객 현황	61
표 69. 부여군 위치	62
표 70. 부여군 수계현황	63
표 71. 부여군 기후현황	64
표 72. 부여군 연령별 인구구조	64
표 73. 부여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65
표 74. 부여군 농가인구 및 현황	65
표 75. 부여군 교육시설 현황	66
표 76. 부여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66
표 77. 부여군 의료시설 현황	66
표 78. 부여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67
표 79. 부여군 문화재 현황	67

표 80. 부여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68
표 81. 부여군 관광객 현황	69
표 82. 부여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69
표 83. 음성군 위치	70
표 84. 음성군 기후현황	71
표 85. 음성군 연령별 인구구조	72
표 86. 음성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72
표 87. 음성군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73
표 88. 음성군 교육시설 현황	74
표 89. 음성군 의료시설 현황	74
표 90. 음성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74
표 91. 음성군 문화재 현황	75
표 92. 음성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75
표 93. 음성군 관광객 현황	76
표 94. 음성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76
표 95. 진안군 위치	77
표 96. 진안군 기후현황	78
표 97. 진안군 연도별 인구구조	79
표 98. 진안군 연령대별 인구	79
표 99. 진안군 행정구역	80
표 100. 진안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81
표 101. 진안군 교육시설 현황	81
표 102.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82
표 103. 진안군 의료시설 현황	82
표 104. 진안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82
표 105. 진안군 문화재 현황	83
표 106. 진안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83
표 107. 진안군 관광객 현황	84
표 108. 진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84
표 109. 파주시 대상지 현황	85
표 110. 대상지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부지	86
표 111. 파주시 주요 축제 현황	87
표 112. 강화군 대상지 현황	88
표 113. 대상지 강화군 부지	89
표 114. 강화군 주요 축제 현황	90
표 115. 홍천군 대상지 현황	91
표 116. 대상지 홍천군 부지	92
표 117. 홍천군 주요 축제 현황	93
표 118. 금산군 대상지 현황	94
표 119. 대상지 금산군 부지	95
표 120. 금산군 주요 축제 현황	95

표 121. 서산시 대상지 현황	96
표 122. 대상지 서산시 부지	97
표 123. 서산시 주요 축제 현황	98
표 124. 부여군 대상지 현황	99
표 125. 대상지 부여군 부지	100
표 126. 부여군 주요 축제 현황	100
표 127. 음성군 대상지 현황	101
표 128. 대상지 음성군 부지	102
표 129. 음성군 주요 축제 현황	102
표 130. 진안군 대상지 현황	103
표 131. 대상지 진안군 부지	104
표 132. 진안군 주요 축제 현황	105
표 133. 규모검토	117
표 134. 지자체 제공부지에 대한 규모검토	118
표 135. 상설전시(인삼의 역사) 전시 내용	133
표 136. 상설전시(인삼의 과학) 전시 내용	134
표 137. 상설전시(인삼의 문화) 전시 내용	134
표 138. 유물 확보 방법	136
표 139.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구성	137
표 140. 관리·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138
표 141.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주요업무	140
표 142. 유사규모 박물관 현황	141
표 143. 유사규모 박물관 시설 면적	142
표 144. 유사규모 박물관 소장자료 현황	142
표 145. 유사규모 박물관 관람료 현황	143
표 146. 유사규모 박물관 관람료 할인 현황	143
표 147. 유사규모 박물관 인력운영 현황 1	144
표 148. 유사규모 박물관 인력운영 현황 2	144
표 149. 행정단위 및 규모별 운영인력 1인당 면적(㎡/명) 현황	146
표 150. 각 행정단위 및 규모별 운영인력 1인당 연간관람인원(명) 현황	147
표 151. 운영인력 규모	148
표 152. 운영인력 인건비 산출 1	149
표 153. 유사 규모 박물관의 운영비 2011년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150
표 154. 연간 수익 추정	151
표 155. 조달청 2013년-2015년 전시시설 건축공사비 분석	152
표 156. 나라장터 전시공사비 분석	153
표 157. 건축 규모 및 예산 검토	154
표 158. 설계 시공 일괄발주 방식 소요일정	156
표 159. 설계 시공 분리발주 방식 소요일정	156
표 160. 발주 방식 비교	157
표 161.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공모 분리 시 장단점	160

표 162.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공모 통합시 장단점	160
표 163. 건축설계 공모방식	161
표 164. 정책적 타당성 검토	170
표 165. 한국 인삼(고려삼)의 세계적인 상징성과 이미지	171
표 166. 한중 FTA 체결시 인삼산업의 기회 및 위협요인	172
표 167. 소비자의 인삼제품 구매 시 애로사항	172
표 168. 인삼산업의 대내적 환경변화	173
표 169. 인삼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	173
표 170. 기술적 타당성 검토 항목	175
표 171. 법률적 타당성 평가항목	176
표 172. 연간 수익 추정	179
표 173. 재무성 분석 종합결과	180
표 174. 재무성 분석 결과	181
표 175.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182
표 176.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 연간방문객	183
표 177. 건립예상부지 인근 주요 관광객 현황	184
표 178. 연간 수익 추정	185
표 179.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 연간방문객	185
표 180.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186
표 181.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186
표 182. 공간 규모 검토(안)	192
표 183. 상설전시(인삼의 역사) 전시 내용	193
표 184. 상설전시(인삼의 과학) 전시 내용	193
표 185. 상설전시(인삼의 문화) 전시 내용	193
표 186. 운영인력 규모	194
표 187. 건축 규모 및 예산 검토	195
표 188.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195
표 189.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196
표 190. 건립예상부지 인근 주요 관광객 현황	197
표 191.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197
표 192. 정관장 인삼박물관 개요	202
표 193. 정관장 인삼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03
표 194. 영주시 인삼박물관 개요	204
표 195. 영주시 인삼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05
표 196.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개요	206
표 197.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07
표 198.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개요	208
표 199.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09
표 200. 서울시 농업박물관 개요	210
표 201. 서울시 농업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11
표 202.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개요	212

표 203.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13
표 204. 베이징 중국농업박물관 개요	214
표 205. 베이징 중국농업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15
표 206. 일본 식과농박물관 개요	216
표 207. 일본 식과농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17
표 208. 설계발주방식의 장단점 비교	264
표 209. 입찰종류에 따른 장단점 비교	268
표 210. 턴키제도 장단점 비교	275
표 211. 현상설계와 턴키방식 비교검토	278
표 212. 전시설계 발주 비교 검토	278

그림 목 차

그림 1. 고려인삼 브랜드 강화 및 생산 소비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	2
그림 2.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프로그램 전략	3
그림 3. 최적의 부지선정을 통한 박물관건립	4
그림 4. 건립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연구 프로세스	5
그림 5. 박물관의 역사와 개념	10
그림 6. 박물관 부지에 따른 성격	12
그림 7.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	16
그림 8. 파주시 2013년 월별 기상현황(기온)	21
그림 9. 파주시 2013년 월별 기상현황(강수)	21
그림 10. 파주시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22
그림 11. 강화군 2015년 월별 기상현황(기온)	30
그림 12. 강화군 2015년 월별 기상현황(강수)	30
그림 13. 홍천군 년도별 기상현황(강수)	39
그림 14. 홍천군 2014년 월별 기상현황(기온)	39
그림 15. 홍천군 2014년 인구구조	40
그림 16. 홍천군 년도별 인구추이	40
그림 17. 금산군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48
그림 18. 충청남도 시군 GRDP	48
그림 19. 서산시 연도별 평균 기온 및 습도	55
그림 20. 서산시 연도별 기상현황 (강수)	55
그림 21. 파주시 대상지 위치 및 현황	85
그림 22. 강화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88
그림 23. 홍천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91
그림 24. 금산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94
그림 25. 서산시 대상지 위치 및 현황	96
그림 26. 부여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99
그림 27. 음성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101
그림 28. 진안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103
그림 29.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109
그림 30.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실내외 공간 프로그램(안)	110
그림 31. Tomioka-city-hall in japan / Kengo-kuma	110
그림 32. Cluny House in Singapore / Neri & Hu Design	111
그림 33. Jixi Museum in china / China Architecture Design Institute Co.	111
그림 34. Nelson Atkins Museum of Art / Steven Holl	112
그림 35. Gallery of Los Angeles Museum of the Holocaust / Belzberg Architects	112
그림 36. Organic Farm, Hebei, China, 2016 Architecture Site Area: 6,000 sqm	113
그림 37. 짧고 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이미지 중심의 전시연출	114
그림 38.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및 음향 메시지 전달	115

그림 39. 일본 동경 국립자연사박물관 / 동경 미래과학관	115
그림 40.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공간구성 기본구상	116
그림 41. “역사, 전통성” 부여 참고 이미지	119
그림 42. 공간구성 개념도	119
그림 43.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축계획 방향 및 공간구성 전략	120
그림 44. 외부공간 계획	121
그림 45. 시설배치 프로세스	122
그림 46.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시설배치도(안)	123
그림 47.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1층 평면도(안)	124
그림 48.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2층 평면도(안)	125
그림 49.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지하층 평면도(안)	126
그림 50. 관람 동선 계획	127
그림 51.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조감도 예시안	128
그림 52. 내부투시도 1. 체험서비스동 2층	129
그림 53. 내부투시도 2. 상설전시동 1층	129
그림 54. 짧고 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이미지 중심의 전시연출	130
그림 55. 주요 전시컨텐츠	132
그림 56. 인력 운영 조직	148
그림 57. 건축, 전시 분리 발주시 사업추진 일정	164
그림 58. 타당성 조사 프로세스	169
그림 59. 인삼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171
그림 60. 고려인삼 브랜드 강화 및 생산 소비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	189
그림 61.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190
그림 62. 사례 : Tomioka-city-hall in japan / Kengo-kuma	190
그림 63.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공간구성 기본구상	191
그림 64. 주요 전시컨텐츠	192
그림 65.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과정	260
그림 66. 발주 방식별 설계자 선정 과정	263
그림 67. 현상설계 설계자 선정절차	265
그림 68. 입찰 방식별 설계자 선정 과정	269
그림 69. 일반 공개입찰	270
그림 70. 기술 가격 분리 입찰	271
그림 71. PQ(+PP)+입찰	272
그림 72. 지명경쟁입찰	273
그림 73.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발주절차	276
그림 74. 현상설계와 턴키방식 비교검토	277
그림 75. 계약체계	279
그림 76. 업무범위	280
그림 77.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	281
그림 78. 설계, 시공 일괄발주방식	282
그림 79.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 + CM관리방식	283
그림 80. 설계, 시공 일괄발주방식 + CM관리방식	284

I. 연구 개요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추진 방향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개요

1.1.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배경

고려인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강식품으로, 전세계에 역사적으로 그 효능과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천년을 넘게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단일품목 중 1위의 효자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인삼생산과 인삼제품의 고급화와 홍보 및 소비 증진 노력으로 중국의 인삼산업은 우리 고려인삼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인삼산업의 발달은 세계적으로 인삼시장의 확대라는 기회이자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고려인삼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시장에서는 현대의 다양한 건강식품들의 개발과 소비로 인해 고려인삼의 소비는 더욱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고려인삼의 우수한 효능과 역사 문화를 국내외 많은 기존의 소비계층은 물론 새로운 소비층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고려인삼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건립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 고려인삼 종주국 위상 확립을 위한 종합전시박물관 건립

- 최근 세계 인삼시장의 경쟁심화, 다양한 대체재의 유통 및 소비, 소비계층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인삼종주국의 위치가 위협받음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건립을 통해 국내외 많은 관람객에게 고려인삼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

○ 인삼 생산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강화

- 고려인삼의 다양한 효과와 효능을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관람객의 방문과 체험을 통한 고려인삼의 친근함과 건강함을 홍보

○ 인삼수출증대를 위한 고려인삼 브랜드 강화

- 세계시장에서 경쟁으로 인한 중국인삼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고려인삼의 역사, 과학과 문화를 전달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 콘텐츠의 이미지를 제고
- 인삼은 농산물 단일품목으로는 수출액 1위의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임, 세계 인삼시장확대(연평균 성장률 약8%)에 따른 인삼수출증대와 새로운 인삼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의 장 필요

○ 미래 건강산업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 고려인삼을 기초로 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수요확대와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건강 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제품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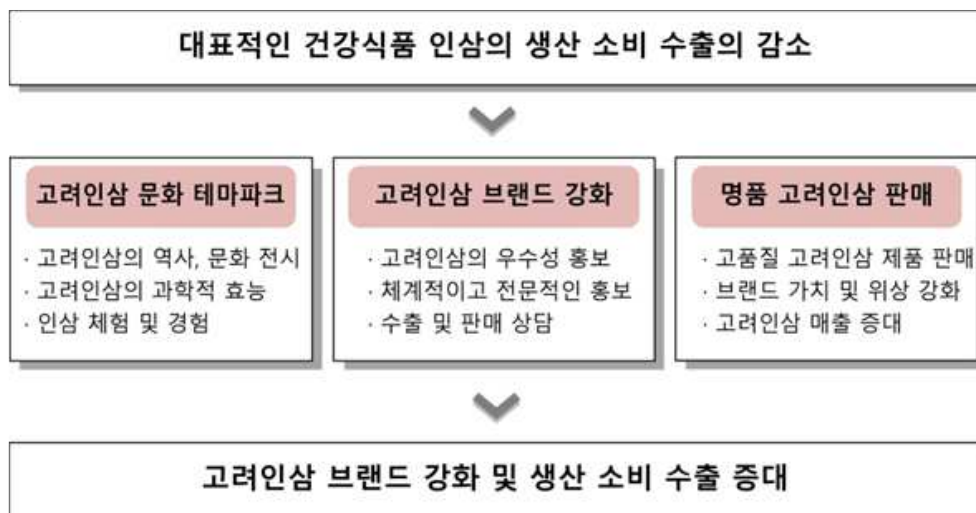


그림 1. 고려인삼 브랜드 강화 및 생산 소비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

1.2. 연구의 추진 방향

1) 사업 개요 (사업초기,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전단계 개요)

- 사업기간 : 6개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시행자 : aT 또는 별도 법인 (전문 대표기관 중심) 검토
(자체운영이 가능한 수익모델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주체)
- 건립지역 : 관광 밀집지역, 해외바이어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검토
- 사업규모 : 연면적 5,000㎡, 총 사업비 400억원 (부지비용 제외)
- 부지선정 : 지자체 부지 기부채납(무상임대) 대상지 검토
(제안된 해당부지의 타당성 비교 후 최적의 대상지 선정)

2) 연구의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 고려인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
- 고려인삼 우수성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개선
- 온라인 정보가 아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홍보 공간 마련
-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고려인삼의 명품 이미지 및 브랜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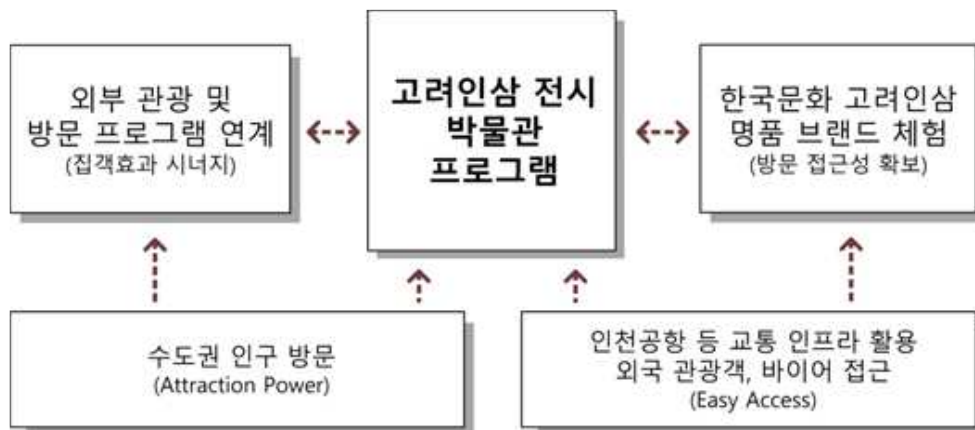


그림 2.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프로그램 전략

2) 부지 선정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는 아래 지자체들에 의해 제안된 부지를 상대로 적절한 부지를 검토하여 성공적인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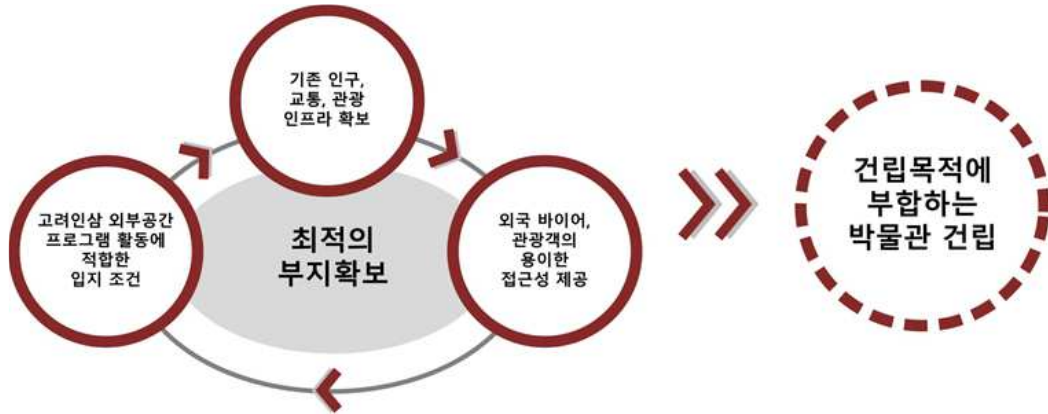


그림 3. 최적의 부지선정을 통한 박물관건립

시도	시군	면적(m ²) 건폐율/용적율 가능 면적	부지 제공	입지조건
경기도	파주시	11,692 40% / 125% 5,800	무상임대 (홍보관 부지)	임진각 관광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30,000 20% / 50-100% 6,000	매입	역사 관광 단지
강원도	홍천군	1,557 80% / 1,300% 16,100	무상임대 (20년)	도시/일반 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
충청남도	금산군	3,942 80% / 200% 6,300	무상임대 (30년)	일반상업지역 (인삼헬스케어특구)
	서산시	25,476 40% / 100% 10,100	무상임대	계획관리지역 (공군비행장 정문앞)
	부여군	4,000 40% / 100% 1,600	무상임대 (군유지)	계획지구
충청북도	음성군	5,149 40% / 100% 2,000	무상임대 (20년)	계획관리지역
	진안군	72,968 40% / 100% 29,000	무상임대 (20년)	계획지구 용역중

표 1.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후보지 현황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주요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연구”에 부합하는 건립의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건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박물관의 성격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부지선정, 건축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과 규모, 운영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건립 배경 및 목적 검토
- 건립 방향 및 규모 검토
- 건립부지의 타당성 검토
- 건축 및 전시 기본계획안 검토
- 운영 계획 수립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건립배경 및 목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건립방향, 건립 규모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부지선정과 부지선정에 따른 건축 및 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향후 이러한 규모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의 큰 골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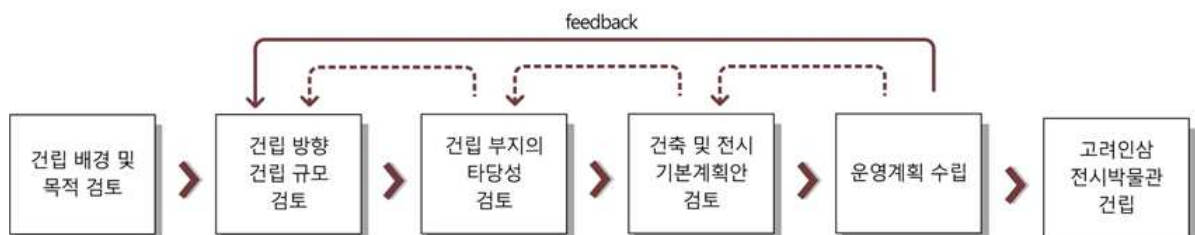


그림 4. 건립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연구 프로세스

II. 사업추진방향 및 건립대상지 여건 검토

2.1. 박물관 이론 고찰

- 2.1.1. 박물관 건립목적 및 추진방향
- 2.1.2. 전시 콘텐츠 검토

2.2. 건립 예상 부지 일반 현황

2.3. 건립 대상지 현황분석 및 사업여건

II. 사업추진방향 및 건립대상지 여건 검토

2.1. 박물관 이론 고찰

2.1.1. 박물관 건립목적 및 추진방향

□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박물관 세대론)

과거시대 왕족과 귀족의 소장품에서 시작한, 초기형태의 박물관을 1세대 박물관이라 부른다. 과거시대의 특정계층만의 박물관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전시 계몽의 역할을 하는 박물관을 2세대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까지 현대 박물관의 대부분은 2세대 박물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전제로 하는 교육, 연구, 레저, 오락의 역할을 수행하는 박물관을 3세대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보물창고와 다름없던 1세대 박물관이나 이를 단순 나열하여 공개 전시하는 2세대 박물관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박물관은 도태되어 가고, 시민사회의 요구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앞서 고민하는 박물관이 성공적 박물관으로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새로 건립되거나 새 단장을 준비하는 많은 박물관들이 기존의 전시와 더불어 새로운 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박물관의 역사와 개념은 시대를 두고 지속적으로 변화, 진화하고 있다. 과거의 박물관과는 달리 현대의 박물관은 문화행위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그 기능 또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박물관 개념의 변화와 시대사적 흐름은 건물의 기능과 형태, 공간의 구조 등에도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는 최근의 미술계 박물관과 이공계 박물관의 변화 양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미술계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관점과 양식, 기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졌고 이러한 현대미술의 추이가 그대로 박물관 공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시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공간자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공계 박물관의 경우는 첨단기술의 변화속도가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고 그것을 수용하는 공간도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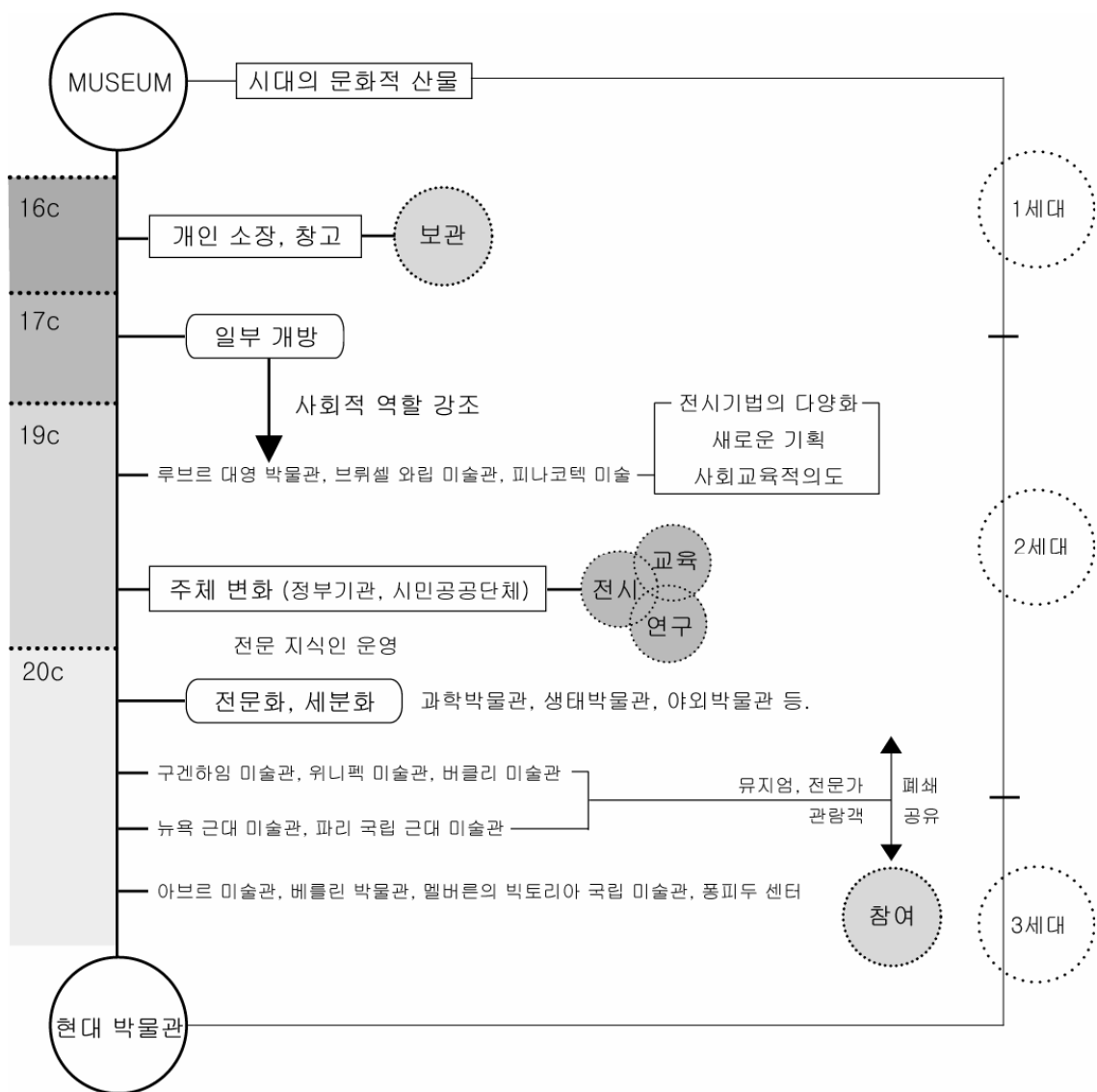


그림 5. 박물관의 역사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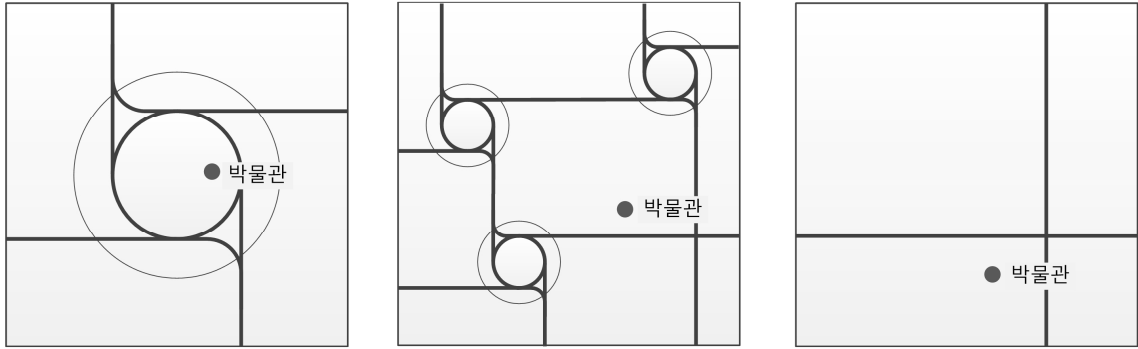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의 증진을 위한 인삼의 긍정적인 정보 전달에 목적이 있으므로, 인삼을 주제로 하는 역사계 형태의 박물관으로서 인삼 관련 유물과 정보를 단순 수집 연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삼에 대한 친근함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까지 연계되는 일련의 선순환 과정을 위한 인삼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체험, 경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삼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더불어 최신의 전시매체와 연출기법을 활용한 쉽고 명확한 인삼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성격과 추진방향

○ 교외지역 박물관의 성격과 특성

“Museum architecture” (박물관 건축과 환경, 1995,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면 박물관의 부지에 따른 박물관의 성격구분에서 도시의 박물관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문화적 시도가 다양하게 필요한 반면, 전원지역에서의 박물관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자연(일상탈출)으로 돌아가자”와 같은 모토를 활용한 박물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업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과 긴장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박물관은 도시에서 떨어져 교외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동차와 도로의 발달로 인해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박물관은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앞선 설명에서와 같이 도시를 벗어나 경험하고자 하는 오락, 레저, 휴식의 개념과 더불어 유적지(유적지는 도심지에 있을 수도 교외에 있을 수도 있다.) 인근의 박물관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의 역사유물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도시지역에서의 박물관
1. 테라스 하우스
 2. 도심광장
 3. 공원
 4. 공원
 5. 문화시설이 있는 곳
 6. 도심 권역에 위치한 박물관
- b. 교외(전원)지역에서의 박물관
1. 부수적인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박물관
 2.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이 있는 박물관
- c. 특정 지역과 관련된 박물관

그림 6. 박물관 부지에 따른 성격

주요기준	세부기준	고려할 사항	'도시 기반적 입지조건'의 특성
일반사항	행정	책임 기관의 영향력 및 독립성 의사 결정 속도 : 행정집행 능력	인구 지역 기관의 권한
	재정	박물관 설립 및 운영 비용 보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의 도시 (또는 지역)의 재정능력 평가	연도별 예산 과세 능력 부채
	경제	경제력 평가 (지방세와 국세의 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	1인당 평균 총 생산액
인구 구조	박물관 관람경향	잠재적인 관람객의 수를 의미해줄 수 있는 사회 계층의 분석 (또는 박물관에 대한 자세 분석)	자영업자 학자 사무 근로자 육체 노동자 초,중,고생 및 대학생 실업자 (주부 및 연금 수령자) 인구의 연령 구조 관광객
지원 시설	문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평가 그 지역 기관의 문화에 대한 비용 지출 의사 평가	시설의 종류 수 능력 문화 '행사' 횟수 공공 기관의 1인당 문화 지출 비용
	교육	정규적으로 박물관을 방문하게 될 관람객의 대부분이 학생이므로, 교육기관도 고려한다.	기관의 종류 기관의 수 향후 전망
	과학	주변 지역의 과학 기관, 일부는 잠재적인 관람객이 될 수도 있고 일부는 박물관의 연구 작업을 보조할 수도 있다.	기관의 종류 기관의 수 향후 전망 개발 계획중인 추가 과학 시설

표 2. 도시지역의 박물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입지조건'의 조사

○ 부지선정시 고려사항

부지선정의 목적은 박물관의 건립 목적과 부합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건립 목적은 박물관이 수행해야 할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¹⁾

- 1) 그 지역의 문화적, 교육적 수준의 향상
- 2) 연구 및 출판의 중심 지향
- 3) 여가 활동의 중심지향

주요 기준	세부 기준	고려할 사항	'도시 기반적 입지조건'의 특성
경관 지원 시설	숲이나 물과의 인접성	관람객은 숲과 물이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경관에 매료된다.	삼림 및 해안/호수/강변과의 인접 정도
	공간의 활용 토지의 고저	여가 활동의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지를 분석한다. 식생 등의 지표조사 여가활동을 위한 부지로서의 적	토지의 용도 및 이용 가능성 고도면에서의 다양성
	기후	합성은 그 지형과도 관련되어 있다. 기후가 전시물에 미치는 영향 및	대기 분석
	문화	휴식과 여가의 관점에서 보는 기후에 대한 평가 문화적 흥미가 있는 지역에서의 관광객의 교통 집중도	일조량 온·습도 강우량(연간 일수) 문화적 매력의 유형 문화기관의 수 분포 방문객의 수 방문 횟수 향후 전망
	여가 및 오락	'도시 기반적 입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가 및 오락을 위한 주요 시설의 위치	시설의 유형 시설의 수 분포 방문객의 수 방문 횟수 향후 전망
거주 형태 향후 전망	인구밀집지역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또는 개발 지역의 위치	주택 단위의 수 밀도 향후 전망
	거주자	그 지역 주민의 여가 시간 및 주말 활동에 대한 윤곽	단거리 여행의 횟수여행 거리 여행 선호시기

표 3. 도심외(교외) 지역의 박물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입지조건'의 조사

1) 박물관 건축과 환경, 국립중앙박물관, 1995. p. 20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은 위의 세 가지 목적 중에 여가 활동의 중심지향을 하고 있다. 인삼컨텐츠에 관한 연관지역(금산, 부여 등)에서 관련 유물, 역사 자료등에 관한 박물관이 충분하게 존재하고, 고려인삼의 홍보전시관의 성격을 지향하는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은 방문객과 관광객, 소비계층에게 여가 활동의 중심지향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은 레저, 관광, 휴식, 관광상품으로서의 박물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관광, 휴식의 성격이 강화된 박물관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경우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으나, 각 지자체에서 제안된 부지들의 현황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에 존재하는 도심형 박물관이 아니라 교외형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외형 박물관은 도심형 박물관과 달리 연구, 수집, 전시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박물관의 성격보다는 레저, 오락, 문화체험의 성격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대부분이 관광객임을 고려하여, 휴일 주말 및 휴가철에 많은 관람객을 맞을 수 있는 지원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은 국내외 다양한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박물관과 관광명소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 매력적 관광상품으로서의 전시 및 체험 컨텐츠 구성

현재 국내의 인삼관련 박물관은 부여, 금산, 산청 등 인삼과 관련한 지역에 이미 건립되어 있다. 박물관의 성격 또한 해당 지역의 인삼관련한 역사문화를 다루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도 인삼과 관련한 인연이 있는 지역일 뿐 관광객을 유인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있는 현실이다. 또한 교외형 박물관으로서 관광객 및 방문객을 유인하는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경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종주국으로써의 위상확립, 국내외 소비층에 대한 적극적 스킨십을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단순한 박물관의 역할을 벗어나, 관람객들에게 적극적인 전시 및 체험 콘텐츠²⁾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2. 전시 콘텐츠 검토

1)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

“고려인삼 전시 박물관”의 성공적인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의 관람객을 이해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목적과 방법,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 많은 시설들이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새로 건립되는 전시시설들은 항상 새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새로운 콘텐츠는 과거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단순 진열형 전시라던가, 이미 익숙한 전시로 구성된 환경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 라는 것은 관람객이 전시를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접근과 해석으로 관람객들에게 전시경험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의 전시연출기법으로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첨단연출기법, 과거의 유물중심의 전시전개에서 나아가 관람객의 개인적 방문동기에 부합하면서 관람객 자신의 이야기와 공유 공감하여,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는 전시환경을 의미한다.

2)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금산군, 2014. 등이 연구된 바 있으며, 인삼제품의 판매, 역사문화체험, 문화예술과 연계한 휴식공간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인삼약초 건강체험관’의 주요시설로 , 스파탕, 한방찜질방, 건강진단실, 전통찻집, 가족형 객실, VIP객실, 인삼밭 등을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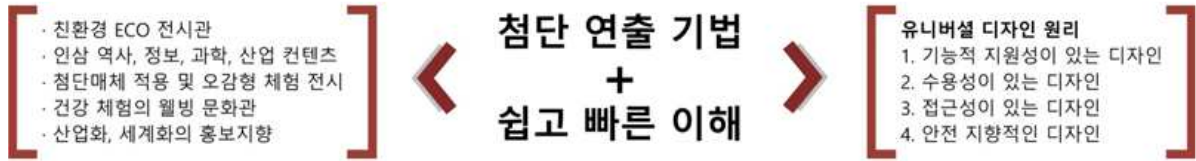


그림 7.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

인삼 관련 박물관은 이미 인삼 연고지에 충분한 콘텐츠가 도입되어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인 인삼산업의 부흥과 인삼종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을 고려하면, 기존의 인삼박물관이 지향하는 바와 다른 방향의 건립목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삼의 콘텐츠를 활용하되, 건립의 목적과 방향은 인삼을 친근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삼이라는 주제이외에도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고려인삼 전시 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와 경험을 통해 쉽게, 빠르게, 인삼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인삼관련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 나열형 정보보다는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이를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2) 전시 연출기법의 검토

현시점 대부분의 국내 유사 사례를 검토해 보면, 사업 추진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업사례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전시를 요구받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되는 전시물을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터치, 단순한 전시물의 반응, 전시메시지와 관계없는 거대한 인테리어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시연출기

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작용 반작용 수준의 인터랙티브에서 나아가, 관람객이 지닌 경험과 지식, 개인의 방문 목적 등 다양한 개인정보³⁾와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관람객이 전시메시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현해야 한다.

3) 전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절성 검토

- 관람피로를 예방하는 적절한 전시공간

전시가 전달하는 정보가 관람객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저해요인은 관람피로이다. 이러한 관람피로는 전시의 완성도가 높으면 억제되지만, 개인차가 큰 관계로 어쩔수 없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람피로를 적절하게 해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관람객이 관람피로에 따른 관람포기와 전시공간 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 전시 공간은 관람객의 관람동선과 관람피로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관람객이 전시정보와 원활한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전시의 맥락에 대한 강약조절을 통해 관람피로⁴⁾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제공되어야 한다.

4) 관람객의 관람만족(경험)을 위한 고민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관람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 번호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가진 특성과 개성 등 자아를 인식하고 전시메시지가 자신의 자아와 상호교류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개인을 의미한다.

4) 관람피로(Museum fatigue) 박물관에서 관람객이 느끼는 육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 피로를 의미한다. 정신적 피로는 실질적으로는 전시물에 대한 지루함, 지겨움을 의미한다. 적절한 완급조절을 통해 지루함을 제거하고 육체적 피로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전시에 대한 지루함은 육체적 피로를 빨리 느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우선 관람객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부분을 선행적으로 발견, 제거해 나가면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를 적절히 제거 또는 조절하지 않을 경우 관람객은 양질의 방문경험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구체적인 관람피로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5) 인삼정보의 전달과 인삼제품 소비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인삼관련 제품의 전시홍보가 건립의 주요 목적 이므로, 단순한 인삼관련 전시박물관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인삼관련 소비계층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인삼제품의 체험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시컨텐츠는 이러한 인삼관련 효능과 효과 등을 제품 소비로 연계하기 위한 충분한 인삼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시를 통한 인삼제품에 대한 친밀감을 인삼소비로 연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전시공간과 판매공간이 구성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인삼제품의 홍보와 체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2. 건립 예상 부지 일반 현황

건립 예상 부지는 파주시, 강화군, 홍천군, 금산군, 서산시, 부여군, 음성군, 진안군으로 현재까지 총 8개의 지자체 제공 부지가 있다. 해당 지역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2.1. 파주시

1) 자연 환경

○ 위치와 면적

- 파주시는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중서부, 경기도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서길이 약 30km, 남북길이 약 36km에 이르는 지역임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동단	적성면 적암리	동경 127° 01′	동서간 30km
	서단	탄현면 성동리	동경 126° 41′	
	남단	산남동	북위 37° 42′	남북간 36km
	북단	적성면 어유지리	북위 38° 07′	

표 4. 파주시 위치

○ 지형 및 지세

- 파주시의 지형은 장방형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로서 동부지역에는 감악산, 파평산, 고령산 등이 연결된 산지로 이루어져 있음
- 그 중에서 임진강 유역 주변의 용암대지를 따라 형성된 평지와 하천침식에 의해 형성된 수직절벽 그리고 협곡형태로 이루어져 국내의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음
- 파주시의 서쪽은 100~200m에 불과한 구릉성 산지로 대체로 평탄하며 이들

산지 사이로 침식평야 및 하천이 발달하여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음

- 표고 100m미만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80.1%로 총 538.71㎢이며 경사 15도 미만의 지역은 54.3%인 365.41㎢로 평탄하고 완만한 지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표고 100m 이하, 경사 15도 이하인 지역은 대부분 파주시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동측의 산악지역으로 인해 파주시 동측의 양주시 및 연천군 지역과의 연결을 저해함
- 파주시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대규모 유역권을 형성하는 한북정맥과 한남정맥 중 한북정맥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북정맥은 백두대간의 식개산에서 분기되어 백봉, 백암산 등을 거쳐 오두산에 이르는 총 223.6km의 산줄기임

○ 하천 및 수계

- 파주시의 주요 하천은 서측에 접한 한강과 파주시의 북동부에서 남서쪽을 관통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임진강이 있음
 - 장단일대의 사천과 문산 일대의 문산천이 임진강으로 합류되며 금촌지역을 통과하는 공릉천은 한강으로 직접 합류하여 서해로 유입됨
- 상수원으로는 임진강(51%)과 한강(49%)을 이용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로는 문산천과 공릉천이 각각 파주평야와 교하평야에서 이용됨

○ 기후

- 파주시는 한반도 중서부의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임
- 지리적으로 중위도에 속하고 4계절이 뚜렷한 전형적인 온대성 기후를 보이

며 우기인 7~8월에 강수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음

- 연평균 기온은 11.4°C로서 광역시 평균 14.4°C와 서울 평균 13.3°C보다 낮으며, 8월 평균기온은 24.2°C, 1월 평균기온 4.2°C로 연교차는 28.4°C임
- 연평균 강수량은 642mm이며 7, 8월의 강수량이 전체의 47.1%를 차지함
-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은 서풍이며, 계절별로 봄에는 서풍이 20.2%, 여름에는 북동풍이 17.1%, 가을에는 북동풍이 19.3%, 겨울에는 서풍이 23.9%를 나타냄

구분	평균기온(°C)	평균최고기온(°C)	평균최저기온(°C)	강수량(mm)	일조시간(시)
2010	10.6	16.6	5.6	1,827	1,913
2011	10.4	16.7	5.1	2,083	2,114
2012	10.9	17.2	5.4	1,436	2,484
2013	11.0	17.2	5.8	1,347	2,424
2014	11.4	17.8	5.9	642	2,524

표 5. 파주시 기후현황 (자료 : 파주시 통계연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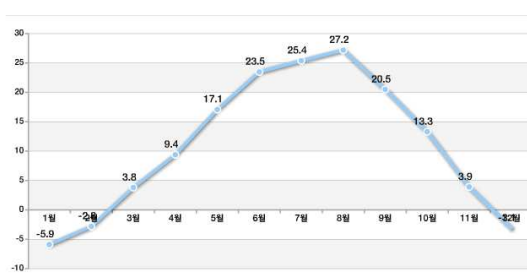


그림 8. 파주시 2013년 월별 기상현황(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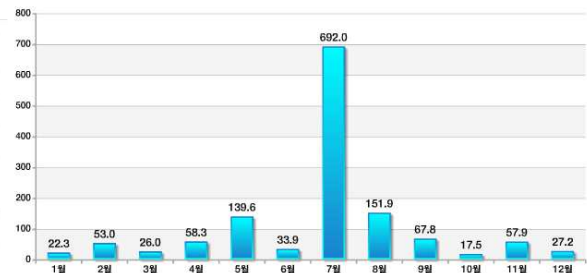


그림 9. 파주시 2013년 월별 기상현황(강수)

2) 인구 현황

○ 인구 기본 현황

■ 연령 계층별 인구

- 기존의 파주시는 인구가 정체된 중형의 인구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나 2000년

에 들어오면서 각종 산업단지계획 및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산연령인구가 전입하여 도시형인 성(星)형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의 경우 90년대 초에는 20~34세 정도의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30~44세 정도의 생산인구 구성비가 커지고 있음. 또한 10~24세의 인구구성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금촌, 교하 등의 주된 유입 연령인구는 30~39세와 그들의 자녀세대인 0~9세로 나타남
-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북부 일부지역은 생산연령의 인구유입은 거의 없고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변화만을 나타내고 있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11,164	381,125	355,632	378,790	394,201	401,718	411,348
0~14세	60,275	60,711	65,433	68,453	70,733	70,695	70,793
	19.4%	15.9%	18.4%	18.1%	17.9%	17.6%	17.2%
15~64세	216,948	279,651	251,741	269,257	279,772	285,235	292,546
	69.7%	73.4	70.8%	71.1%	71.0	71.0%	71.1%
65세이상	33,941	40,763	38,458	41,080	43,696	45,788	48,009
	10.9%	10.7%	10.8%	10.8%	11.1	11.4%	11.7%

표 6. 파주시 연령별 인구구조, 외국인 제외 (자료 : 파주시 통계연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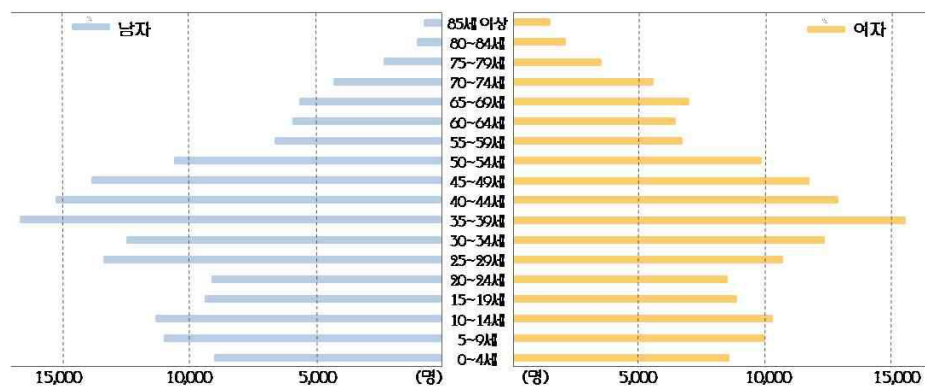


그림 10. 파주시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3) 주택 현황

-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 도시화에 따른 가구의 분화현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운정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중임
- 1999년 세대당 인구 3.00인/세대에서 2014년 2.46인/세대로 핵가족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의한 젊은 노동층의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구	300,059	311,625	319,395	331,504	364,223	387,273	402,126	410,158	420,526
세대수 (세대)	115,130	120,152	124,351	130,118	145,561	155,446	160,813	163,648	166,901
세대당인구 (인/세대)	2.54	2.52	2.51	2.48	2.44	2.44	2.45	2.45	2.46
주택수(호)	83,377	85,171	90,458	98,380	111,786	126,670	131,462	134,036	137,240
1천명당 주택수	277.9	273.3	283.2	296.8	306.9	327.1	326.9	326.8	326.4

표 7. 파주시 주택관련 지표현황 (자료 : 파주시 통계연보, 2015)

4) 산업 현황

○ 지역총생산 및 소득수준 현황

- 파주시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경기도내 GRDP 증가율 4위, 1인당 GRDP 7위
- 2012~2013년 외국인 투자유치 2조4,170억원(경기도 외자유치 금액의 85%)

■ 첨단제조업과 창조산업에 특화

- 디스플레이, 전자악기, 전자카드, 금고, 유리, 책등의 제조업에 특화
- ICT산업, 문화/출판/예술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
 - 산업단지 17개, 총 257만평, 분양률 98%로 경기도내 비중 높음

■ 북부권 유통서비스업의 중심지화

- 신세계 사이먼, 롯데 등의 입지로 유통서비스업의 중심지화

구분	파주시	경기도
GRDP증가율(전년비) 1인당 GRDP(2010)	22.2% 26,634천원	11.6% 20,079천원
전자악기제조업 비중	62.4%	26.1%
전자카드제조업 비중	31.5%	25.5%
디스플레이 비중	39.5%	32.5%
금고제조업 비중	61.5%	66.0%
유리제품 비중	51.0%	25.7%
제책업 비중	36.7%	49.7%

표 8. 파주시 산업현황 (자료 : 2014 파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5) 교육 및 사회복지, 의료기관 현황

○ 교육시설

- 2015년 현재 파주시에는 유치원 99개소, 초등학교 57개소, 중학교 24개소, 고등학교 17개소가 있음
- 2015년 4월 현재 학생수는 총 67,810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 58,146명에 비해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학교수 역시 2010년 171개소에서 2015년 4월 현재 202개소로 지난 5년간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생수
학교수	99	57	24	17	67,810(명)

표 9. 파주시 교육시설현황 (자료 : 파주시 통계연보, 2015)

○ 사회복지시설

- 2014년 현재 파주시 총 사회복지 시설수는 80개소에 수용인원 1,666인으로 아동시설 5개소, 노인시설 69개소, 장애인시설 4개소, 여성시설 2개소로 구성됨

구분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총 수용인원
복지시설(개소)	5	69	4	2	1,666(인)

표 10. 파주시 사회복지시설현황 (자료 : 파주통계, 2014)

○ 의료시설

- 2015년 기준 파주시의 의료시설은 총 349개소로 대부분 금촌동에 분포함
- 인구증가에 대비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시설과 보건소의 확충이 요구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수합계
병원수(개소)	1	9	158	1	14	95	1	69	1	6	7	349

표 11. 파주시 의료시설 현황, 보건의료원 이하 제외 (자료: 파주시 통계연보, 2015)

6) 문화체육 시설현황

- 2015년 현재 파주시의 문화체육시설은 영화관 4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6개소, 도서관 12개소 등이며, 공공체육시설은 61개소, 신고체육시설은 464개소에 달함

구분	영화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3	6	13	61	464

표 12. 파주시 문화체육시설현황 (자료: 파주시 통계연보, 2015)

7) 문화재 및 관광객 현황

○ 문화재 현황

- 파주시 지정문화재는 2015년 기준 총 51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4점, 지방 지정문화재 28점, 문화재자료 9점 등이 분포하며, 등록문화재 5점이 있음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	2
		명승	-
		사적	11
		천연기념물	1
		중요민속자료	-
		중요무형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8
		기념물	18
		민속문화재	-
		무형문화재	2
	문화재자료		9
	소 계		51
	등록문화재		5

표 13. 파주시 문화재 현황 (자료 : 파주시 통계연보, 2015)

○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 파주시의 주요 관광지는 약 24개로 대상지 인근에는 임진각관광지, 공릉관광지(하니랜드), 쇠꼴마을, 제3땅굴, 파주삼릉, 황희선생유적지 등이 있음
- 대상지 인근 관광객 수는 2015년 기준 6,659,901명(83.18%)임

관광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릉관광지(하니랜드)	130,502	111,052	110,431	111,511
도자기나라	12,790	20,536	13,172	19,283
두루미박물관	11,810	10,411	9,908	9,912
베스트밸리	59,336	60,143	58,845	58,063
벽초지수목원	362,236	444,413	231,134	322,856
산머루농원	9,799	31,691	81,701	59,973
서서울컨트리클럽	88,378	84,758	78,847	98,762
서원밸리골프클럽	119,407	49,805	59,133	61,859
소울원	-	-	-	11,220
쇠꼴마을	60,577	62,631	37,656	48,299
스킨애니버서리	-	316,440	198,912	30,025
영집궁시박물관	9,255	8,469	7,363	5,660
우농타조농장	47,035	45,578	25,066	27,069
유일레저	287,016	259,864	126,732	20,668
울곡선생유적지	65,581	54,243	67,484	71,766
임진각관광지	5,265,532	6,683,867	6,308,098	5,800,219
제3땅굴	971,646	791,968	715,019	602,669
카트랜드	86,070	53,581	29,090	34,844
통일전망대	678,703	500,874	361,911	373,722
파주삼릉	40,736	147,734	46,229	48,419
파주영어마을	109,204	149,794	99,731	97,075
파주임실치즈스쿨	59,756	59,937	51,000	43,852
황포돛배	23,165	47,511	16,274	-
황희선생유적지	54,497	57,022	49,273	48,784
총계	8,553,031	10,052,322	8,783,009	8,006,510

표 14. 파주시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2016)

- 파주시 관광객은 매년 8,000,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2013년 기준 10,052,322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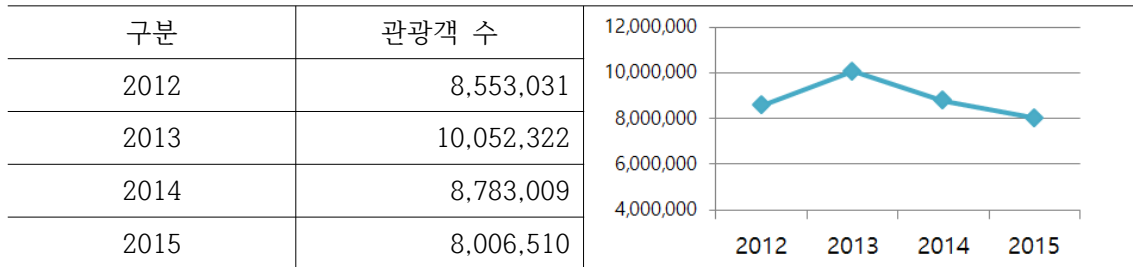


표 15. 파주시 관광객 현황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객통계, 2016)

8)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2016년 현재 파주시에는 한국근현대사박물관, 화폐박물관 등 13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기산미술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등 4개의 미술관이 있음

구분	사업장명	주소
박물관	화폐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93-89
	세계민속악기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63-26
	한국근현대사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85
	영집공시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국원말길 168
	타임앤블레이드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41
	한향림옹기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96-43
	파주 나비나라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500번지 8호
	두루미사료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초리골길 278
	한길책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6
	세계광물보석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93
	열화당책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광인사길 25
	피노키오뮤지엄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52 (문발동)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48-38
미술관	기산미술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186번길 59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53
	블루메미술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30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2

표 16.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자료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2.2. 강화군 일반현황

1) 자연 환경

○ 위치와 면적

- 강화군은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중앙부 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상으로는 수도 서울을 기점으로 북쪽의 북한과 접하고,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큰 섬으로 강화대교 및 초지대교를 통하여 내륙과 연결됨
- 강화본도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류를 경계로 북한의 연백군과 개풍군이 인접하여 있으며, 동쪽은 염하를 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서쪽은 서해바다, 그리고 남쪽은 대규모 해안의 갯벌을 지나 옹진군의 여러 섬들과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음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동단	길상면 황산도	동경 125° 33′	동서간 16km
	서단	서도면 말도리	동경 126° 2′	
	남단	길상면 동검리	북위 37° 31′	남북간 27km
	북단	양사면 북성리	북위 37° 45′	

표 17. 강화군 위치

○ 기후

- 강화군의 기후는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띠며 같은 위도내의 내륙지방보다 따뜻하고 일조량이 길고 섬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항상 불고 일교차가 큼
- 이로 인해 기온의 측면에서 한여름인 7~8월에는 평균 최고 30°C 이상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철에는 최저 기온이 평균 -10°C까지 내려가나 대륙성 기후에 비해 그 폭이 작음

- 2012년 월별 평균기온은 8월에 25.7°C로 가장 높았고, 12월에 -5.4°C로 가장 낮았으며, 강수량은 7~8월 전체 강수량의 55.7%로 집중적으로 나타남

구분	평균기온(°C)	평균최고기온(°C)	평균최저기온(°C)	강수량(mm)	일조시간(시)
2009	11.4	16.4	6.7	1,448	2,234
2010	10.9	15.7	6.4	1,759	1,931
2011	12.2	15.5	6.2	2,063	2,095
2012	10.7	15.6	6.0	1,357	2,232
2013	10.8	15.6	6.2	1,273	2,212
2014	11.8	16.9	7.0	605	2,256

표 18. 강화군 기후현황 (자료 : 강화군 통계연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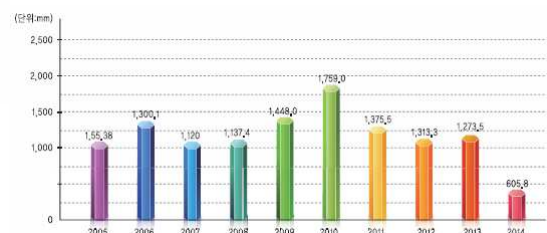


그림 11. 강화군 2015년 월별 기상현황(기온)

그림 12. 강화군 2015년 월별 기상현황(강수)

2) 인구 현황

○ 인구 기본 현황

- 강화군의 인구는 2004년 이후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감소 후 2012년 다시 소폭 증가함
- 강화군의 외국인 인구수는 2005년 241명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60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인구				인구밀도 (인/㎢)	인구증가율 (%)	65세 이상
	계	남	여	외국인			
2007	66,897	33,154	33,312	431	163	1.31	14,477
2008	67,871	33,650	33,737	484	165	1.46	15,139
2009	67,597	33,504	33,545	548	164	0.09	15,564
2010	67,668	33,526	33,578	564	165	0.10	16,101
2011	67,339	33,388	33,391	560	164	-0.48	16,579
2012	67,358	33,415	33,337	606	164	0.02	17,363
2013	67,358	33,875	33,483	623	164	0.00	
2014	67,775	33,657	33,461	657	163	0.36	18,081

표 19. 강화군 연도별 인구구조 (자료 : 강화군 통계연보, 2015)

○ 연령대별 인구분석

- 강화군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가 58.3%인 39,11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강화군의 인구구성에 있어 노동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26.9%로 강화군은 이미 초고령사회(20.0% 이상) 임을 보여줌

세대수	인구수	19세 이하	20~64세	65세 이상
30,184	67,121	9,925	39,115	18,081

표 20. 강화군 연령대별 인구, 외국인 세대수 및 인구수 제외 (강화군 통계연보, 2015)

3) 행정 구역

- 강화군 행정구역은 총 411,351㎢ 로서 읍, 면별 면적구성비는 교동면 11.5%(47.151㎢), 삼산면 11.1%(45.628㎢), 화도면 10.3%(42.3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면적		군				반	자연 마을
	km ²	구성비(%)	읍	면	리			
					행정	법정		
2014	411,433	100	1	12	186	96	1,245	313
강화읍	24,966	6	1	-	27	9	284	29
선원면	21,390	5	-	1	14	7	115	26
불은면	31,439	8	-	1	12	8	83	22
길상면	35,065	9	-	1	15	6	97	23
화도면	42,358	10	-	1	17	9	68	23
양도면	35,482	9	-	1	11	8	77	28
내가면	29,794	7	-	1	14	5	64	17
하점면	36,206	9	-	1	19	8	97	25
양사면	26,459	6	-	1	10	5	53	21
송해면	22,363	5	-	1	12	7	72	26
교동면	47,174	12	-	1	17	13	127	39
삼산면	45,624	11	-	1	12	7	87	24
서도면	13,107	3	-	1	6	4	21	10

표 21. 강화군 행정구역 (자료 : 강화군 통계연보, 2015)

4) 주택 현황

- 강화군의 세대 수는 2014년 현재 30,184세대로 2006년 26,170세대에 비해 4,014세대(15.3%) 증가함
- 2006년 세대당 인구 2.50인/세대에서 2014년 2.22인/세대로 매년 세대당 인구수가 감소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구	65,839	66,897	67,871	67,597	67,668	67,339	67,358	67,358	67,118
세대수 (세대)	26,170	27,252	28,210	28,506	29,055	29,071	29,308	29,713	30,184
세대당인구 (인/세대)	2.50	2.44	2.39	2.35	2.31	2.30	2.28	2.25	2.22
주택수(호)	23,125	23,067	23,299	24,107	24,123	24,716	25,491	28,301	29,460
1천명당 주택수	351.2	344.8	343.3	356.6	356.5	367.0	378.4	420.1	438.9

표 22. 강화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자료 : 강화군 통계연보, 2015)

5) 교육 및 사회복지, 의료기관 현황

○ 교육시설

- 2015년 현재 강화군에는 유치원 21개소,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9개소가 있음
- 2015년 4월 현재 학생수는 총 7,445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 9,560명에 비해 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생수
학교수	21	22	10	9	7,445(명)

표 23. 강화군 교육시설 현황 (자료 : 강화군 통계연보, 2015)

○ 사회복지시설

- 2015년 현재 강화군 사회복지 시설수는 44개소에 수용인원 1,323인으로 아동시설 1개소, 노인시설 36개소, 장애인시설 7개소, 여성시설 0개소로 구성됨

구분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총 수용인원
복지시설(개소)	1	36	7	0	1,323(인)

표 24. 강화군 사회복지 시설현황 (자료 : 강화군 통계연보, 2015)

○ 의료시설

- 2015년 기준 강화군의 의료시설은 총 55개소로 대부분 강화읍에 분포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수합계
병원수(개소)	0	1	16	2	2	14	0	17	1	12	14	55

표 25. 강화군 의료시설 현황, 보건의료원 이하 제외 (자료: 강화군 통계연보, 2015)

6) 문화체육 시설현황

- 2015년 현재 강화군의 문화시설은 영화관 0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3개소, 도서관 2개소 등이며, 공공체육시설은 8개소, 신고체육시설은 27개소에 달함

구분	영화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0	3	2	8	27

표 26. 강화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자료: 강화군 통계연보, 2015)

7) 문화재 및 관광객 현황

○ 문화재 현황

- 강화군 지정문화재는 2015년 기준 총 112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3점, 지방 지정문화재 79점 등이 분포하며, 등록문화재는 없음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	11
		사적 및 명승	16
		천연기념물	5
		중요무형문화재	1
		중요민속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27
		무형문화재	3
		기념물	36
		민속문화재	1
		문화재자료	12
소 계		112	
등록문화재		-	

표 27. 강화군 문화재 현황 (자료 : 강화군 통계연보, 2015)

○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 강화군의 주요 관광지는 약 11개로 대상지 인근에는 강화역사박물관, 갑곶돈대 등이 있음
- 대상지 인근 관광객 수는 2012년 기준 654,997명(24.6%)임

관광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강화역사박물관	-	229,417	-	230,514
갑곶돈대	-	67,750	-	47,556
고려궁지	-	101,957	-	98,752
광성보	-	193,713	-	226,702
덕진진	-	31,307	-	34,970
초지진	-	100,988	-	107,567
전등사	-	376,227	-	475,401
보문사	-	245,388	-	246,844
마니산	-	323,288	-	336,644
함허동천	-	209,087	-	189,362
총계	1,991,890	1,879,122	1,980,868	1,994,312

표 28. 강화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2011·2013년 세부자료 없음
(자료 : 강화군 통계연보, 2015)

- 강화군의 관광객은 매 년 1,800,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2014년 기준 1,994,312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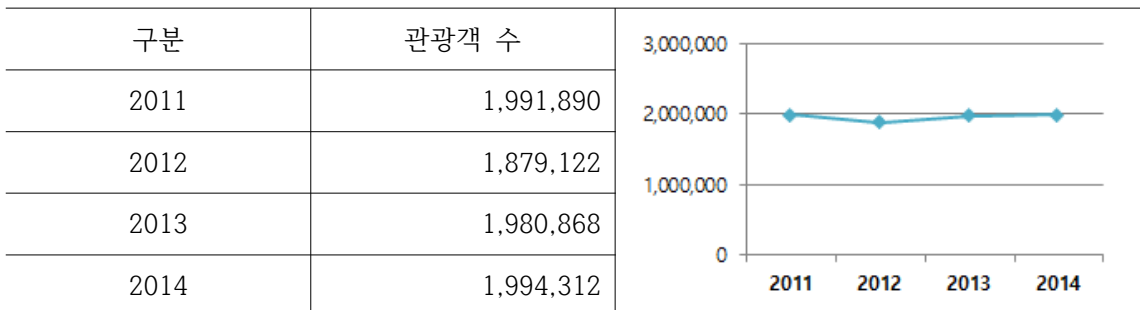


표 29. 강화군 관광객 현황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객 통계)

8)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2016년 현재 강화군에는 강화역사박물관 등 3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전원미술관 등 2개의 미술관이 있음

구분	사업장명	주소
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
	무애원도예박물관 (휴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119
	옥토끼 우주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미술관	더리미미술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421-5
	전원미술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502-2

표 30. 강화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자료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2.3. 홍천군 일반현황

1) 자연 환경

○ 위치와 면적

- 홍천군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백두대간의 지맥으로 협곡상태를 이루는 산악지대로서, 동서길이 약 89.2km, 남북길이 약 39.4km에 이르는 지역임
- 홍천군은 10개의 읍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면적은 1,818.9km²로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군으로서 임야 85.2%, 밭 5.9%, 논 3.7% 등으로서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음
- 동북쪽으로 인제군과 양양군, 남쪽으로 횡성군과 평창군,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북쪽으로 춘천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울~속초, 춘천~원주간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임
- 차령산맥의 중심부와 태백산맥의 서측사면의 일부에 해당되어 사면의 경사가 가파르고 험준하며, 해발고도 150m 에서 1,000m 내외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산지지형으로서 동부와 북부지역은 1,000m 이상의 고산들이 연이어 분포함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동단	내면 명개리	동경 128° 51′	동서간 89.2km
	서단	서면 동막리	동경 127° 32′	
	남단	남면 시동리	북위 37° 32′	남북간 39.4km
	북단	두촌면 장남리	북위 37° 56′	

표 31. 홍천군 위치

○ 하천 및 수계

- 홍천지역의 하계망은 지방하천 1개와 준용하천 33개로서 편마암류와 안산암

류의 분포지역에서는 수지상(樹枝狀) 수계를 보이거나 지계곡(支溪谷)의 발달이 적은 편이고, 화강암류의 분포지역에서는 수지상 또는 방사상(放射狀) 수계를 보이면서 지계곡이 많이 발달함

- 홍천지역의 대부분 하천들은 홍천강으로 유입되어 북한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풍천리천은 화촌면 풍천리의 가락재에서 발원하여 송정리에서 홍천강으로 유입되는데 이 계곡을 따라 56번 국도가 개설되어 교통을 크게 원활히 함
- 내린천은 내면의 오대산과 두로봉 사이의 안부(鞍部)에서 발원한 수계로, 인제군 현리 허박다리 앞에서 소양강과 합류하여 하천유역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음

○ 기후

- 홍천군은 강원도 서남부지역으로서 태백산맥의 서측 경사면의 산간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산악지형의 기복이 크게 나타나 한서(寒暑)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이루고 있음
- 기온은 바다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대륙성기후로서 특히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여름철에는 오호츠크기단에 의한 높새(Föhn)현상으로 한발(旱魃)이 심한 편임
- 홍천지역의 년평균 기온은 10.0℃이고 1월 평균 기온 -6.1℃, 8월 평균기온 24.0℃로서 연교차가 심하며 최고기온은 40.5℃(1938.7), 최저기온 - 27℃(1941.1)를 기록함
- 연평균 강수량은 1,295.5mm로서 내면과 서석면 등 산악지방은 높은 해발고도 때문에 지형성강우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으며 평균기온이 낮아 식물생육기간이 짧은 고랭지 기후를 나타냄

구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일조시간(시)
2010	10.9	35.2	-23.9	1,305.5	1,760.7
2011	10.7	36.0	-22.5	1,639.6	1,935.5
2012	10.6	37.9	-22.2	1,277.8	2,307.4
2013	10.8	34.6	-24.1	1,302.7	2,247.8
2014	11.7	36.1	-19.9	703.6	2,326.8

표 32. 홍천군 기후현황 (자료 : 홍천군 통계연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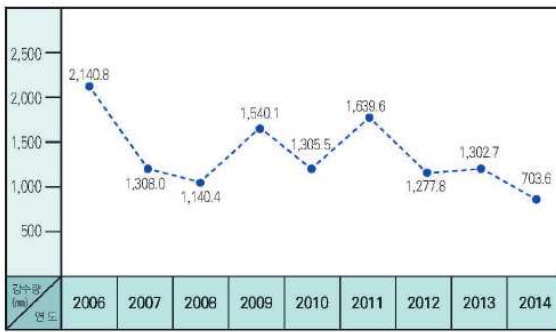


그림 13. 홍천군 년도별 기상현황(강수)



그림 14. 홍천군 2014년 월별 기상현황(기온)

2) 인구 현황

○ 인구 기본 현황

- 홍천군의 인구는 2014년 현재 70,451명으로 2009년 69,606명으로 845명(1.2%) 증가함
- 홍천군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0세 이상 14세 이하의 인구가 2009년 10,004명에서 2014년 8,113명으로 1,891(18.9%)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09년 12,825명에서 2014년 14,400명으로 1,575(12.3%) 증가함
-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2014년 20.5%로 초고령사회(20.0%)에 진입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69,606	69,893	69,899	69,727	70,638	70,451
0~14세	10,004	9,590	9,271	8,766	9,312	8,113
	14.4%	13.7%	13.3%	12.6%	13.2%	11.5%
15~64세	46,777	47,115	47,104	47,109	47,919	47,938
	67.2%	67.4%	67.4%	67.6%	67.8%	68.0%
65세이상	12,825	13,188	13,524	13,852	13,407	14,400
	18.4%	18.9%	19.3%	19.8%	19.0%	20.5%

표 33. 홍천군 연령별 인구구조, 외국인 제외 (자료 : 홍천군 통계연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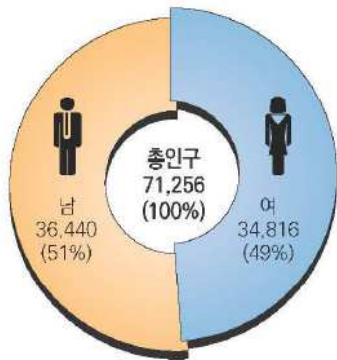


그림 15. 홍천군 2014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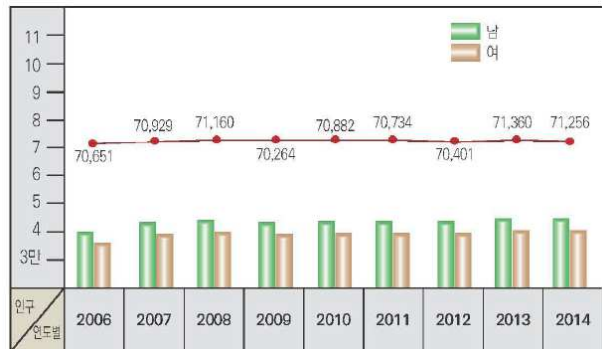


그림 16. 홍천군 년도별 인구추이

3) 주택 현황

- 홍천군의 세대 수는 2014년 31,183세대로 2009년 28,707세대에 비해 2,476세대(8.63%) 증가함
- 2009년 주택수 27,274호에서 2014년 29,116호로 1,842호(6.75%) 증가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구	70,264	70,882	70,734	70,401	71,360	71,256
세대수 (세대)	28,707	29,280	29,648	29,894	30,885	31,183
세대당인구 (인/세대)	2.4	2.4	2.4	2.4	2.3	2.3
주택수(호)	27,274	26,433	27,163	27,983	28,562	29,116
1천명당 주택수	388.2	372.9	384.0	397.5	400.3	408.6

표 34. 홍천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자료 : 홍천군 통계연보, 2015)

4) 산업 현황

- 홍천군의 산업대 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현재 사업체수 5,092개소, 종사자수 23,908명으로 업종별로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08개소)이 33.5%, 종사자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4,818명)으로 20.15%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4년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24	312	1.31%
광업	3	27	0.11%
제조업	342	2,506	10.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99	0.4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20	184	0.77%
건설업	283	2,060	8.62%
도매 및 소매업	1,398	3,195	13.36%
운수업	405	1,132	4.73%
숙박 및 음식점업	1,708	4,818	20.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	177	0.74%
금융 및 보험업	59	760	3.1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9	456	1.9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5	621	2.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5	692	2.8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2	1,553	6.50%
교육 서비스업	218	1,912	8.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7	1,551	6.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3	729	3.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73	1,124	4.70%
합계	5,092	23,908	100.0%

표 35. 홍천군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자료 : 홍천군 통계연보, 2015)

5) 교육 및 의료기관 현황

○ 교육시설

- 2015년 현재 홍천군에는 유치원 25개소, 초등학교 25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7개소가 있음

- 2015년 4월 현재 학생수는 총 8,031명으로 2010년 9,300명에 비해 1,269명 (13.6%) 감소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생수
학교수	25	25	11	7	8,031(명)

표 36. 홍천군 교육시설 현황 (자료 : 홍천군 통계연보, 2015)

○ 의료시설

- 2015년 기준 홍천군의 의료시설은 총 62개소로 대부분 홍천읍에 분포함

구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수 합계
병원수 (개소)	1	1	28	1	3	15	-	13	1	8	18	62

표 37. 홍천군 의료시설 현황 (자료: 홍천군 통계연보, 2015)

6) 문화체육 시설현황

- 2015년 홍천군의 문화시설은 영화관 2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0개소, 도서관 1개소 등이며, 공공체육시설은 102개소, 신고체육시설은 75개소에 달함

구분	영화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2	-	1	102	75

표 38. 홍천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자료: 홍천군 통계연보, 2015)

7) 문화재 및 관광객 현황

○ 문화재 현황

- 홍천군 지정문화재는 2015년 기준 총 33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2점, 지방 지정문화재 21점 등이 분포하며, 등록문화재 2점이 있음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	11
		사적 및 명승	-
		천연기념물	1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5
		무형문화재	-
		기념물	6
		문화재자료	10
		민속자료	-
소 계		33	
등록문화재		2	

표 39. 홍천군 문화재 현황 (자료 : 홍천군 통계연보, 2015)

○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 홍천군의 주요 관광지는 11개로 대상지 인근에는 주요 관광지가 없음

관광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리산자연휴양림	39,284	-	-	-	-
대명비발디컨트리클럽(퍼블릭)	51,502	-	-	-	-
대명비발디파크	2,405,043	-	-	-	-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월드	665,418	-	-	-	-
대명비발디파크 오션월드	1,243,466	-	-	-	-
삼봉자연휴양림	68,725	-	-	-	-
팔봉산관광지	113,935	-	-	-	-
홍천생명건강과학관	21,858	-	-	-	-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42,680	-	-	-	-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	7,820	-	-	-	-
수타사	48,946	-	-	-	-
총계	4,708,677	4,042,975	4,714,249	4,460,399	4,146,520

표 40. 홍천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2011-2014년 세부정보 없음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홍천군 통계연보, 2015)

- 홍천군의 관광객은 매 년 4,000,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2014년 기준 4,146,52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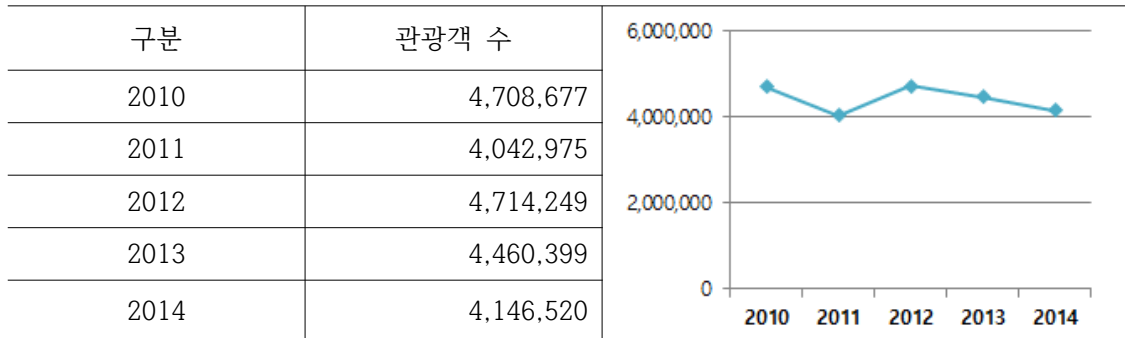


표 41. 홍천군 관광객 현황 (자료 : 홍천군 통계연보, 2015)

8)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2016년 현재 홍천군에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등 2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미술관은 없음

구분	사업장명	주소
박물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마리소리길 207
	홍천향토사료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로 18

표 42. 홍천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자료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2.4. 금산군 일반현황

1) 자연 환경

○ 위치와 면적

- 금산군은 한반도 한강이남지역의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충청남도 최남단에 위치
- 대전 및 충북(영동군, 옥천군), 전북의 5개군(완주군, 무주군, 진안군)과 논산 시와 인접해 있으며,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의 중앙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영·호남 지역의 관문도시임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동단	부리면 방우리	동경 127° 38′	동서간 24km
	서단	진산면 행정리	동경 127° 19′	
	남단	남일면 신동리	북위 35° 58′	남북간 23km
	북단	복수면 지량리	북위 36° 16′	

표 43. 금산군 위치

○ 지형 및 지세

- 금산군의 지형·지세는 전체적으로 남서부 및 북동부가 높고 중앙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1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 동쪽에는 서대산(904m), 서쪽에는 서대봉(759m), 대둔산(878m), 남쪽에는 기봉(537m), 북쪽에는 안평산(374m), 만인산(537m)을 중심으로 400~900m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음
- 표고분석 결과 전체 200m 이상이 전체 면적의 71.5%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표고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사는 20% 이상이 70.6%로 나타나 높은 경사도를 나타내고 있음

- 동국여지승람에는 '산이 지극히 높다'라고 금산의 지형을 표현하고 있으며, 작은 산능선이 이루는 산악지형 사이로 분지마을을 형성하고 있음

○ 하천 및 수계

- 금산군의 하천은 100%가 금강 수계이며 1개의 국가하천, 33개의 지방2급 하천, 136개의 소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약 16.8%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 진안, 무주군에서 발원한 금강본류는 부리면, 제원면을 지나 충북 영동군으로 유출되며, 금강의 지류인 봉황천, 기사천, 금산천, 조정천이 이에 합류됨
- 금산군의 5대 하천으로는 옥천군으로 흐르는 서화천과 영동군으로 흐르는 금강의 젓줄인 천내리의 천내강, 대전광역시로 흐르는 유등천, 논산시로 흐르는 벌곡천, 남이면 건천리를 지나 완주군으로 흘러가는 장산천이 있음

○ 기후

- 금산군은 남부 내륙형 기후지역으로서 최근 10년간 평균 기온은 11.9°C이며, 연평균 최고기온은 33.7°C, 연평균 최저기온은 -14.9°C로 충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교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 연평균 강수량은 1,339.3mm이며, 같은 기간 충남평균 대비 강우량이 높게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산군 전체 강우량의 50% 이상이 6~8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평균습도는 66.5%로 충남평균 73.0%에 비해 건조한 편이며, 일조시간은 2,290.0h로 충남 평균(1,943.6h) 보다 일조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구분	평균기온(°C)	평균최고기온(°C)	평균최저기온(°C)	강수량(mm)	일조시간(시)
2012	11.1	17.6	5.6	1,434	2,050
2013	11.8	18.4	6.2	996	2,065
2014	12.1	18.7	6.4	1,131	1,984
2015	12.6	18.8	7.1	877	2,022

표 44. 금산군 기후현황 (자료 : 금산군 통계연보, 2015)

2) 인구 현황

○ 인구 기본 현황

- 2015년 기준 금산군의 총 인구수는 56,417명이며, 세대수는 25,154세대, 인구밀도는 97.8인/k㎡임
- 금산군의 인구규모는 전국 인구수의 0.1%, 충남 인구수의 2.7%를 차지하며, 충남 7개 군 가운데 6번째 인구규모로 청양군(1.6%) 다음으로 가장 낮은 인구규모임
- 금산군의 인구규모는 2000년 64,785명에서 2015년 기준 56,417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세대 수는 2000년 22,478세대에서 2015년 25,154세대로 11.9% 증가하였음

구분	2005	2010	2013	2015
계	58,378	56,555	55,441	54,879
0~14세	8,162	7,091	6,408	5,776
	14.0%	12.5%	11.6%	10.5%
15~64세	38,772	36,528	35,363	34,776
	66.4%	64.6%	63.8%	63.4%
65세이상	11,444	12,936	13,670	14,327
	19.6%	22.9%	24.7%	26.1%

표 45. 금산군 연령별 인구구조, 외국인 제외 (자료 : 금산군 통계연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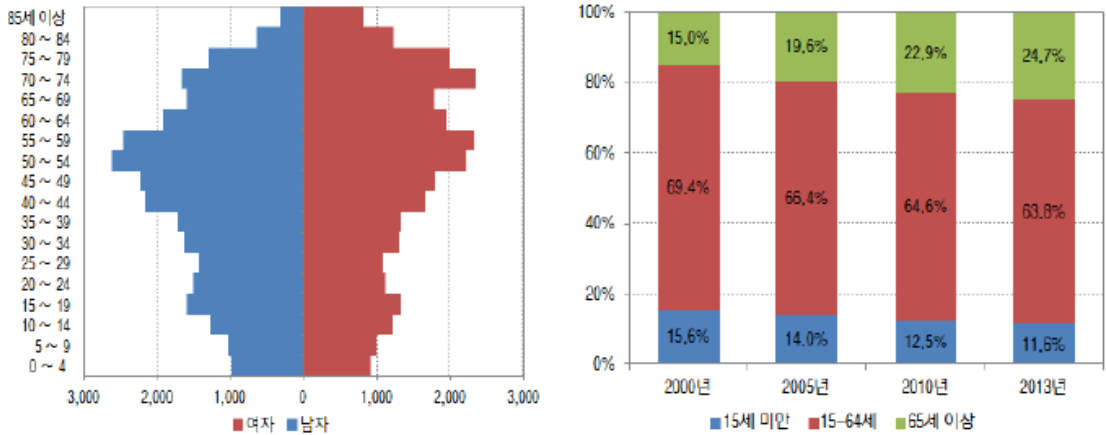


그림 17. 금산군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자료 :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2015)

3) 산업 현황

○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구조 현황

■ 지역내총생산

- 금산군의 지역총생산액은 2011년 기준 1조7,283백만 원(당해년 가격 기준)으로 충청남도 지역 총생산액(84조 8817억 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충남평균의 GRDP는 4조015백만원이며, 금산은 충남에서 11번째 규모, 군부에서는 5번째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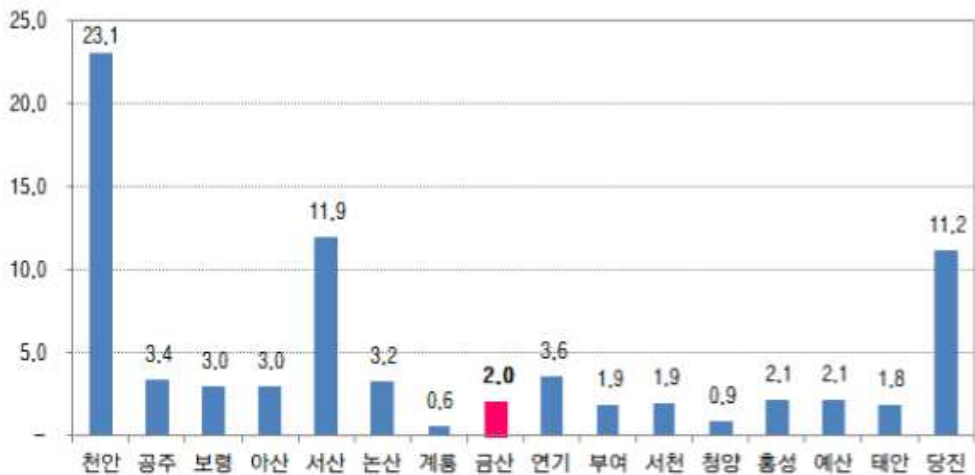


그림 18. 충청남도 시군 GRDP (자료 :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2015)

■ 산업구조 현황

- 2013년 금산군 산업구조를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차 산업 30.6%, 3차 산업 42.4%로 높은 반면에 2차 산업은 27.0%로 타산 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금산군의 1차 산업 구성비는 30.6%로 충남의 20.7% 보다 약 9.9%정도 높으며 3차 산업의 구성비는 충남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충남에 비해 1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산군의 산업구조 변화는 2000년 이후 1차 산업의 구성비는 줄어드는 반면 2차 산업, 3차 산업의 구성비는 점차 늘어나고 있음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충남	1차산업	33.0	29.5	23.9	20.7
	2차산업	19.5	22.9	23.8	26.4
	3차산업	47.5	47.6	52.4	52.9
	합계	100.0	100.0	100.0	100.0
금산	1차산업	47.8	40.7	34.6	30.6
	2차산업	16.9	21.3	25.0	27.0
	3차산업	35.4	38.0	40.4	4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표 46. 금산군 산업구조 변화 (자료 :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2015)

4) 주택 현황

- 금산군의 세대 수는 2012년 24,607세대로 2006년 23,512세대에 비해 1,095세대(4.66%) 증가함
- 2006년 주택수 21,274호에서 2012년 24,633호로 3,359호(15.8%) 증가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57,209	57,578	57,036	56,804	56,671	55,166	56,417
세대수 (세대)	24,012	24,410	24,435	24,607	24,737	24,913	25,154
세대당인구 (인/세대)	1.0	2.4	2.3	2.3	2.3	2.2	2.2
주택수(호)	21,953	21,491	23,277	24,633	24,637	24,701	25,126
1천명당 주택수	383.8	373.3	408.1	433.6	434.7	447.7	445.3

표 47. 금산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자료 : 금산군 통계연보, 2015)

5) 교육 및 사회복지, 의료기관 현황

○ 교육시설

- 2015년 현재 금산군에는 유치원 17개소,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있음
- 2015년 4월 현재 학생수는 총 14,473명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5년 19,679명에 비해 3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생수
학교수	17	17	8	4	14,473(명)

표 48. 금산군 교육시설 현황 (자료 : 금산군 통계연보, 2015)

○ 사회복지시설

- 2015년 현재 금산군 총 사회복지 시설수는 25개소에 수용인원 470명으로 아동시설 3개소, 노인시설 20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여성시설 1개소로 구성됨

구분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총 수용인원
복지시설(개소)	3	20	1	1	470(인)

표 49. 금산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 : 금산군 통계연보, 2015)

○ 의료시설

- 2015년 기준 금산군의 의료시설은 총 69개소로 대부분 금산읍에 분포함

구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부속 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수 합계
병원수 (개소)	-	1	35	3	14	15	1	1	9	8	69

표 50. 금산군 의료시설 현황 (자료: 금산군 통계연보, 2015)

6) 문화체육 시설현황

- 2015년 현재 금산군의 문화시설은 영화관 1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1개소, 도서관 5개소 등이며, 공공체육시설은 26개소, 신고체육시설은 36개소에 달함

구분	영화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1	1	5	26	36

표 51. 금산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자료: 금산군 통계연보, 2015)

7) 문화재 및 관광객 현황

○ 문화재 현황

- 금산군 지정문화재는 2015년 기준 총 41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5점, 지방지정문화재 16점, 문화재자료 20점 등이 분포하며, 등록문화재 1점이 있음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	1
		사적 및 명승	1
		천연기념물	2
		중요민속자료	-
		중요무형문화재	1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8
		기념물	5
		민속문화재	-
		무형문화재	3
	문화재자료		20
소 계		41	
등록문화재		1	

표 52. 2015년 금산군 문화재 현황 (자료 : 금산군 통계연보, 2015)

○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 금산군의 주요 관광지는 약 6개로 대상지 인근에는 칠백의총, 금산인삼관 등이 있음
- 대상지 인근 관광객 수는 2014년 기준 886,332명(89.55%)임

관광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산산림문화타운	167,047	88,164	79,984	45,898
서대산드림리조트	105,293	22,821	-	-
에딘버러 컨트리클럽	82,151	65,421	61,251	57,508
칠백의총	174,889	45,994	49,558	53,544
금산인삼관	2,973,376	750,761	827,870	832,788
대둔산	234,418	79,355	-	-
총계	3,737,174	1,052,516	1,018,663	989,738

표 53. 금산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 금산군 관광객은 2011년 3,737,174명 이상이였으나 2012년 이후 약 1,000,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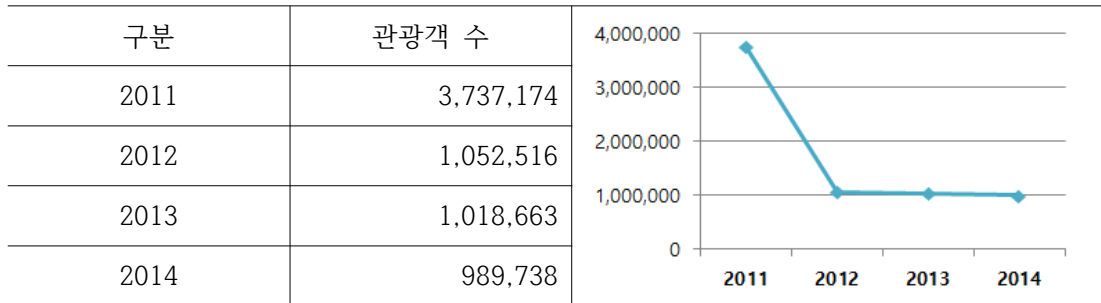


표 54. 금산군 관광객 현황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객통계, 2016)

8)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2016년 현재 금산군에는 칠백의총기념관, 금산지구촌 생활민속 박물관 등 4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미술관은 없음

구분	사업장명	주소
박물관	칠백의총기념관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금산지구촌 생활민속 박물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43
	금산향토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5
	태영민속박물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하금평촌길 26

표 55. 금산군 박물관 현황 (자료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2.5. 서산시 일반현황

1) 자연 환경

○ 위치와 면적

- 서산시는 한반도의 중앙 서부에 위치하며 북동으로 당진시, 동부는 예산군, 서부는 태안군, 남부는 홍성군과 접해 있음
- 서산시 동부지역을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수도권 지역과 연결이 매우 편리하며, 국도 29호선 및 32호선이 서산시 남북과 동서를 관통하고, 649호선 외에 6개 노선의 시도 15개 도로가 방사형으로 구축되어 있음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동단	운산면 와우리	동경 126° 39′	동서간 21.6km
	서단	팔봉면 진장리	동경 126° 22′	
	남단	부석면 간월도리	북위 36° 36′	남북간 34.9km
	북단	대산읍 화곡리	북위 37° 00′	

표 56. 서산시 위치

○ 기후

- 서산시는 아시아 계절풍 지역에 속해 있어 겨울철에 북서풍, 여름철에는 대체로 남풍이 많음
-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해안지역에 동백나무, 사철나무 등 난지성 식물이 자라고, 상대습도 · 일조지수 · 증발량이 높아 염전이 발달함
- 2013년 기준 평균기온은 11.8°C, 연평균 최고기온은 33.4°C, 최저기온은 -16.6°C를 기록함
- 2013년 연평균 강수량은 1,019mm를 기록하였고 최근 5년간 강수량이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 19. 서산시 연도별 평균 기온 및 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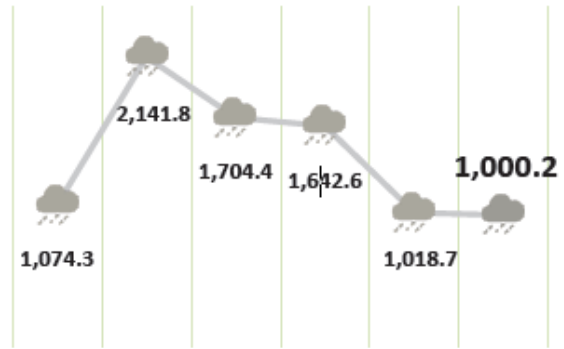


그림 20. 서산시 연도별 기상현황 (강수)

구분	평균기온(°C)	평균최고기온(°C)	평균최저기온(°C)	강수량(mm)	일조시간(시)
2010	11.7	16.3	7.3	2,142	1,984
2011	11.6	16.4	7.2	1,704	2,007
2012	11.5	16.6	6.9	1,643	2,299
2013	11.8	16.9	7.0	1,019	2,382
2014	12.3	17.8	7.5	1,000	2,334

표 57. 서산시 기후현황 (자료 : 서산시 통계연보, 2015)

2) 인구 현황

○ 총괄 인구 분석

- 2014년 서산시의 인구는 170,920명으로 충남 인구 2,116,830명의 8.07%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5% 증가하여 충청남도 평균 인구증가율인 1.09%를 상회함
- 서산시의 인구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25년간 30,615명이 증가하여 1년 평균 1,225명이 증가함

연도별	인구			인구밀도 (인/㎢)	인구증가율 (%)	65세 이상
	계	남	여			
2009	161,238	82,271	78,967	215	1.48	22,424
2010	163,055	83,172	79,883	217	2.63	22,858
2011	164,345	83,983	80,883	218	1.93	23,413
2012	166,214	84,974	81,240	220	1.94	24,195
2013	168,951	86,553	82,398	224	2.80	25,115
2014	170,920	87,598	83,322	226	1.16	26,187

표 58. 서산시 연도별 인구구조 (자료 : 2015 통계로 보는 서산시 모습)

○ 연령대별 인구분석

- 서산시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가 62.0%인 103,90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서산시의 인구구성에 있어 노동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대수	인구수	19세 이하	20~64세	65세 이상
68,248	167,611	37,522	103,902	26,187

표 59. 서산시 연령대별 인구, 외국인 세대수 및 인구수 제외 (서산시 통계연보, 2015)

3) 주택 현황

- 서산시 인구의 증가에 따라 세대수 및 주택수가 증가하고 있음
- 1989년 세대당 인구 4.3명/세대에서 2014년 2.5명/세대로 핵가족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1989년 서산읍이 서산시로 개편되면서 젊은 노동층 및 인구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구	158,880	161,238	163,055	164,345	166,214	168,951	170,920
세대수 (세대)	61,312	62,603	63,668	64,361	65,364	66,956	68,248
세대당인구 (인/세대)	2.6	2.6	2.6	2.6	2.5	2.5	2.5
주택수(호)	61,827	62,202	62,512	64,967	68,042	71,176	72,722
1천명당 주택수	389.1	385.8	383.4	395.3	409.4	421.3	425.5

표 60. 서산시 주택관련 지표현황 (자료 : 서산시 통계연보, 2015)

4) 행정 구역

· 서산시 행정구역은 총 740.78km²로서 읍, 면별 면적 구성비는 부석면(126.89 km²), 대산읍(105.23km²), 운산면(82.65km²)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면적		군		비고
	km ²	구성비(%)	법정	행정	
2013	750.78	100	357	264	
대산읍	105.23	14	29	29	
인지면	35.47	5	23	23	
부석면	123.89	17	26	26	
팔봉면	51.40	7	22	22	
지곡면	57.90	8	22	22	
성연면	43.92	6	21	21	
음암면	43.93	6	30	30	
운산면	82.65	11	31	31	
해미면	68.26	9	29	29	
고북면	71.75	10	31	31	
부춘동	9.43	1	20	20	
동문1동	8.77	1	14	-	
동문2동			14	-	
수석동	8.78	1	19	-	
석남동	29.40	4	26	-	

표 61. 서산시 행정구역 (자료 : 서산시 통계연보, 2014)

5) 산업 현황

○ 산업 구조 현황

- 2010년 기준 서산시의 사업체수는 9,926개소로 2010년 대비 517개소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의 사업체수는 2012년 13개소, 종사인원 272명으로 사업체수는 전체의 0.1%, 종사자수는 0.7%를 차지함

○ 지역총생산 및 소득수준 현황

- 2011년 기준 서산시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7조5,350억원으로 성장추세를 나타냄. 인근 당진시와 예산군에 비해 경제규모가 큰 상황임
- 농림어업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5,523억원, 총부가가치생산액은 3,111억원으로 총부가가치생산액 기준 3.7%를 점유하고 있음

6) 교육 및 사회복지, 의료기관 현황

○ 교육시설

- 2014년 현재 서산시에는 유치원 41개소, 초등학교 31개소, 중학교 16개소, 고등학교 8개소가 있음
- 2014년 4월 현재 학생수는 총 33,012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3년 35,777명에 비해 7.7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생수
학교수	41	31	16	8	33,012(명)

표 62. 서산시 교육시설 현황 (자료 : 2014 서산교육지원청)

○ 사회복지시설

- 2015년 현재 서산시 총 사회복지 시설수는 20개소에 수용인원 653명으로

아동시설 3개소, 노인시설 15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로 구성됨

구분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총 수용인원
복지시설(개소)	3	15	2	0	653(인)

표 63. 서산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 : 서산시 통계연보, 2015)

○ 의료시설

· 2015년 기준 서산시의 의료시설은 총 143개소로 대부분 동문2동에 분포함

구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수 합계
병원수 (개소)	2	1	70	1	35	1	33	1	10	16	143

표 64. 서산시 의료시설 현황 (자료: 서산시 통계연보, 2015)

7) 문화체육 시설현황

· 2015년 현재 서산시의 문화체육시설은 영화관 1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3개소, 도서관 5개소 등이며, 공공체육시설은 327개소, 신고체육시설은 128개소에 달함

구분	영화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1	3	5	327	128

표 65. 서산시 문화체육시설 현황 (자료: 서산시 통계연보, 2015)

8) 문화재 및 관광객 현황

○ 문화재 현황

· 서산시 지정문화재는 2015년 기준 총 66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7점, 지방지정문화재 48점 등이 분포하며, 등록문화재 2점이 있음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
		보물	11
		사적 및 명승	3
		천연기념물	0
		중요민속자료	2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13
		무형문화재	3
		기념물	9
		민속문화재	3
		문화재자료	20
소 계		65	
등록문화재		2	

표 66. 서산시 문화재 현황 (자료 : 2015 통계로 보는 서산시 모습)

○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 서산시의 주요 관광지는 약 8개로 대상지 인근에는 해미읍성, 순교성지가 있음
- 대상지 인근 관광객 수는 2012년 기준 1,843,289명(36.84%)임

관광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	-	-	-
서산버드랜드	-	-	-	-
용현자연휴양림	-	-	-	-
간월도관광지	1,092,064	1,080,326	-	-
삼길포	1,406,528	1,236,504	-	-
서산마애삼존불/용현계곡	566,834	432,646	-	-
팔봉산	294,376	410,056	-	-
해미읍성, 순교성지	1,914,485	1,843,289	-	-
총계	5,274,287	5,002,821	5,029,241	5,226,875

표 67. 서산시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2013년 이후 관광지 별 세부 자료 없음
(자료 : 2015 통계로 보는 서산시 모습, 서산시 통계연보, 2015)

- 서산시 관광객은 매 년 5,000,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2014년 기준 5,226,875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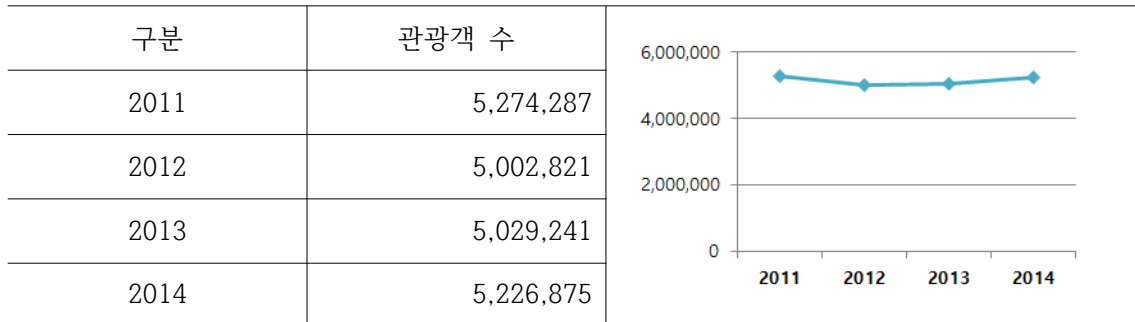


표 68. 서산시 관광객 현황 (자료 : 2015 통계로 보는 서산시 모습, 서산시 통계연보)

9)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2016년 현재 서산시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없음

2.2.6. 부여군 일반현황

1) 자연 환경

○ 위치와 면적

- 부여군은 국토공간상 한강이남지역의 국토 중앙에 위치, 충청남도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동서길이 약 34.3km, 남북길이 약 33.6km에 이르는 지역임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동단	초촌면 송정리	동경 127° 03′	동서간 34.3km
	서단	외산면 만수리	동경 126° 44′	
	남단	양화면 시음리	북위 36° 04′	남북간 33.6km
	북단	은산면 용두리	북위 36° 23′	

표 69. 부여군 위치

○ 지형 및 지세

- 부여군은 북서고 남동저형의 특색을 나타냄. 북으로는 성태산, 조공산, 서로는 만수산, 월명산, 비홍산이 있고 동북으로부터 차령산맥이 서남으로 뻗치고 있으며 군 소재지는 부소산, 금성산이 있고 남으로는 성흥산, 태봉산이 있음
- 부여군내 표고는 주택지 및 논·밭 등의 농경지, 각종시설이 입지하기 양호한 지역이 전체 면적의 52.9% 임
- 완만한 경사도 토지의 면적은 96.99km²로 전체의 15.5%이며, 개발가능이 양호한 토지는 390.52km²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므로 개발여건이 양호함

○ 지형 및 지세

- 부여군 내에는 현재 총 315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형성되어 있고, 하천들은

남서쪽으로 흐르며, 지천·금천·석성천 등과 합류하여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음 (부여군의 대표적인 하천인 금강은 유로의 길이가 401km로 우리나라 6대 하천중의 하나임)

구분	하천 수 (개)	연장(km)	비고
국가하천	1	43.78	금강
지방1급하천	3	28.50	석성천, 금천, 지천 등
지방2급하천	50	240.37	
소하천	122	167.08	

표 70. 부여군 수계현황 (자료 : 2015 부여 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 분지형태의 부여군은 주변의 산악에 의해 분수계를 이루고, 시가지 내에는 남북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으며 하상 경사는 비교적 완만함
- 부여 관내를 흐르는 금강은 ‘백마강’이라 부르며, 백마강으로는 위로 부터 지천(금강천), 은산천, 금천, 석성천 등의 하천이 유입함
- 금강과 이들 하천이 만나는 지역에는 범람원이 넓게 발달하여 이른 ‘부여평야’를 형성하고 있음

○ 기후

- 한반도의 전형적 기후형인 여름철의 남동풍과 겨울철의 북서풍, 탁월한 온대계절풍이 불며, 여름에 몹시 덥고 겨울에 추운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강수량의 반 이상이 여름에 내리는 하계다우형 기후가 나타남
- 부여는 온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2.3°C이며 겨울의 평균 기온은 -0.5°C, 여름의 평균기온은 25.2°C로 한·냉의 편차는 25.7°C임
- 연평균 강수량은 1,275mm으로 이 중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음

구분	평균기온(°C)	평균최고기온(°C)	평균최저기온(°C)	강수량(mm)	일조시간(시)
2010	12.7	31.7	-7.5	1,378	1,909
2011	12.2	31.7	-7.5	2,014	1,962
2012	11.8	17.1	6.8	1,466	2,104
2013	12.2	18.2	7.1	1,242	2,061
2014	12.7	18.9	7.6	1,092	2,050

표 71. 부여군 기후현황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2015)

2) 인구 현황

○ 인구 기본 현황

- 2013년 기준으로 총인구는 72,547명이며, 인구밀도는 116.2명/k㎡임
- 세대수는 32,288세대로 세대당인구는 2.58명이며, 부여읍 (10,010세대, 24,45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규암면 순으로 나타남
- 세대수와 인구수는 부여읍이 10,010세대와 24,454명의 인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규암면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75,564	75,029	74,004	73,259	72,547	71,754
0~14세	9,388	8,761	8,252	7,807	7,404	6,985
	12.4%	11.7%	11.2%	10.7%	10.2%	9.7%
15~64세	47,576	47,407	46,814	46,238	45,611	44,691
	63.0%	63.2%	63.3%	63.1%	62.9%	62.3%
65세이상	18,600	18,861	18,938	19,214	19,532	20,078
	24.6%	25.1%	25.5%	26.2%	26.9%	28.0%

표 72. 부여군 연령별 인구구조, 외국인 제외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2015)

3) 주택 현황

- 부여군의 세대 수는 2013년 현재 32,288세대로 2007년 31,612세대에 비해

676세대(2.14%) 증가하였으며, 인구수는 73,512명으로 2007년 78,488명에 비해 4,976명(6.3%) 감소함

- 2007년 세대당 인구 2.48인/세대에서 2013년 2.25인/세대로 매년 세대당인구수가 감소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	78,488	77,400	76,295	75,862	74,863	74,126	73,512
세대수 (세대)	31,612	31,591	31,590	32,223	32,035	32,164	32,288
세대당인구 (인/세대)	2.48	2.43	2.39	2.33	2.31	2.28	2.25
주택수(호)	20,410	19,951	25,529	25,885	25,396	27,059	26,663
1천명당 주택수	260.0	257.7	334.6	341.2	339.2	365.0	362.7

표 73. 부여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2014)

4) 산업 현황

- 부여의 주요 농산물은 부여군 통합브랜드인 “굿드래”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양송이는 전국생산량의 45%, 방울토마토 13%, 표고버섯 11%, 멜론 12.7% 등 총 17만톤을 생산하고 있음
- 2005년과 2013년의 부여군 산업구조를 비교해보면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가구 수 (가구)			인구 수 (명)		
	총가구	농가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충남	868,768	144,033	16.5	2,149,374	356,158	16.6
부여	32,288	9,978	30.9	73,512	24,200	32.9
비율	3.7%	6.9%	-	3.4%	6.7%	-

표 74. 부여군 농가인구 및 현황 (자료 : 2015 부여 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5) 교육 및 사회복지, 의료기관 현황

○ 교육시설

- 2015년 현재 부여군에는 유치원 28개소, 초등학교 25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5개소가 있음
- 2015년 4월 현재 학생수는 총 8,108명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 8,424명에 비해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생수
학교수	28	25	11	5	8,108(명)

표 75. 부여군 교육시설 현황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2015)

○ 사회복지시설

- 2015년 현재 부여군 총 사회복지 시설수는 16개소에 수용인원 752인으로 아동시설 1개소, 노인시설 13개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1개소, 기타시설 1개소로 구성됨

구분	아동시설	노인시설	정신질환자 시설	기타	총 수용인원
복지시설(개소)	1	13	1	1	752(인)

표 76. 부여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2015)

○ 의료시설

- 2015년 기준 부여군의 의료시설은 총 68개소로 대부분 부여읍에 분포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수합계
병원수(개소)	-	2	31	2	3	13	-	17	1	15	20	68

표 77. 부여군 의료시설 현황 (자료: 부여군 통계연보, 2015)

6) 문화체육 시설현황

- 2015년 현재 부여군의 문화체육시설은 영화관 2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2개소, 도서관 1개소 등이며, 공공체육시설은 86개소, 신고체육시설은 48개소에 달함

구분	영화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2	2	1	86	48

표 78. 부여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자료: 부여군 통계연보, 2015)

7) 문화재 및 관광객 현황

○ 문화재 현황

- 부여군 지정문화재는 2015년 기준 총 154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53점, 지방지정문화재 101점 등이 분포하며, 등록문화재 3점이 있음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4
		보물	19
		사적 및 명승	22
		천연기념물	2
		중요무형문화재	1
		중요민속문화재	5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24
		무형문화재	6
		기념물	27
		문화재자료	44
소 계		154	
등록문화재		3	

표 79. 부여군 문화재 현황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2015)

○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 부여군의 주요 관광지는 12개로 대상지 인근에는 백제역사문화관, 백제문화단지 등이 있음
- 대상지 인근 관광객수는 2014년 기준 682,753명(12.2%)임

관광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소산성	672,329	507,270	357,164	447,931	476,603
정림사지	208,536	179,805	137,985	178,385	156,457
무량사	132,584	68,355	45,926	47,630	51,215
성흥산성	74,362	34,985	35,330	36,150	36,447
능산리고분군	136,802	68,420	54,524	61,528	50,510
궁남지	1,450,952	1,153,120	1,086,742	1,128,696	1,152,153
국립부여박물관	425,665	455,758	456,905	432,087	257,855
만수산 자연휴양림	25,583	20,146	18,558	25,925	27,756
구드래 국민관광지	1,924,656	2,389,859	2,611,899	2,654,573	2,681,621
백제역사문화관	477,804	105,655	160,577	814,440	682,753
백제문화단지	1,952,799	442,531	291,111	-	-
서동요 촬영지	25,428	22,069	14,712	24,600	22,890
총계	7,507,500	5,447,973	5,271,433	5,851,945	5,596,260

표 80. 부여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2011-2015)

- 부여군의 관광객은 매 년 5,200,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2014년 기준 5,596,26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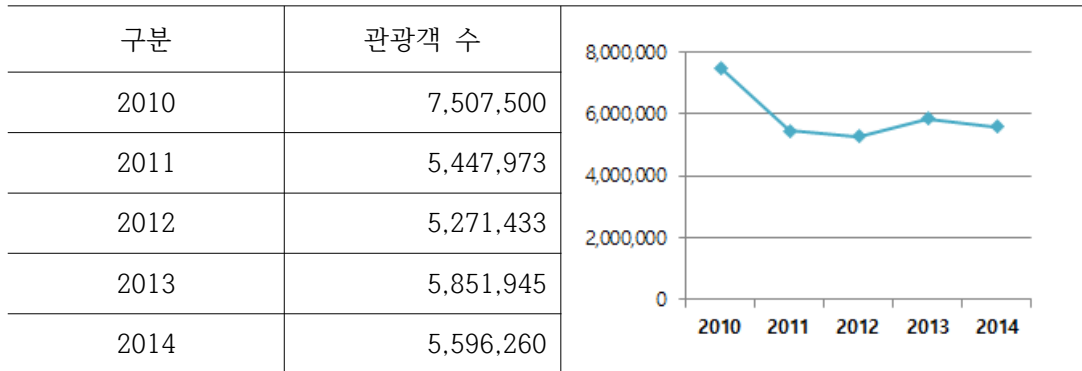


표 81. 부여군 관광객 현황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2011-2015)

8)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2016년 현재 부여군에는 국립부여박물관 등 4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미술관은 없음

구분	사업장명	주소
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능산리고분군 전시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릉로 61
	백제역사문화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정림사지 박물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표 82. 부여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자료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2.7. 음성군 일반현황

1) 자연 환경

○ 위치와 면적

- 음성군은 충청북도의 북서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충북 충주시, 서쪽으로는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진천군, 남쪽으로는 충북 괴산군, 북쪽으로는 경기도 이천시와 각각 접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충북의 경계를 이룸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동단	소이면 문등리	동경 127° 47′	동서간 31km
	서단	대소면 내산리	동경 127° 26′	
	남단	원남면 문암리	북위 36° 50′	남북간 35km
	북단	감곡면 단평리	북위 37° 09′	

표 83. 음성군 위치

○ 지형 및 지세

- 차량산맥이 남서쪽으로 달리면서 음성군의 북쪽의 오갑산(609m)을 만들고 오갑산에서 남서쪽으로 원통산(610m)·수리산(605m)·수례의 산(679m)·부용산(644m)으로 이어져 비교적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음
- 부용산에서 남쪽으로 뺀 지맥은 감우재를 지나 보현산(477m)으로 이어지고 돌고개를 지나 큰산(509m)으로 이어지며, 다시 남서로 종지봉(389m)·백마산(464m)이 되고 보광산(520m)에 이룸

○ 수계

- 오대산·보현산·소속리산·마이산(417m)을 잇는 선을 경계로 동남쪽은 한강 수계에 속하고 서남쪽은 금강수계에 속함

○ 기후

- 음성군의 기후는 중부내륙성기후를 보이며, 한반도의 내륙지역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 특색을 나타냄
- 사계절이 뚜렷하며, 연평균 기온은 12.2°C, 연평균 강수량은 1,250mm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지역보다 눈이 많이 오는 편임

구분	평균기온(°C)	평균최고기온(°C)	평균최저기온(°C)	강수량(mm)	일조시간(시)
2010	11.5	17.2	6.5	1212.3	1,867
2011	11.4	17.3	6.2	2073.3	2,023
2012	11.5	17.3	6.4	1290.3	2,420
2013	11.8	17.6	6.6	1102.6	2,358
2014	12.2	18.4	6.9	899.6	2,353

표 84. 음성군 기후현황 (자료 : 음성군 통계연보, 2015)

2) 인구 현황

○ 총괄 인구 분석

- 음성군의 인구는 2009년 89,716명에서 2010년 81,645명으로 8,071명(9.8%)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음성군의 외국인 인구수는 2003년 2,488명이었으나 2012년에서 2013년에 1,148명이 증가하여 2013년 6,44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성군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가 69.5%인 66,25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음성군의 인구구성에 있어 노동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16.9%로 음성군은 이미 고령사회(14.0%

이상) 임을 보여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9,542	89,716	81,645	91,644	92,980	93,505	95,324
0~14세	15,199	14,699	13,512	13,617	13,347	13,021	12,988
	17.0%	16.4%	16.5%	14.8%	14.4%	14.0%	13.6%
15~64세	60,756	61,136	54,180	63,262	64,390	64,866	66,253
	67.8%	68.1%	66.4%	69.0%	69.3%	69.4%	69.5%
65세이상	13,587	13,881	13,953	14,765	15,243	15,618	16,083
	15.2%	15.5%	17.1%	16.2%	16.3%	16.6%	16.9%

표 85. 음성군 연령별 인구구조, 외국인 제외 (자료 ; 음성군 통계연보, 2015)

3) 주택 현황

- 음성군의 세대 수는 2014년 현재 41,749세대로 2004년 30,920세대에 비해 10,829세대(35.0%) 증가함
- 2004년 세대당 인구 2.8인/세대에서 2014년 2.3인/세대로 매년 세대당인구 수가 감소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구	90,159	92,520	94,144	94,580	96,214	96,993	98,279	99,952	102,796
세대수 (세대)	33,014	34,408	35,684	36,457	37,887	38,518	39,536	40,307	41,749
세대당인구 (인/세대)	2.7	2.6	2.5	2.5	2.4	2.5	2.5	2.5	2.3
주택수(호)	31,088	30,681	32,832	31,613	34,654	34,798	36,422	36,869	38,276
1천명당 주택수	344.8	331.6	348.7	334.2	360.1	358.7	370.6	368.9	372.3

표 86. 음성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자료 : 음성군 통계연보, 2015)

4) 산업 현황

- 음성군의 산업대 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현재 사업체수 8,275개소, 종사자수 58,560명으로 업종별로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도매 및 소매업(1,770개소)이 21.39%, 종사자수는 제조업(32,459명)으로 55.43%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4년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20	279	0.48
광업	3	15	0.03
제조업	1,749	32,459	55.4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86	0.1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51	378	0.65
건설업	320	1,992	3.40
도매 및 소매업	1,770	4,114	7.03
운수업	688	1,706	2.91
숙박 및 음식점업	1,630	3,802	6.4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	187	0.32
금융 및 보험업	84	809	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8	729	1.2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2	1,372	2.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8	1,300	2.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8	1,774	3.03
교육 서비스업	212	2,519	4.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1	2,733	4.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9	689	1.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4	1,617	2.76
합계	8,275	58,560	100

표 87. 음성군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자료 : 음성군 통계연보, 2015)

5) 교육 및 의료기관 현황

○ 교육시설

- 2015년 현재 음성군에는 유치원 25개소,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있음

- 2015년 4월 현재 학생수는 총 10,784명으로 2014년 24,397명에 비해 13,613명(55.8%) 감소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생수
학교수	25	22	10	4	10,784(명)

표 88. 음성군 교육시설 현황 (자료 : 음성군 통계연보, 2015)

○ 의료시설

- 2015년 기준 음성군의 의료시설은 총 85개소로 대부분 금왕읍에 분포함

구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수 합계
병원수 (개소)	-	4	39	1	3	20	-	18	1	8	18	85

표 89. 음성군 의료시설 현황 (자료: 음성군 통계연보, 2015)

6) 문화체육 시설현황

- 2015년 현재 음성군의 문화체육시설은 영화관 0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6개소, 도서관 3개소 등이며, 공공체육시설은 41개소, 신고체육시설은 99개소에 달함

구분	영화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	6	3	41	99

표 90. 음성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자료: 음성군 통계연보, 2015)

7) 문화재 및 관광객 현황

○ 문화재 현황

- 음성군 지정문화재는 2015년 기준 총 30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8점, 도지정 문화재 22점 등이 분포하며, 등록문화재 2점이 있음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	6
		사적 및 명승	-
		천연기념물	-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2
	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13
		민속문화재	1
		기념물	5
		문화재자료	3
소 계		30	
등록문화재		2	

표 91. 2015년 음성군 문화재 현황 (자료 : 음성군 통계연보, 2015)

○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 음성군의 주요 관광지는 11개로 대상지 인근에는 주요 관광지가 없음

관광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썬벨리 컨트리클럽	52,470	62,946	66,807	180,579
청소년수련원	340,331	294,961	413,097	432,182
녹색농촌체험마을 용바위골	2,809	2,892	25,548	13,259
녹색농촌체험마을 하당1리	2,748	4,270	26,621	26,268
무극전적국민관광지	59,013	45,503	377,150	167,794
반기문 기념관	-	-	-	361,780
봉화골산림욕장	489,522	513,525	673,165	508,355
철박물관	3,306	5,385	35,892	32,696
통동저수지	4,886	5,728	32,204	72,901
한독의약사료관	10,281	7,805	49,012	21,611
향토유물전시관	11,450	8,981	31,533	51,127
총계	976,816	951,996	1,731,029	1,868,552

표 92. 음성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2012년 이후 통계자료 없음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 음성군 관광객은 2011년 기준 1,868,552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됨
- 2010년 관광객 수는 1,731,029명으로 2009년 관광객 수 951,996명 보다 779,033(8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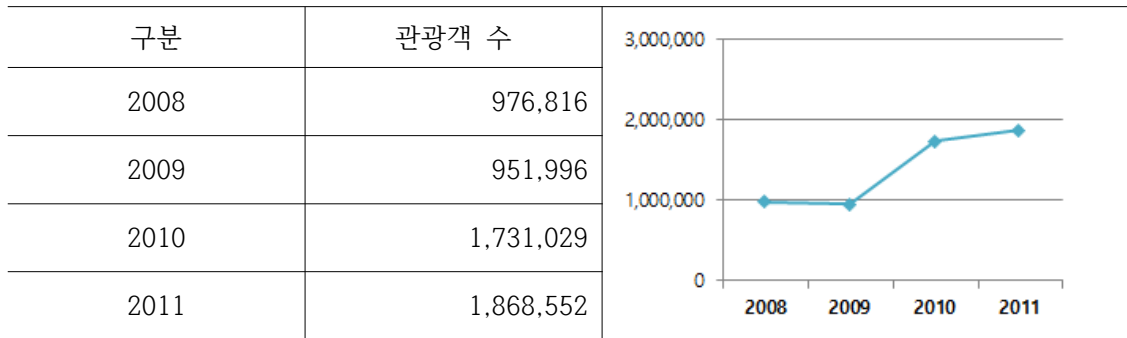


표 93. 음성군 관광객 현황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객통계)

8)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2016년 현재 음성군에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철박물관으로 2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미술관은 없음

구분	사업장명	주소
박물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0-7
	철박물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360

표 94. 음성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자료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2.8. 진안군 일반현황

1) 자연 환경

○ 위치와 면적

- 전북의 동부산악권에 위치하고 있는 진안군은 동쪽으로 무주, 장수, 남쪽으로 장수, 임실, 서쪽으로 완주, 북쪽으로 충남 금산이 인접함.
- 진안군은 전주-거창간의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소태정을 통한 4차선이 개통되어 전주와의 교통이 원활하게 됨. 또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며, 현재 공사중인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전북과 경상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충청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동단	동향면 학선리	동경 127° 37′	동서간 23km
	서단	성수면 중길리	동경 127° 16′	
	남단	백운면 신암리	북위 35° 49′	남북간 46km
	북단	주천면 용덕리	북위 35° 99′	

표 95. 진안군 위치

○ 지형 및 지세

- 진안군은 전라북도의 동부산악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주와 장수, 충남 금산, 경남 함양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주에서 동쪽으로 36km지점에 위치해 있음
- 면적은 789.09km²로서 도내에서 두번째이나 노령산맥이 남쪽으로 뻗어 있어 임야가 7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는 13%로서 영세한 규모지만 인삼, 표고, 더덕 등 특산품이 많이 생산되고 천혜의 자연 자원과 용담호를 연계한 관광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 경사는 5%미만 또는 5~10%미만의 평지 및 완경사지는 21%, 10~20%가 15%, 20%이상의 구릉지는 64%로 구성되어 동부권 지역의 개발 가능한 면적은 극히 제한적임

○ 하천 및 수계

- 금강, 섬진강 등 큰 강들의 발원지가 있으며 금강은 장수 뜰샘, 섬진강은 진안 데미샘골 등 동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서남북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
- 금강과 섬진강은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발달하여 물 흐름 방향이 다양하며 강의 길이에 비해 수량이 많고 갈수기와 홍수기의 수량차가 큰 편임
- 진안군 근처는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수변구역, 보전 산지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분포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 다수임

○ 기후

- 진안군은 중남부 내륙산악형 기후로써 계절에 따라 기온 및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여름철에는 고온다습, 겨울철에는 한랭건조하며 계절풍의 영향을 받음
- 풍향풍속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은 북서풍,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불며 연평균 풍속은 1.6m/sec임
- 기후는 중남부 내륙산악형에 속하고 진안군 대부분이 산사면인 관계로 기온의 교차가 커서 적설량과 우량이 많음

구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일조시간(시)
2011	13.1	36.2	-13.4	1,621.8	1,954.6
2012	10.5	35	-19	1,636.5	1,928.0
2013	10.8	33.9	-23.1	1,317.0	2,069.0
2014	11.0	32.4	-17.2	1,321.4	1,948.5

표 96. 진안군 기후현황 (자료 : 2015 진안군 통계연보)

2) 인구 현황

○ 인구 기본 현황

- 2015년 기준 진안군의 총 인구수는 12,504명이며, 인구밀도는 33인/㎢임
- 진안군의 인구규모는 1999년 33,752명에서 2014년 26,474명으로 7,278명 (21.5%) 감소함

연도별	인구			인구밀도 (인/㎢)	인구증가율 (%)	65세 이상
	계	남	여			
2009	27,828	13,924	13,904	35	1.20	7,407
2010	27,817	13,945	13,872	35	-0.04	7,547
2011	28,692	14,381	14,311	36	3.15	7,643
2012	27,253	13,630	13,623	34	-5.02	7,736
2013	27,006	13,494	13,512	34	-0.91	7,872
2014	26,474	13,286	13,188	33	-2.00	7,996

표 97. 진안군 연도별 인구구조 (자료 : 진안군 통계연보, 2015)

○ 연령대별 인구분석

- 진안군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가 55.8%인 14,59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진안군의 인구구성에 있어 노동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29.4%로 진안군은 이미 초고령사회(20.0% 이상) 임을 보여줌

세대수	인구수	19세 이하	20~64세	65세 이상
12,504	26,164	3,879	14,599	7,686

표 98. 진안군 연령대별 인구, 외국인 세대수 및 인구수 제외 (진안군 통계연보, 2015)

3) 행정 구역

- 진안군 행정구역은 총 789.16km² 로서, 읍, 면별 면적 구성비는 진안읍 14.7%(115.93km²), 부귀면 13.2% (104.65km²), 백운면 10.9%(86.09km²),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면적		전	답	과수원	목장용 지	임야	공장용 지
	km ²	구성비(%)						
진안읍	115.93	14.7	8.896	10.643	0.05	0.433	85.524	0.396
용담면	54.69	6.9	1.377	1.227	0.09	0.004	39.275	0.019
안천면	37.10	4.7	3.032	2.629	0.138	0.130	24.672	0.005
동향면	52.80	6.7	3.976	4.254	0.015	0.302	40.076	0.007
상전면	53.76	6.8	2.022	1.269	0.0	0.054	38.593	0.0
백운면	86.09	10.9	3.495	7.381	0.007	0.823	69.480	0.011
성수면	70.70	9.0	4.544	6.404	0.028	0.207	54.074	0.01
마령면	42.05	5.3	3.319	5.192	0.026	0.358	28.554	0.052
부귀면	104.65	13.2	4.027	5.310	0.004	0.383	88.429	0.077
정천면	75.52	9.6	1.822	1.476	0.035	0.024	59.842	0.001
주천면	95.91	12.2	3.024	2.858	0.024	0.491	84.066	0.009

표 99. 진안군 행정구역 (자료 : 통계연보, 2011)

4) 주택 현황

- 진안군의 가구 수는 2015년 현재 12,504가구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수는 26,16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주택수 10,415호에서 2014년 10,567호로 매년 소폭 증가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구	27,230	27,558	27,543	28,473	26,963	26,703	26,164
세대수 (세대)	11,955	12,358	12,463	12,771	12,480	12,553	12,504
세대당인구 (인/세대)	2	2	2	2	2	2	2
주택수(호)	10,415	10,470	10,251	10,289	10,350	10,419	10,567
1천명당 주택수	382.5	379.9	372.2	361.4	383.9	390.2	403.9

표 100. 진안군 주택관련 지표현황 (자료 : 진안군 통계연보, 2015)

5) 교육 및 사회복지, 의료기관 현황

○ 교육시설

- 2015년 현재 진안군에는 유치원 12개소,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5개소가 있음
- 2009년 1,873명에서 2013년 2,502명으로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12월 현재 학생수는 총 2,347명으로 2013년 2,502명에 비해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생수
학교수	12	13	10	5	2,347(명)

표 101. 진안군 교육시설 현황 (자료 : 진안군 통계연보, 2015)

○ 사회복지시설

- 2015년 현재 진안군의 총 사회복지 시설수는 14개소에 수용인원 303명으로 아동시설 14개소로 구성됨
-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29.4%인 진안군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 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구분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총 수용인원
복지시설(개소)	14	-	-	-	303(인)

표 102.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 : 진안군 통계연보, 2015)

○ 의료시설

- 2015년 기준 진안군의 의료시설은 총 23개소로 대부분 진안읍에 분포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수합계
병원수(개소)	-	1	13	-	-	4	-	5	1	10	12	23

표 103. 진안군 의료시설 현황 (자료: 진안군 통계연보, 2015)

6) 문화체육 시설현황

- 2015년 현재 진안군의 문화체육시설은 영화관 1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13개소, 도서관 1개소 등이며, 공공체육시설은 44개소, 신고체육시설은 7개소에 달함

구분	영화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1	13	1	44	7

표 104. 진안군 문화체육시설 현황 (자료: 진안군 통계연보, 2015)

7) 문화재 및 관광객 현황

○ 문화재 현황

- 진안군 지정문화재는 2015년 기준 총 33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7점, 지방지정문화재 26점 등이 분포하며, 등록문화재 2점이 있음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	2
		사적 및 명승	1
		천연기념물	4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9
		무형문화재	1
		기념물	5
		문화재자료	10
		민속자료	1
소 계		33	
등록문화재		2	

표 105. 진안군 문화재 현황 (자료 : 진안군 통계연보, 2015)

○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 진안군의 주요 관광지는 8개로 대상지 인근에는 마이산, 진안홍삼스파가 있음
- 대상지 인근 관광객수는 2014년 기준 888,886명(88.4%)임

관광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마이산	815,431	1,034,772	1,232,060	827,378
데미샘자연휴양림	-	-	10,003	23,565
운장산자연휴양림	41,241	48,183	63,719	69,644
운일암반일암	115,210	136,332	92,841	22,949
진안홍삼스파	-	-	59,639	61,508
용담댐	86,264	105,810	-	-
구봉산	37,987	50,821	-	-
백운동계곡	22,658	26,965	-	-
총계	1,118,791	1,402,883	1,458,262	1,005,044

표 106. 진안군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 (자료 : 진안군 통계연보, 2012-2015)

- 진안군의 관광객은 매 년 1,000,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2014년 기준 1,005,044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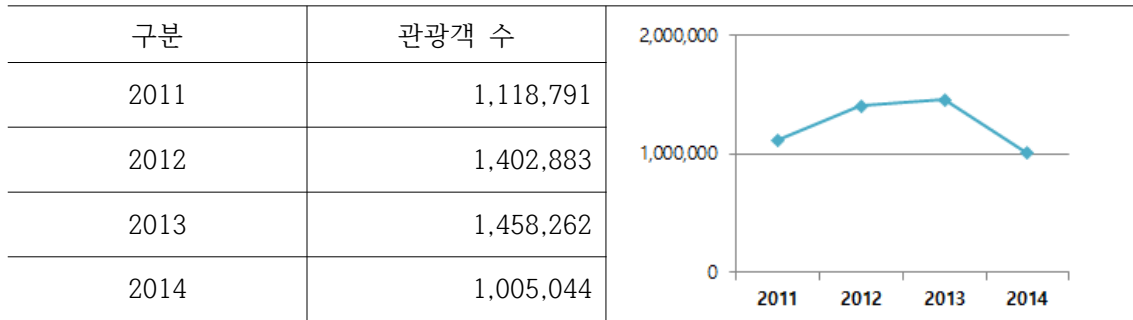


표 107. 진안군 관광객 현황 (자료 : 진안군 통계연보, 2012-2015)

8)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2016년 현재 진안군에는 진안역사박물관 1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미술관은 없음

구분	사업장명	주소
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	전라북도 진안읍 내사양길 7

표 108. 진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자료 :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3. 건립 대상지 현황분석 및 사업여건

2.3.1. 파주시

1) 파주시 건립 대상지 현황 분석

- 본 인삼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44 임진각 관광지역 일원으로, 지목은 잡종지이며, 총 면적은 11,692㎡ 임
- 대상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재 관광지, 제한보호구역(전방 25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임

대상지	· 문산읍 마정리 1360-44 임진각 관광지역 일원
면적	· 11,692㎡
개별공시지가 (원/㎡)	· 111,000원 (무상임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군사기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자유의 다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용적률·건폐율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25%이하

표 109. 파주시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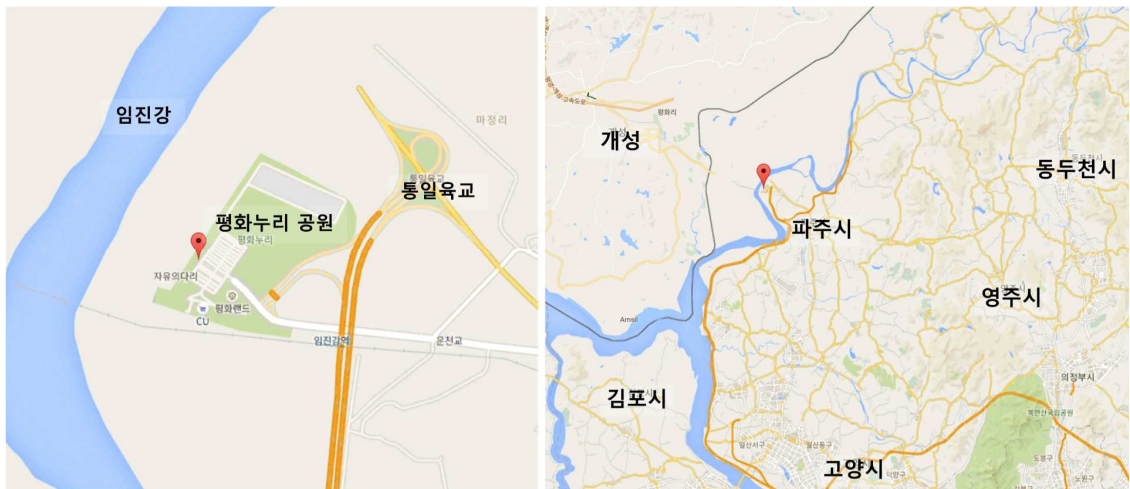


그림 21. 파주시 대상지 위치 및 현황

2) 파주시 사업여건

- 대상지는 임진각 관광지 부지로, 대상지 인근에는 야외공연장, 바람의 언덕, 음악의 언덕 등이 조성됨



표 110. 대상지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부지







축제명	시기· 장소	주요행사
파주 개성 인삼 축제 	· 매년 10월 (2일간) · 임진각 광장	· 인삼 창작마당극 · 한방족욕, 웰빙건강체험 · 농특산물 홍보관
장단콩 축제 	· 매년 11월 (3일간) · 임진각 광장	· 장단콩 요리 시식회 · 꼬마메주 만들기 · 전통 재래장터
평생학습 박람회 	· 매년 해당 월 2일간 · 운정행복센터	· 치매예방 도자기 만들기 · 출판도시 건축모형 만들기 · 다문화 학습 체험
율곡 문화제 	· 매년 10월 (2일간) · 파주 이이유적	· 율곡사상학술 심포지엄 · 사임당 미술제 · 전통혼례식
파주 예술제 	· 매년 다채롭게 진행 · 운정호수공원 아쿠아플라자 야외 공연장	· 야외 영화상영 · 한중 현대미술 교류전 · 청소년 댄스가요제
파주 북소리 	· 매년 해당 월 3일간 · 파주출판도시	· 출판도시 체험학교 · 북디자인 세미나 · 이야기가 있는 우리 춤

표 111. 파주시 주요 축제 현황 (자료 : 파주시 홈페이지)

2.3.2. 강화군

1) 강화군 건립 대상지 현황 분석

- 본 인삼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787번지 일원으로, 지목은 답이며, 총 면적은 30,000㎡ 임
- 또한 대상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임

대상지	· 강화읍 갑곶리 787번지 일원
면적	· 30,000㎡
개별공시지가 (원/㎡)	· 33,000원 (매입)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농림지역,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강화산성-문화재보호법)
용적률·건폐율	· 건폐율 20% 이하 · 용적률 50% 이상 - 100% 이하

표 112. 강화군 대상지 현황



그림 22. 강화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2) 강화군 사업여건

- 대상지 인근에는 강화산성, 남산, 강화풍물시장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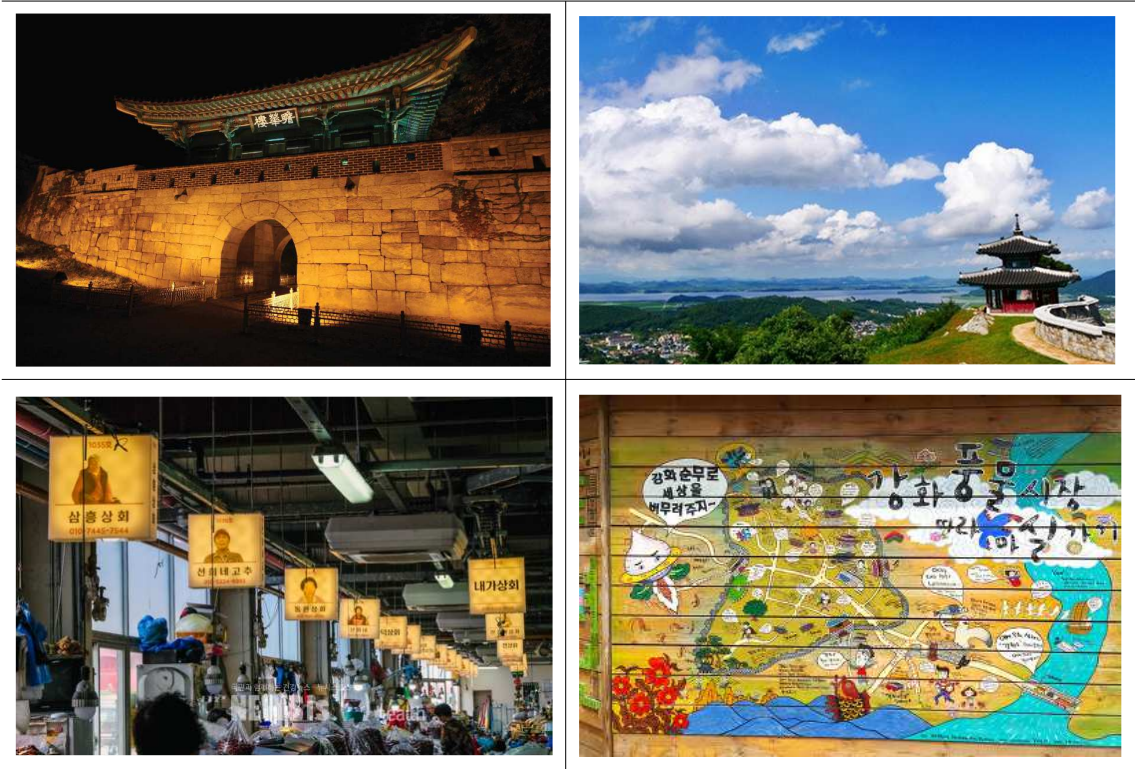


표 113. 대상지 강화군 부지

	축제명	시기 · 장소	주요행사
<p>고려산 진달래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4월 (2주간) · 고인돌광장 및 고려산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달래 체험전 · 진달래 핸드폰 사진전 · 진달래 엽서전
<p>강화 개천대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월 (3일간) · 참성단, 마니산 상설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예술단체 공연 · 단청 악세서리 만들기 · 강화원드오케스트라 공연
<p>강화 새우젓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월 (3일간) · 외포리 젓갈어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 장어잡기 대회 · 새우젓 만들기 · 김치 담그기 행사
<p>강화 고려인삼 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월 (2일간) · 강화대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테마 체험행사 · 인삼경매
<p>삼랑성 역사문화 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월 (8일간) · 강화 전등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대제 · 강화 마당극 · 가을음악회

표 114. 강화군 주요 축제 현황 (자료 : 강화군 문화축제 홈페이지, 2016)

2.3.3. 홍천군

1) 홍천군 건립 대상지 현황 분석

- 본 인삼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지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43-1 일원으로, 지목은 대이며, 총 면적은 1,557㎡ 임
- 또한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임

대상지	·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43-1 일원
면적	· 1,557㎡
개별공시지가 (원/㎡)	· 1,596,000원 (무상임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 노외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대정화구역
용적률·건폐율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1,300%이하

표 115. 홍천군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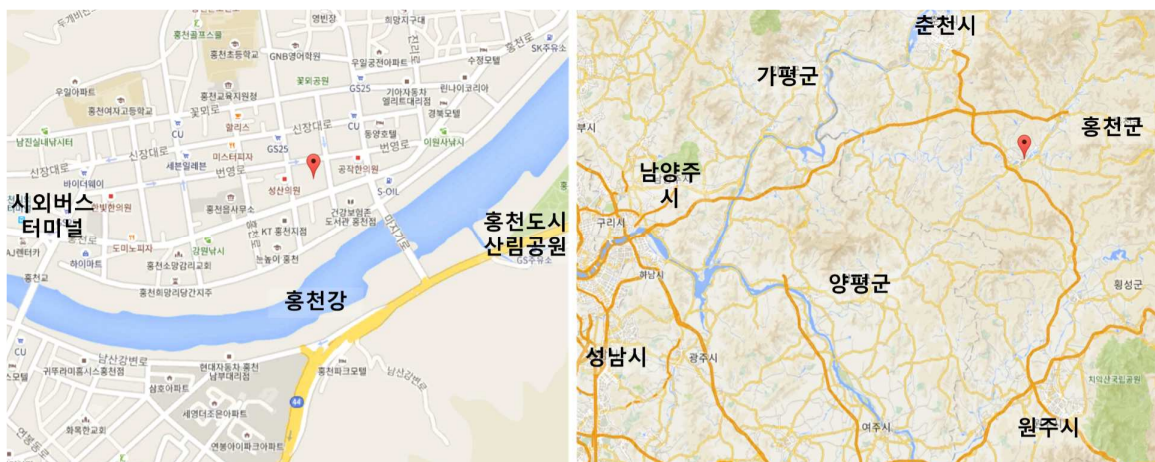


그림 23. 홍천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2) 홍천군 사업여건

- 대상지는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43-1 일원으로, 대상지 인근에는 토리숲, 홍천중앙시장, 홍천생명건강과학관 등이 있음



표 116. 대상지 홍천군 부지

축제명		시기 · 장소	주요행사
<p>홍천 찰옥수수 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7월 (3일간) ·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트 맥주광장 · 옥수수 도넛 만들기 · 홍천강 카약체험
<p>인삼 한우 명품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월 (5일간) ·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주막거리 재연 · 호박터널 LED 포토존 · 씨름한마당
<p>나라꽃 무궁화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8월 (2일간) · 홍천시내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천강가요제 · 풍물시장 · 야시장
<p>홍천강 꽁꽁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월 (17일간) · 홍천교~화양교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손 송어잡기 체험 · 송어 낚시터

표 117. 홍천군 주요 축제 현황 (자료 : 홍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2016)

2.3.4. 금산군

1) 금산군 건립 대상지 현황 분석

- 본 인삼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399 금산인삼 종합전시관 광장 일원으로, 지목은 답이며, 총 면적은 3,942㎡ 임
- 또한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대상지	·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399 금산인삼 종합전시관 광장 일원	
면적	· 3,942㎡	
개별공시지가 (원/㎡)	· 607,500원 (무상임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인삼헬스케어특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적률·건폐율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준주거지역	· 건폐율 90% 이하 · 용적률 500% 이하

표 118. 금산군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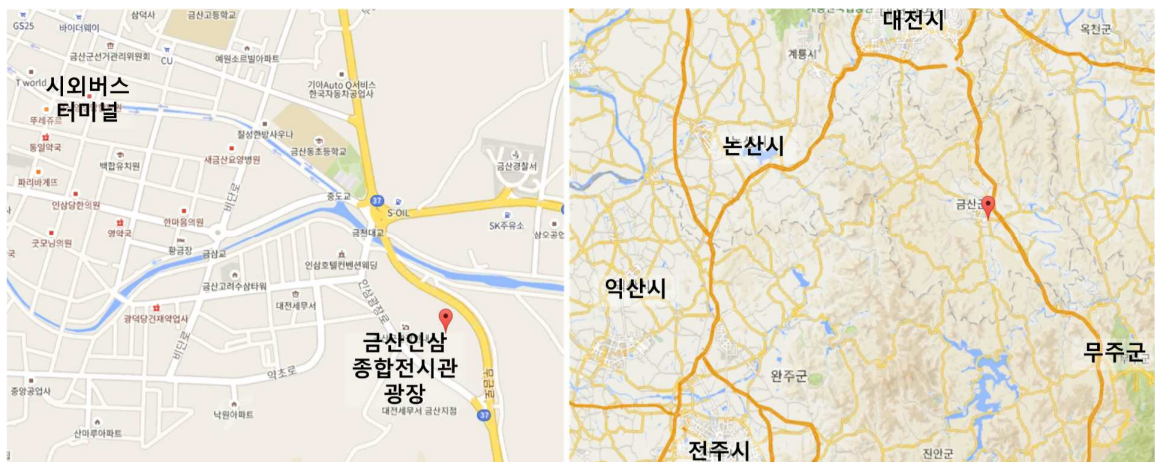


그림 24. 금산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2) 금산군 사업여건

- 대상지는 금산인삼 종합전시관 광장 부지로, 대상지 인근에는 금산직판장, 금산인삼 약초건강관, 금산한방스파 및 호텔 등이 조성됨



표 119. 대상지 금산군 부지

	축제명	시기 · 장소	주요행사
금산인삼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9월말~10월초 (9일간) · 금산인삼관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캐기체험 · 인삼/약초병 만들기 · 국제인삼교역전
비단고을 산꽃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4월 (2일간) · 군북면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걷기대회 · 난타 소리 한마당 · 국악관현악 연주회
금강 여울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7월 (2일간) · 금강놀이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스포츠 게임 · 강촌 외갓집 체험 · 전통민속공연

표 120. 금산군 주요 축제 현황 (자료 : 금산군 홈페이지, 2016)

2.3.1. 서산시

1) 서산시 건립 대상지 현황 분석

- 본 인삼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산85번지 일원으로, 지목은 묘지이며, 총 면적은 25,476㎡ 임
- 또한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제한보호구역,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대상지	·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산85번지 일원
면적	· 25,476㎡
개별공시지가 (원/㎡)	· 9,780원 (무상임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제한보호구역, 상대정화구역
용적률·건폐율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표 121. 서산시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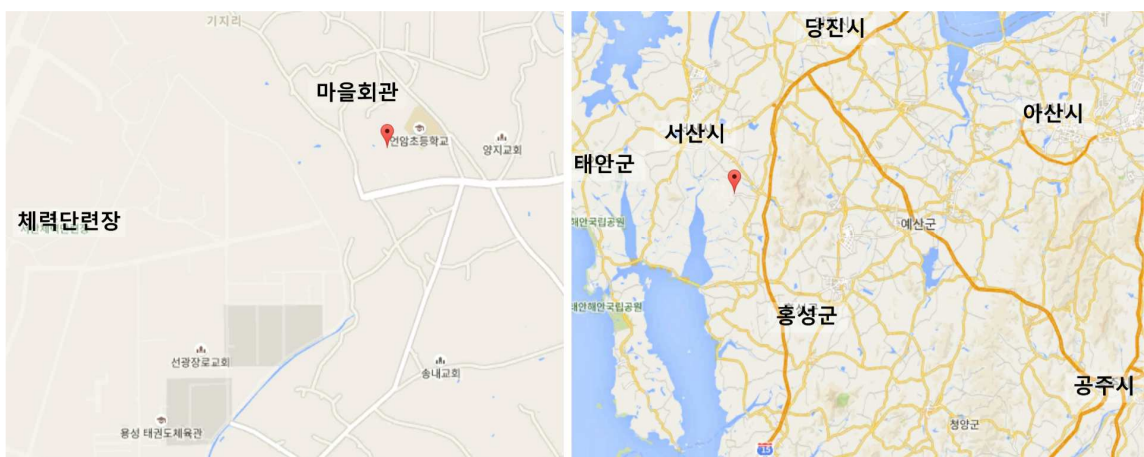


그림 25. 서산시 대상지 위치 및 현황

2) 서산시 사업여건

- 대상지는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산85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인근에는 해미읍성, 순교성지 등이 있음



표 122. 대상지 서산시 부지

	축제명	시기 · 장소	주요행사
서산 어리굴젓 축제		· 매년 10월 (2일간) · 간월도리 일원	· 수산물 맨손잡기체험 · 갯마을 장터 운영 · 바다음식 장터 운영
서산 빨낙지 먹물축제		· 매년 10월 (3일간) · 종리포구 일원	· 감태떡 만들기 · 바지락 캐기체험 · 낙지비빔밥 무료시식코너
해미읍성 전통문화 공연		· 매주 토요일 · 해미읍성	· 지역 예술인 공연 · 줄타기 · 무예
삼길포 우럭독살 축제		· 매년 10월 (3일간) · 삼길포항	· 찰흙 물고기 만들기 체험 · 생선구이체험 · 삼길포 옛 사진전
서산국화 축제		· 매년 10월~11월 · 고북면 일대	· 구기자와 국화꽃터널 · 식용국화따기 · 전통무용 예술공연
팔봉산 감자축제		· 매년 6월 (9일) · 양길리 주차장 일원	· 감자 기네스 게임 · 감자홍보관/감자탑 전시 · 농/특산물 즉석경매
류방택 별 축제		· 매년 5월 (1일) · 서산류방택 천문 기상과학관 앞	· 조립식 굴절망원경 만들기 · 실리콘 별 만들기 · 첨성대 만들기
서산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 매년 10월 (3일) · 해미읍성	· 가마솥 주먹밥 체험 · 관아 마당극 · 보부상 경매

표 123. 서산시 주요 축제 현황 (자료 : 서산시 홈페이지, 2016)

2.3.6. 부여군

1) 부여군 건립 대상지 현황 분석

- 본 인삼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78번지 외 3필지 일원으로, 지목은 답이며, 총 면적은 4,000㎡ 임
- 또한 대상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임

대상지	·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78번지 일원
면적	· 4,000㎡
개별공시지가 (원/㎡)	· 40,500원 (무상임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개발촉진지구, 하수처리구역
용적률·건폐율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이하

표 124. 부여군 대상지 현황



그림 26. 부여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2) 부여군 사업여건

- 대상지는 규암면 오수리 78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인근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여롯데리조트, 백제문화단지 등이 조성됨



표 125. 대상지 부여군 부지

축제명	시기 · 장소	주요행사
백제 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9월 (9일간) · 부여군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대종 타종 기념행사 · 4대왕 추모제 · 부여 청소년 오케스트라
부여서동연꽃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7월 (10일간) · 공남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 · 탈춤극 공연 · 사랑의 불꽃쇼

표 126. 부여군 주요 축제 현황 (자료 : 부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2016)

2.3.7. 음성군

1) 음성군 건립 대상지 현황 분석

- 본 인삼박물관 대상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60-17, 260-18 일원으로, 지목은 전이며, 총 면적은 5,149㎡ 임
- 또한 대상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현재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임

대상지	· 금왕읍 오선리 260-17, 260-18 일원
면적	· 5,149㎡
개별공시지가 (원/㎡)	· 30,600원 (무상임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용적률·건폐율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이하

표 127. 음성군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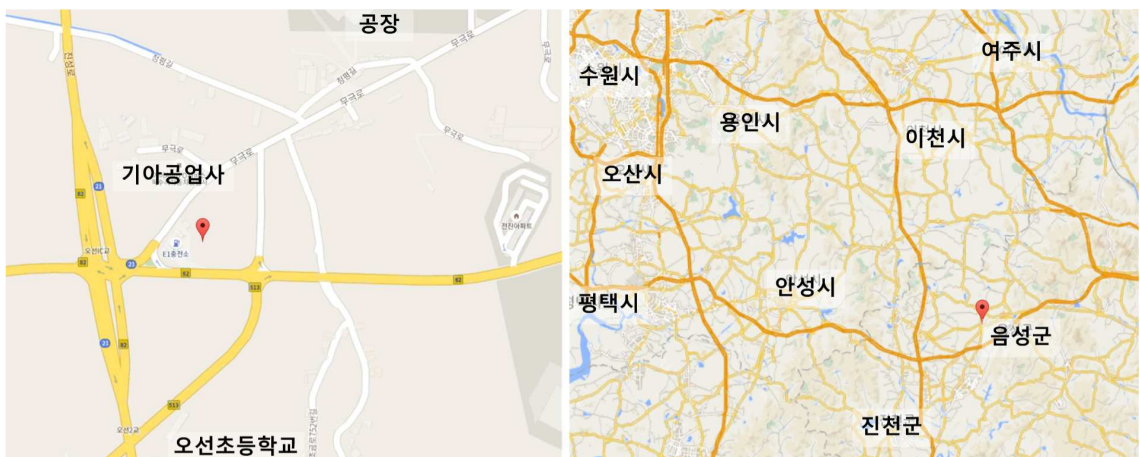


그림 27. 음성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2) 음성군 사업여건

- 대상지는 금왕읍 오선리 260-17, 260-18 일원으로 대상지 인근에는 음성금왕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가 있으며, 용담신도시 산림공원 및 광명선원이 조성됨



표 128. 대상지 음성군 부지

	축제명	시기 · 장소	주요행사
음성품바 축제		· 매년 5월 · 설성공원 야외음악당 일월	· 스탬프 투어 · 품바촌 운영 · 사랑나눔 장터
설성 문화제와 음성청결 고추축제		· 매년 9월 · 음성읍 종합운동장	· 군민노래자랑 · 민속놀이 · 고추요정 선발대회
음성인삼 축제		· 매년 10월 · 금왕 응천 하상주차장 일원	· 인삼수확체험 · 홍삼 인절미 만들기 · 인삼 전시 및 판매

표 129. 음성군 주요 축제 현황 (자료 : 음성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2016)

2.3.8. 진안군

1) 진안군 건립 대상지 현황 분석

- 본 인삼박물관 건립지원 대상지는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29 일원으로, 지목은 임야이며, 총 면적은 72,968㎡ 임
- 또한 대상지는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임

대상지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29 일원
면적	· 72,968㎡
개별공시지가 (원/㎡)	· 2,170원 (무상임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계획관리지역,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용적률·건폐율	· 건폐율 40% 이하 · 용적률 100%이하

표 130. 진안군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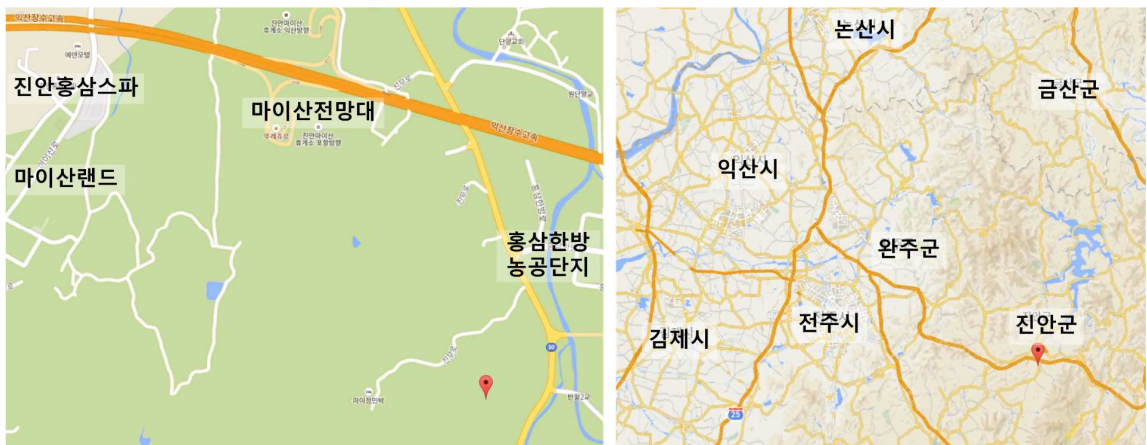


그림 28. 진안군 대상지 위치 및 현황

2) 진안군 사업여건

- 대상지는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29 일원으로, 대상지 인근에는 마이산, 진안홍삼스파, 진안역사박물관 등이 조성됨



표 131. 대상지 진안군 부지

	축제명	시기 · 장소	주요행사
진안홍삼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0월 (5일간) · 마이산 북부 마이돈 테마파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굿 한마당 · 홍삼마라톤대회 · 진안고원 김치담그기
동향 한여름 수박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8월 (2일간) · 동향면 체련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나는 예술버스 · 수박공예 · 수박 및 한우 할인판매
진안군 마을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8월 (2일간) · 진안군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고원길 달빛걷기 · 여름한마당
원연장꽃 잔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4월 (3일간) · 진안읍 원연장마을 꽃잔디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걀꾸러미 만들기 · 꽃잔디 사진 전시 · 먹거리 장터
운장산 고로쇠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3월 (2일간) ·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로쇠 증산기원제 · 고로쇠 수액채취 체험 ·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표 132. 진안군 주요 축제 현황 (자료 : 진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2016)

III. 박물관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3.1. 건립 기본구상

3.2. 기능 및 규모검토

3.3.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 계획

3.4. 전시컨텐츠 구상

3.5. 관리 및 운영계획

3.6. 사업비 투자계획

3.7. 향후 사업추진 방안

III. 박물관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3.1 건립 기본구상

3.1.1. 건립 기본방향

□ 건립기본방향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건립기본방향은 건축공간 프로그램, 전시공간 프로그램, 외부공간 프로그램, 서비스 공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 건축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실내외 프로그램과 관람객 서비스 공간(체험 및 판매서비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건축공간 : 공간적 다양성 부여, 방문객의 방문 및 장시간 체류 유도, 지역관광명소화에 적합한 건축양식 도입
- 전시공간 : 참여와 재미를 통한 고려인삼의 역사, 문화, 과학의 체험 외국관광객 및 해외바이어들에 대한 고려인삼의 명품이미지 전달
- 외부공간 : 지역관광인프라와 연계된 자연스런 방문객 유도, 야외 체험 전시공간의 적극적 활용, 지역프로그램과 적극적 연계 운영
- 서비스 공간 : 인삼관련 제품의 판매 및 체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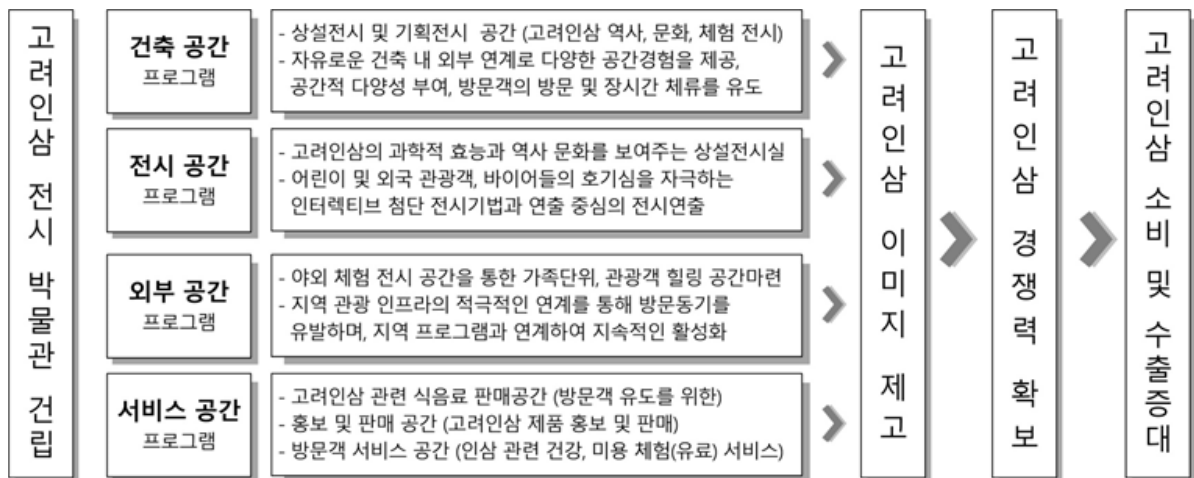


그림 29.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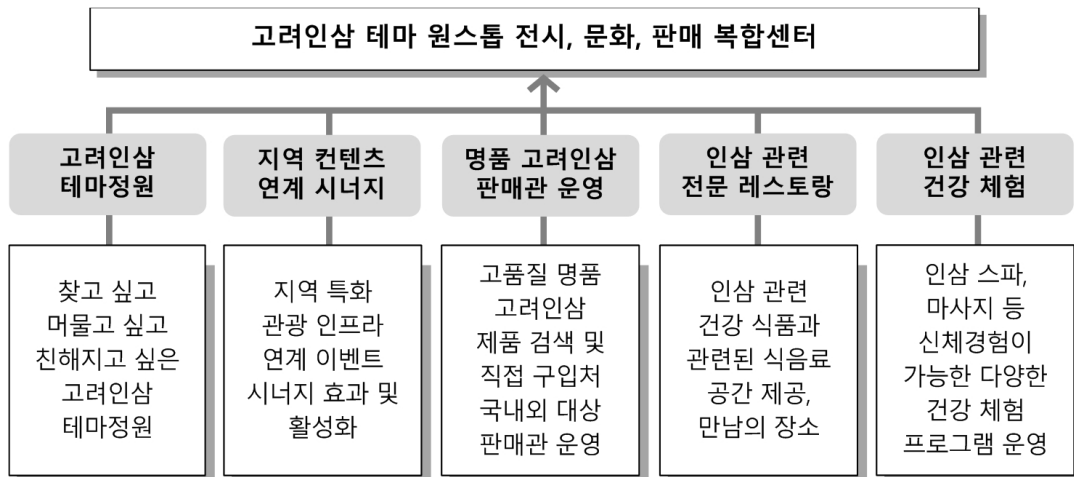


그림 30.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실내외 공간 프로그램(안)

3.1.2. 건축 및 전시양식의 방향

1) 건축 양식의 검토

고려인삼의 명품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건축양식(style)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사례 검토는 다음과 같다.

□ Tomioka-city-hall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단지형 배치
- 중정형 배치를 통한 다양한 외부 공간 형성
- 동양적 디자인으로 특색있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 추구



그림 31. Tomioka-city-hall in japan / Kengo-kuma

□ Cluny House

- 모던오리엔탈 디자인 기법을 사용하여 명품이미지의 고려인삼 이미지 전달
- 전시 및 판매, 관리 등 기능 부여에 유리한 공간구성



그림 32. Cluny House in Singapore / Neri & Hu Design

□ Jixi Museum

- 모던오리엔탈 디자인 기법을 사용하여 명품이미지의 고려인삼 이미지 전달
- 전시 및 판매, 관리 등 기능 부여에 유리한 공간 구성
- 외부공간의 다양한 Promenade(산책길) 설치로 찾고 싶은 명소로 개발



그림 33. Jixi Museum in china / China Architecture Design Institute Co.

□ **Nelson Atkins Museum of Art**

- 반투명성을 통한 비물질성을 유도하여 동양적 감성표현이 가능한 형태
- 자연과 인공의 대비적 조화를 유도하여 상징성 강화
- 건축프로그램을 통한 방문동기를 부여하는 건축 형태



그림 34. Nelson Atkins Museum of Art / Steven Holl

□ **Gallery of Los Angeles Museum of the Holocaust**

- 생태적 건축요소를 도입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계획
- 건축 내외부의 자연스런 공간을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부여, 힐링 명소화
- 고려인삼 콘텐츠 이외의 건축 및 외부 공간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통한 명소화



그림 35. Gallery of Los Angeles Museum of the Holocaust / Belzberg Architects

□ Organic Farm



그림 36. Organic Farm, Hebei, China, 2016 Architecture Site Area: 6,000 sqm

2) 전시 양식의 검토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전시주제는 크게 고려인삼의 역사, 문화, 과학을 다루어야 한다. 과거 방식의 전시연출에서 나아가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전시연출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 이미지 기반의 전시메시지 전달

- 이미지 기반(Spatial Codes) 전시연출로 짧고 강렬한 메시지 전달 가능
- 현대 전시연출의 패러다임으로 관람객에게 적극적인 메시지 전달 가능
- 시각, 청각 등 인간의 다감각을 통한 메시지 전달(광고, 학습, 예술 등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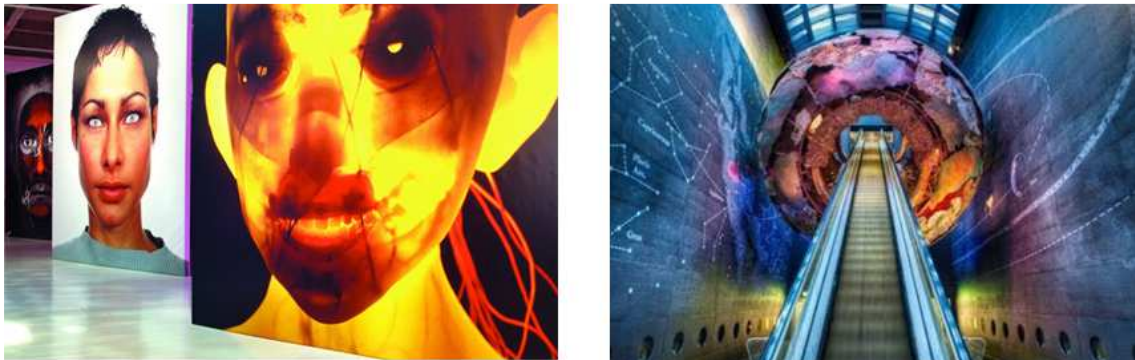


그림 37. 짧고 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이미지 중심의 전시연출, 설명이 필요 없이 다감각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연출 (런던 사이언스 뮤지엄)

- 인삼의 역사와 과학적 효능에 대한 소개 영상, 약 5분 (스토리텔링)
- 별도의 언어가 아닌 영상 및 효과음으로 남녀노소 국적과 관계없이 이해 가능

□ 영상 및 음향을 활용한 단순명료한 메시지 전달

- 최근의 대형, 멀티 프로젝터 및 시야범위내에 연출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 쉬운 집중과 단순명료한 메시지 전달
- 설명위주가 아니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맥락을 활용하는 재미와 위트가 첨부된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물의 구성

- 고려인삼에 대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국적, 언어, 연령대에 관계없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전시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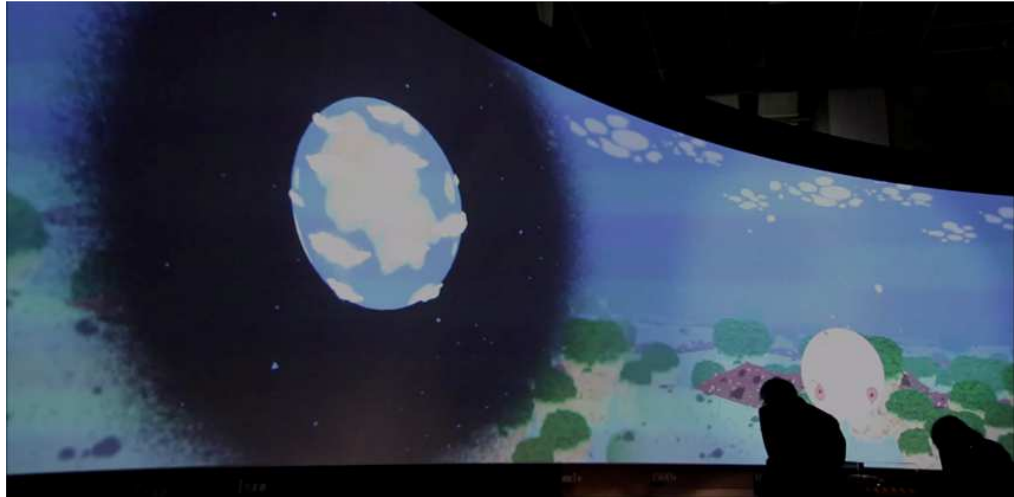


그림 38.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및 음향 메시지 전달. 동경자연사관 전실

□ **인삼에 대한 관람객의 적극적 관찰 유도**

- 인삼의 다양한 표본을 과학적, 체계적 전시를 통해 전달 (설명지양, 표본 전시)
- 인테리어 요소의 지양,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첨단 전시기법 활용

□ **전시 인테리어의 지양, 중장기 교체를 고려한 전시교체 시스템 고려**

- 전시물 중심의 전시연출을 지향하고, 전시 인테리어 요소는 지양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전시 교체와 개선이 용이한 전시 시스템, 방안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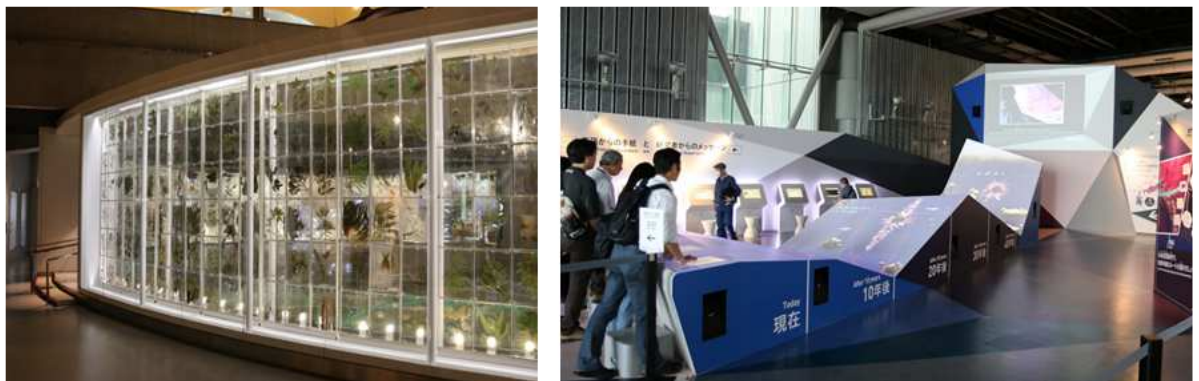


그림 39. 일본 동경 국립자연사박물관 / 동경 미래과학관

3.2. 기능 및 규모 검토

3.2.1. 공간 기능 검토

□ 공간구성 기본구상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기본방향에 따른 공간구성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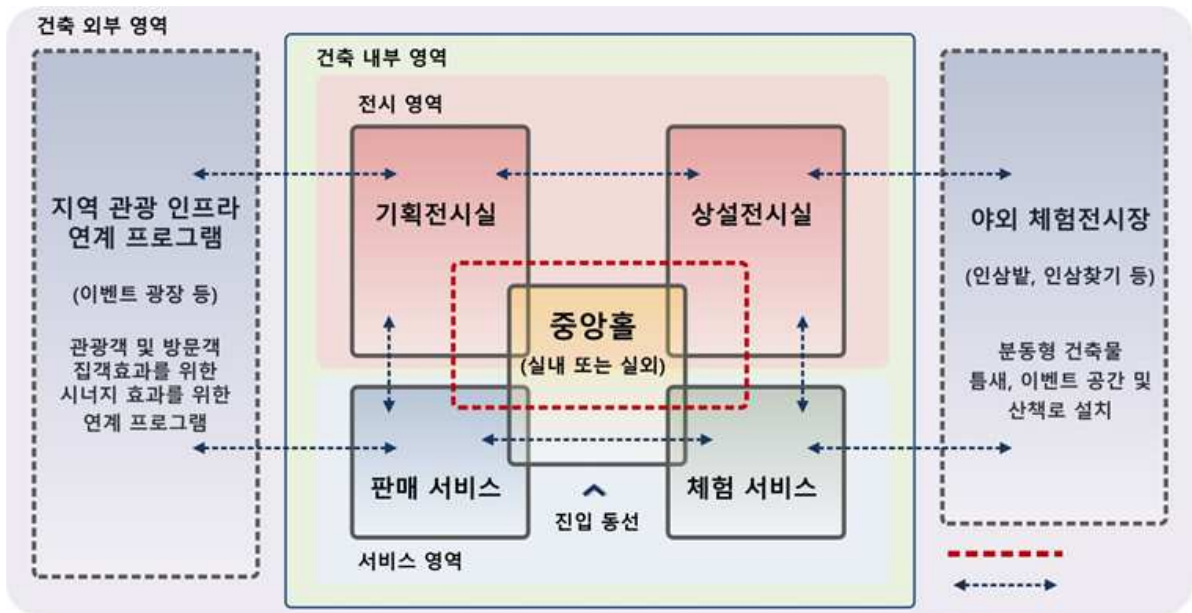


그림 40.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공간구성 기본구상

주요 공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상설전시실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상설전시실로 고려인삼의 역사, 문화, 과학을 주제로 하는 전시실
- 기획전시실 : 지역관광인프라, 예술 및 고려인삼 이벤트 등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기획전시실
- 체험서비스 공간 : 고려인삼과 관련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 공간(일부 유료)
- 판매서비스 공간 : 고려인삼 제품을 쇼핑하고 구입할 수 있는 판매공간

3.2.2. 공간 규모검토 (스페이스 프로그램)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검토는 9,000㎡, 8,000㎡, 7,000㎡의 세 가지 경우를 검토하였다.

연면적	1안 9,000	2안 8,000	3안 7,000
지하시설 20% 적용시 (수장고 등)	7,200	6,400	5,600
구 분	면적		
A : 상설전시동	2,400	2,140	1,900
A-1 상설전시홀	450	400	360
A-2 상설전시테마1(역사관)	750	660	580
A-3 상설전시테마2(과학관)	600	540	480
A-4 상설전시테마3(문화관)	600	540	480
B : 기획전시,수장고	2,750	2,440	2,100
B-1 기획전시실	750	660	580
B-2 수장고및물류창고	1,350	1,200	1,000
B-3 사무,연구,관리	650	580	520
C : 체험및판매	3,600	3,200	2,800
C-1 인삼체험1	900	800	700
C-2 인삼체험2	900	800	700
C-3 판매장	850	750	650
C-4 편의시설	400	350	300
C-5 판매관리	550	500	450
D : 옥외판매관리	250	220	200
D-1옥외관리및화장실등	150	130	120
D-2옥외판매	100	90	80
총계	9,000	8,000	7,000

단위 ㎡

표 133. 규모검토 (스페이스 프로그램 검토)

1안과 2안의 경우는 8개 부지중 3개의 부지에서만 건립이 가능한 규모이며, 3안의 경우 6개의 부지에 건립이 가능한 규모로 검토되었다.

(여기서의 연면적 규모는 지하시설이 20%정도일 경우를 산정 한 것으로 실제 건립최대규모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가능면적을 준수해야 한다.)

시도	시군	부지위치	면적(㎡) 건폐율/용적율 가능 면적	부지 제공	입지조건	입지 규모 검토 (연면적)		
						1안 9,000㎡	2안 8,000㎡	3안 7,000㎡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1,692 40% / 125% 5,800	무상임대 (홍보관 부지)	임진각 관광지역	불가	불가	가능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30,000 20% / 50-100% 6,000	매입	역사 관광 단지	불가	불가	가능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1,557 80% / 1,300% 16,100	무상임대 (20년)	도시/일반 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	가능	가능	가능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3,942 80% / 200% 6,300	무상임대 (30년)	일반상업지역 (인삼헬스케어특 구)	불가	불가	가능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25,476 40% / 100% 10,100	무상임대	계획관리지역 (공군비행장 정문앞)	가능	가능	가능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4,000 40% / 100% 1,600	무상임대 (군유지)	계획지구	불가	불가	불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5,149 40% / 100% 2,000	무상임대 (20년)	계획관리지역	불가	불가	불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2,968 40% / 100% 29,000	무상임대 (20년)	계획지구 용역중	가능	가능	가능

표 134. 지자체 제공부지에 대한 규모검토 (건축법상)

3.3.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 계획

3.3.1. 공간구성 계획

1) 고려인삼의 “역사, 전통성” 부여 방안

□ 채나눔

- 전통 건축 공간 구성인 ‘채나눔’ 방식 도입
- 기능에 따른 분동 형식 : 기능성 강화
- 건물간 사이공간 연출

□ 마 당

- ‘口’ 자 마당 중정을 중심으로 한국적 전통 마당 구성
- 전정, 중정, 후정으로 구성

□ 경사지붕

- 전통가옥의 경사 ‘미’ 구현
- 인삼밭 차양 이미지
- 중정에서의 시각적 확장 유도



그림 41. “역사, 전통성” 부여 참고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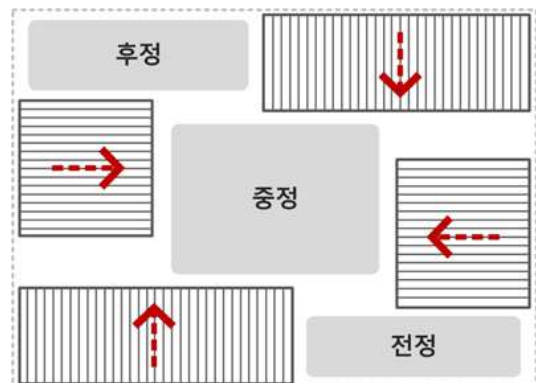


그림 42. 공간구성 개념도

2) 건축계획 방향 및 공간구성 전략

건축계획의 방향과 공간구성 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이 최종 선정된 부지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변형이 가능한 방안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분동형으로 구성된 건축동들은 분동 사이의 다양한 외부공간을 구성하여 관람피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동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대지형상의 보편성 고려

- 현재시점에 선정되지 않은 부지를 고려하여 향후 선정된 부지에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건축배치안 마련

□ 분동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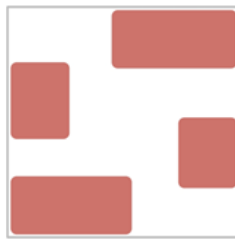
- 분동형 계획안으로 동간 다양한 외부공간 구성 가능으로 다양한 공간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능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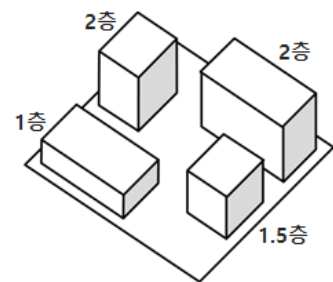
- 부지 미선정에 따른 대지형상의 보편성 고려
- 관리·운영의 합리성 부여
- 차후 본 설계시 다양성 유도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심의 공간구성)

STEP 2.



- 분동형 계획을 통해 대지 형상에 따른 배치 유동성 고려
- 동간 다양한 외부 공간 구성을 통한 관람 피로도 감소 유도
- 전시 목적 및 내용에 따른 동별 특성 강화

STEP 3.



- 동별 건축물의 층고 및 층수를 용도에 따라 구성
- 기능성 강화
- 다양한 공간체험 유도
- 전체 외관의 스카이라인 고려

그림 43.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축계획 방향 및 공간구성 전략

3) 외부공간 계획

외부공간계획은 공공 문화공간의 외부공간 중요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외부공간 및 프로그램을 유도하였다.

□ 건축 내외부의 유기적 연결

○ 분동형 건축 구성을 통해 내외부의 다양한 시퀀스 연출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인상적이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관람피로를 억제하여 장시간 체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메시지를 효과적 전달할 수 있다.

□ 외부공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인접 시설 또는 지역 문화 프로그램들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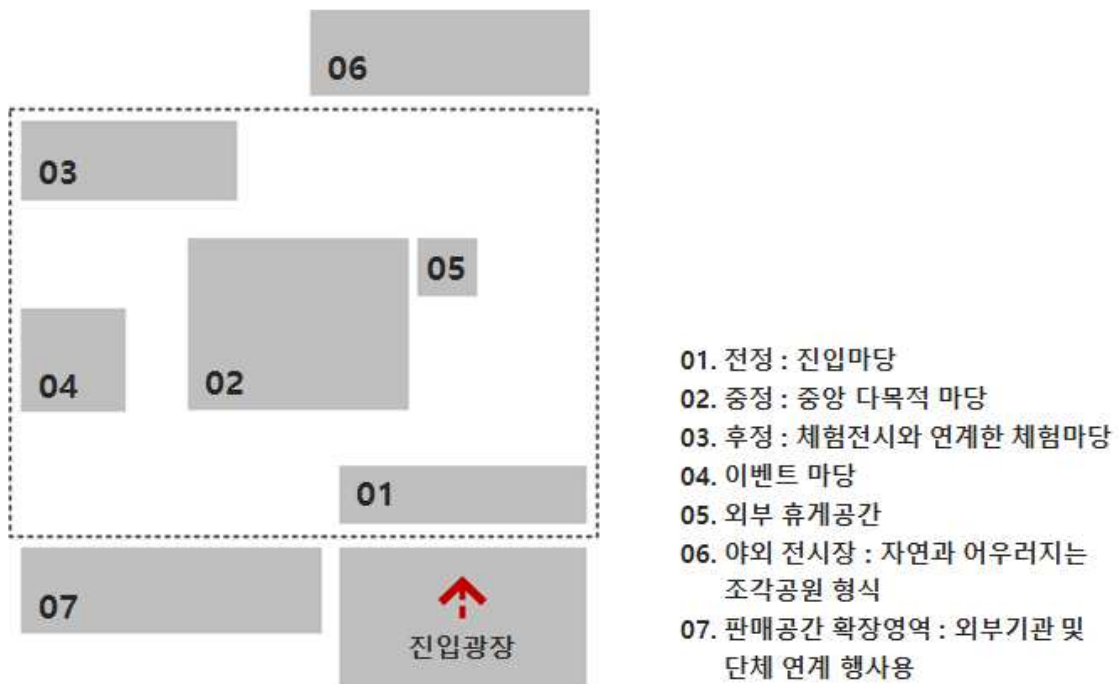


그림 44. 외부공간 계획

3.3.2. 시설배치 계획

□ 분동형식의 단지화 : 기능성 강화 및 공간의 다양성 유도

- 대지 미확정에 따른 보편적 대지에 적용이 가능토록 구성 기능별 적정 위치 및 규모를 중심으로 단지화 하여 계획함
- 분동형 배치를 통해 기능에 따른 Zoning을 명확히 하여 용도별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배치하여 내·외부간의 적극적인 흐름 유도하고 전시 관람자의 장시간 관람에 따른 피로도를 최소화해야 함
- 용도에 따라 동별 층고를 달리하여 공간의 다양성 및 외관 스카이라인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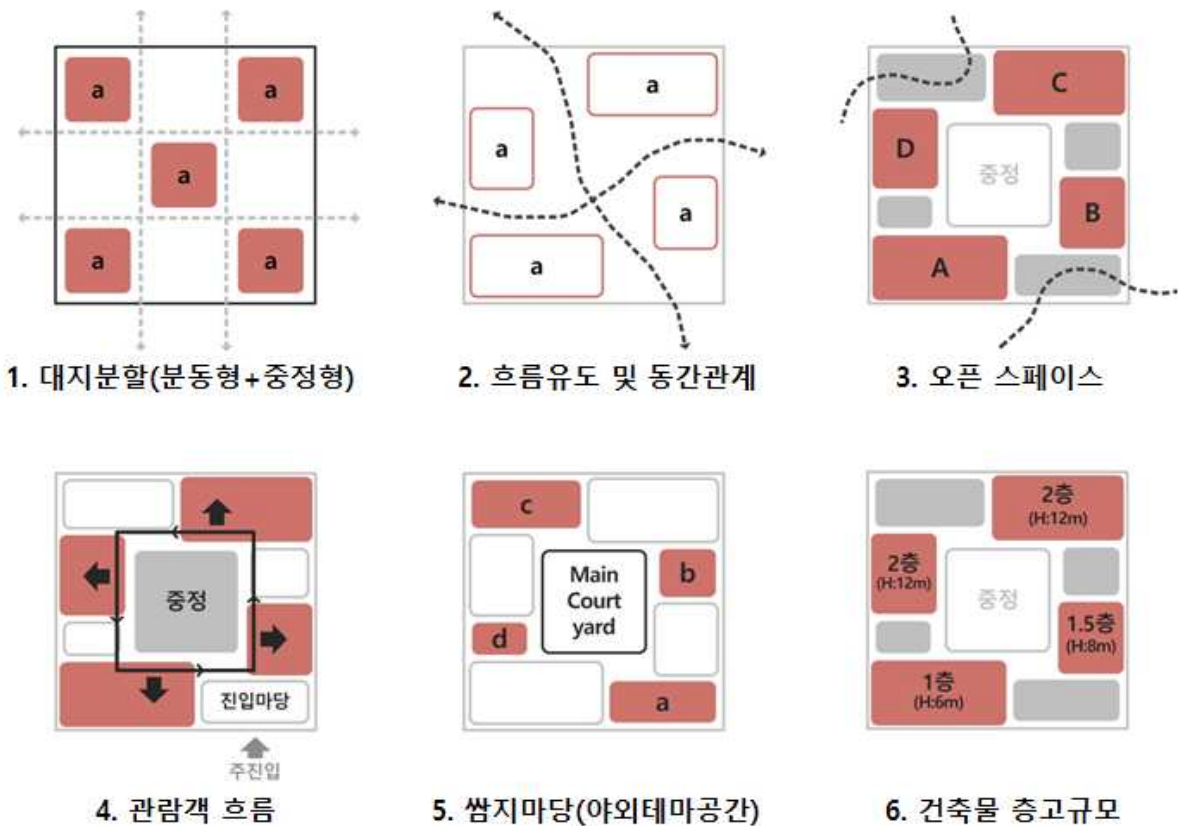


그림 45. 시설배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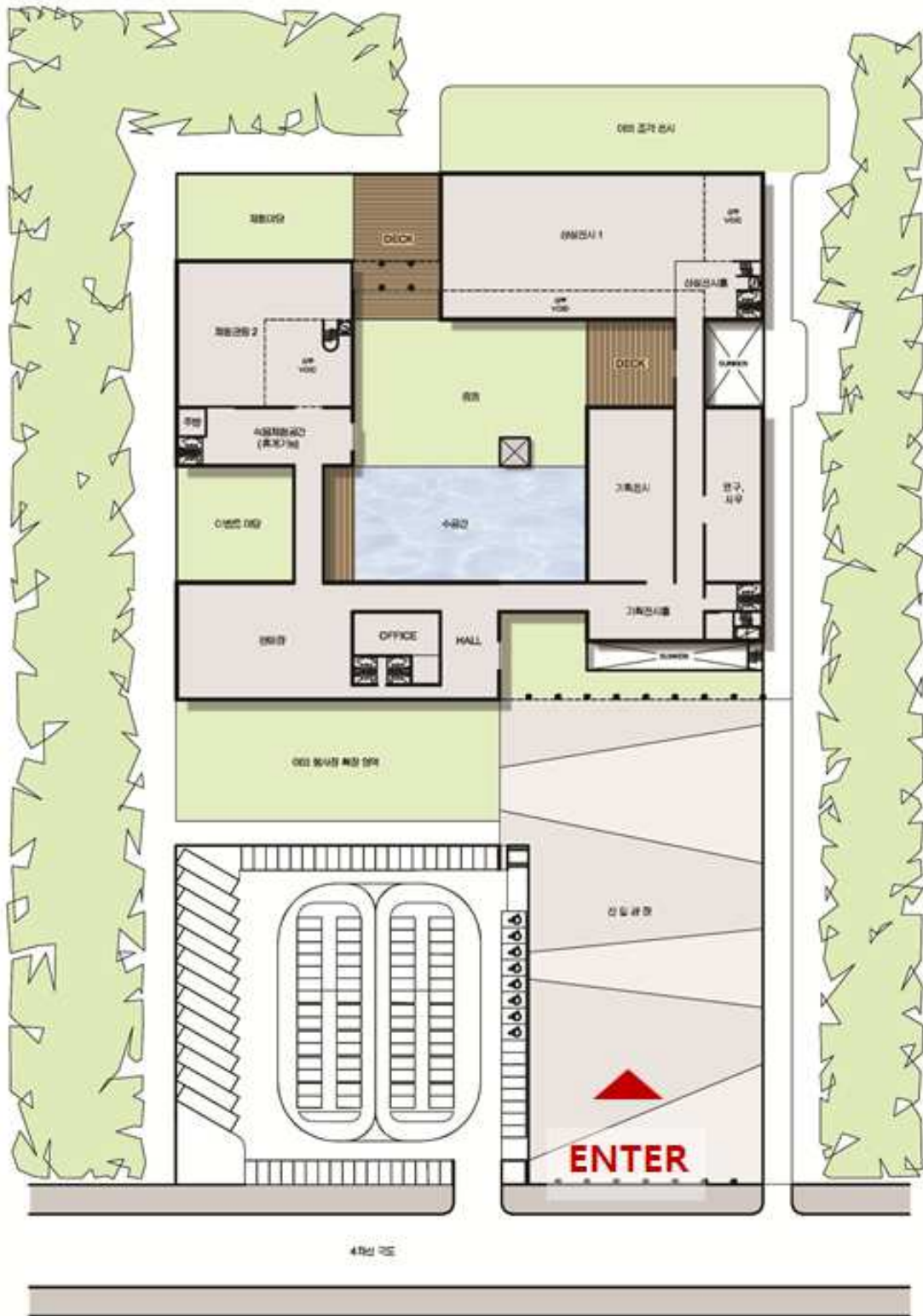


그림 46.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시설배치도(안)

3.3.3. 평면도(안)

□ 1층 평면 구성 방안

-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기획 전시동, 상설 전시동, 체험 서비스동을 순환 동선에 따라 계획하여 흥미유발, 학습, 체험의 스토리텔링 과정을 공간배치에 적용함
- 주진입부와 판매서비스공간을 한 동안에 구성하여 관람의 시작과 끝을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편의 및 체류시간 등 관람자의 이용 행태를 반영함



그림 47.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1층 평면도(안)

□ 2층 평면 구성 방안

- 상설전시 및 체험서비스 공간은 복층으로 계획하고 Void를 구성하여 다양한 공간감 유도하는 동시에 대형 전시물 설치를 가능토록 함
- 전면 2개동(기획전시동 및 홀·판매동)의 건물 높이를 낮게 설정하여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다양한 마당과 함께 외부경관 조망 유도



그림 48.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2층 평면도(안)

□ 지하층 평면 구성 방안

- 지하층은 수장고1, 2를 배치하여 향후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유물 보관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기획 전시장과 상설 전시장의 직접연결 동선을 확보함
- 계획 단지 우측에 위치한 관리 동선과 바로 연결되는 별도의 화물 리프트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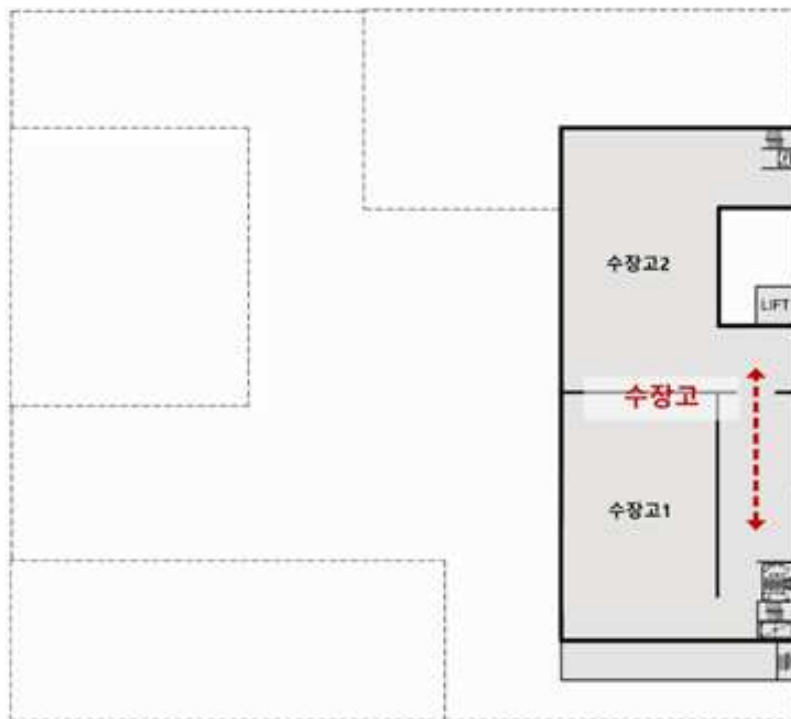


그림 49.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지하층 평면도(안)

□ 관람 동선 계획

- 홀, 기획전시동, 상설전시동, 체험서비스동, 판매동 순으로 동선을 구성함
- 상설전시동과 체험서비스동을 2층에서 바로 연결하여 회귀동선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전개 유도함

순서	내용
기획전시동	예술, 미술 및 행사등 특화
상설전시동(1F)	홀, 역사관
상설전시동(2F)	과학관, 문화관
체험서비스동(2F)	찜질, 스파 등 관리 서비스
체험서비스동(1F)	인삼 제품 체험, 식음료 판매
판매서비스동	인삼 관련 제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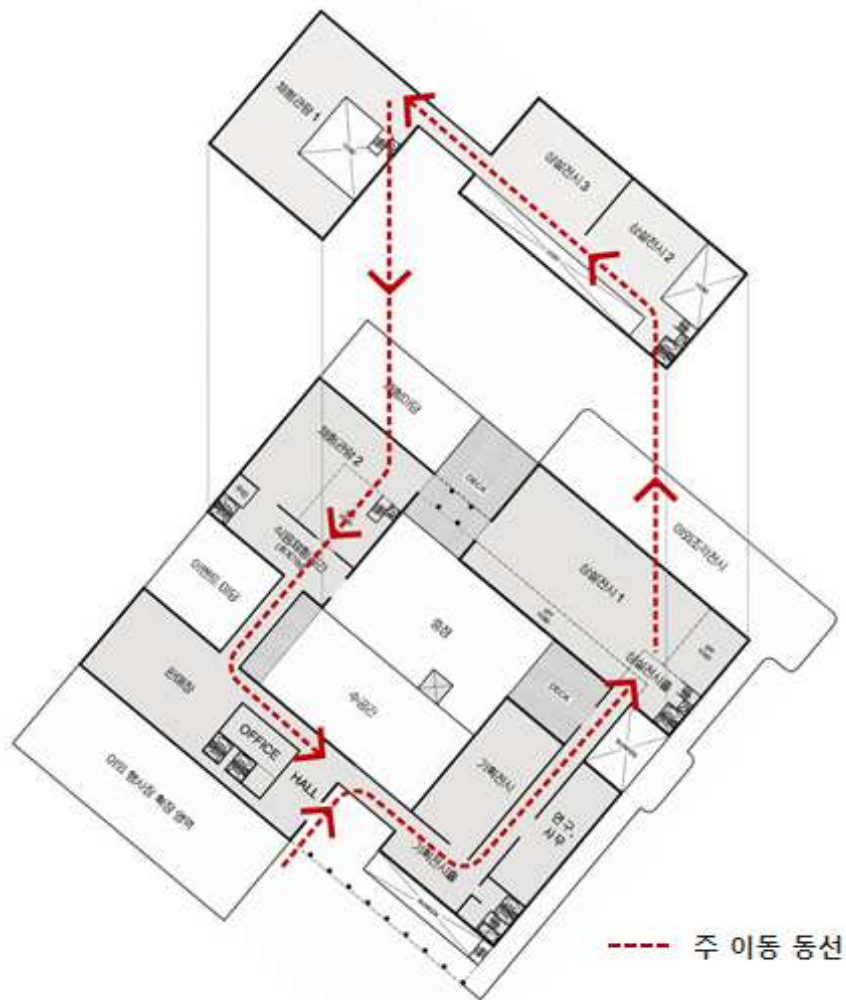


그림 50. 관람 동선 계획

3.3.4. 외부경관 및 내부공간 예시

□ 고려인삼 박물관 조감도 예시안

- 현재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건축비 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 건물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박물관 배치안 (향후, 현상설계를 통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 예정)



그림 51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조감도 예시안

- 진입광장 및 주차장, 체험마당의 위치에 따라 선정대지에 유통성 있게 적용 가능함

□ 내부공간 투시도 예시안

○ 다양한 전시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계획인 유니버설스페이스 반영



그림 52. 내부투시도 1. 체험서비스동 2층



그림 53. 내부투시도 2. 상설전시동 1층

3.4. 전시컨텐츠 구상

3.4.1. 전시계획의 기본방향

1) 전시계획의 주안점

□ 차별화(쉽고 빠른 이해)된 전시연출 방향

- 이미지 기반(Spatial Codes) 전시연출로 짧고 강렬한 메시지 전달 가능
- 현대 전시연출의 패러다임으로 관람객에게 적극적인 메시지 전달 가능
- 시각, 청각 등 인간의 다감각을 통한 메시지 전달(광고, 학습, 예술 등 추세)



그림 54. 짧고 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이미지 중심의 전시연출
인삼에 대한 사진 및 예술작품의 배치 (런던 사이언스 뮤지엄)

○ 이미지 중심의 전시연출, 감성적, 정서적 연출

이미지 중심(공간적 부호)의 전시연출은 관람객이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추가적인 정보는 최근 모두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 관람객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 요인은 전시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인간의 시각범위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바닥을 포함하는 대형화면 또는 2개면 이상의 화면을 차지하는 시야에 가득 찬 장면연출.

불필요한 인테리어 요소, 쇼케이스 형태 등은 부가적인 것으로 전시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

○ 전시물의 내용은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달

인삼의 생태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패널과 또는 영상을 통해 해당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나 VR 또는 영상을 통해 해당 전시의 메시지를 단편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복수의 정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관람객이 시공간과 함께 경험하는 것을 유도한다.

○ 관람객 개인이 아닌 다수가 함께 동시 경험이 가능한 형태

관람수요층이 경험해온 과거의 기억과 중첩되는 정서적 사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전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가족간, 또는 다른 관람객과도 공유 공감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는 전시연출 기법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시컨텐츠 및 공간 구성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해외 시장 및 국내 소비계층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한 고려인삼의 역사와 가치를 내·외국인에게 홍보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을 통한 고려인삼의 재발견과 미래를 향하여 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과 인삼의 역사, 문화, 과학을 홍보
- 국제 인삼시장에서 고려인삼의 품질과 역사, 과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해외시

장 소비확장 및 국내 인삼시장 확대를 통한 인삼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 수도권과의 양호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여가, 문화, 체험을 겸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효율성을 부각

□ 주요 전시컨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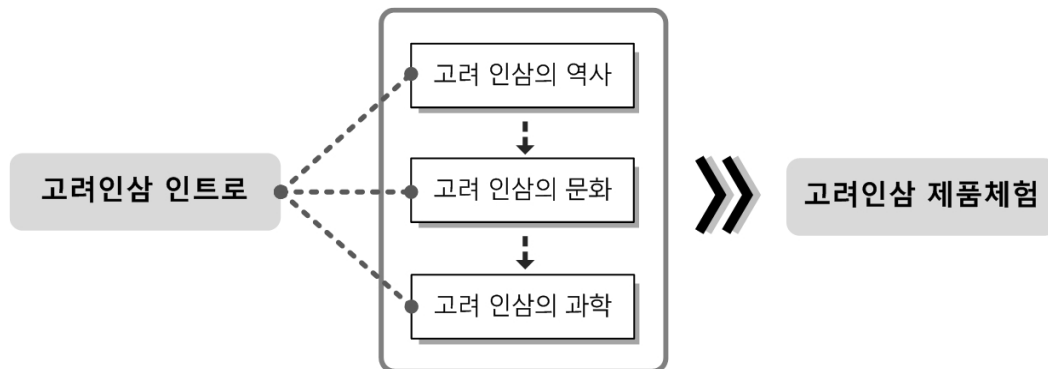


그림 55. 주요 전시컨텐츠

□ 고려인삼 인트로 (전실)

- 상설 전시실로 진입하기 전에 적정한 공간에 인삼의 역사, 과학,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동영상 형태의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영상물을 관람객에게 제공한다. 해당 동영상은 역사, 과학,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고려인삼 전시 박물관”의 정체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한국어의 음성 안내를 지양하고 애니메이션, 실물표본 등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와 효과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연출한다.

□ 상설전시실

- 인삼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상설전시실이며, 고려인삼의 역사를 전시한다.

인삼과 관련된 역사속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려인삼의 고유한 역사와 가치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고려인삼의 전통과 역사성을 전달하여 오랜시간 한반도와 함께 한 고려인삼의 가치를 재조명 한다.

- 다음 전시주제 및 세부 전시 내용은 초기 단계의 안으로써, 향후 건립추진단

계에서, 특히 전시컨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의 확정단계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하되 보다 발전시키고 연구된 내용을 통해 전시내용을 확정하게 된다.⁵⁾

전시주제	세부 전시 내용
신이 내린 축복	인삼의 유래, 역사속의 인삼
	홍삼의 기원
	개성 인삼 이야기
조선의 보물 세계로 나아가다.	인삼을 둘러싼 역사속 인삼이야기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인삼)
	세계로 나아간 조선의 보물 (서구문화와 인삼)
	17세기 유럽의 한류, 인삼

표 135. 상설전시(인삼의 역사) 전시 내용

- 인삼의 과학을 주제로 하는 상설전시관은, 고려인삼의 실물 표본 등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며, 인삼의 과학적 효능 효과를 입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인삼의 효과와 작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를 반영하여 어린이, 외국인들에게 친근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삼의 문화, 인삼이 인류문화에 미친 영향등을 보여주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려인삼이 활용되는 다양한 문화를 전달한다. 한국인의 삶과 고려인삼을 주제로한 설화, 신화, 생활속 이야기등을 전달한다. 또한 인삼에 대한 직,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고려인삼 체험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5) 옥순종, 은밀하고 위대한 인삼이야기, 이가서, 2016.

전시주제	세부 전시 내용
생명의 뿌리	고려인삼과 사포닌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인삼의 정체
인삼과 건강	현대인의 질병과 인삼의 효능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동반자, 인삼의 효능
첨단과학과 고려인삼	첨단과학으로 키우는 고려인삼 이야기

표 136. 상설전시(인삼의 과학) 전시 내용

3) 상설전시-3 (인삼의 문화)

전시주제	세부 전시 내용
한국문화와 인삼	한국인의 삶과 고려인삼
	근대 이후의 우리역사와 인삼 이야기
세계인이 사랑하는 인삼 이야기	세계인이 사랑하는 인삼 (세계 유명인사들의 인삼 사랑 이야기)
	인삼 전쟁 (인삼의 역사, 문화, 과학의 비교)

표 137. 상설전시(인삼의 문화) 전시 내용

□ 기획전시실

- 지역 및 문화예술 활동, 한류 문화활동 지원
- 고려인삼 관련 제품 발표회 등
- 인삼관련 기획(특별) 전시 개최
- 관련업계 및 기타 이벤트 대관 전시 공간 활용

□ 야외 전시

- 인삼 산업관련 조형물
- 환경 예술 조형물 설치

- 고정형 조형물이 아닌 상시 변경 가능한 형태로 제작
- 옥외체험공간
- 지역 예술 문화 관련 캠프, 지역,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하는 고려인삼 관련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방문객들이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에 대한 친근감 향상을 위해 방문객 편의 시설, 벤치, 야외 식음료 판매시설, 화장실, 전망대 등을 충분히 배려하여, 전시장 내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에 대한 장소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유도.

3.4.2. 전시물 확보 방안

□ 유물확보 여부에 따른 박물관 건립 유형

새로 건립을 준비하는 박물관의 경우 기존 확보된 유물을 바탕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와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따라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시 유물을 확보하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물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경우 본격적인 유물 수집 및 전시 설계 이전에 구체적인 유물 조사 단계가 필요함

다만,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며, 또한 전시홍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전시프로그램의 구성방향에 따라 유관기관과 시설, 단체를 통한 기증, 구입 등 다양한 유물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유물 확보 방법

○ 일반적인 전시유물의 수집 방법

- 일반적으로 소장품은 직접수집과 발굴, 구입, 기증(증여, 유증), 다른 기관으

로부터의 교환, 양도(반환)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음

- 전시자료 확보방안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을 검토하여 추진하며, 자료소장 및 기증, 개인·단체 조사 및 DB를 구축하고 일괄 및 특별기증을 장려함
- 수집정보로는 도서, 잡지, 녹음테이프 등의 자료와 함께 CD, DVD 등 최신 전자정보자료를 모두 포함함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유물 수집 전략

- 일반적인 역사계 박물관과 달리 고려인삼에 대한 역사 문화 과학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향후 전시의 세부적인 연출과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물 구입 또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유물확보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조사된 실물자료 확보방법
구입	공개 구입	입찰 서로 경쟁하는 여러 희망자들이 각각 문서로 가격이나 그 밖에 관한 의사를 나타내어 낙찰로 결정
		경매 하나의 물건을 두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구입하는 방법
	비공개 구입	중개인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격 협상을 거쳐 소장품 구입
기증		경제적 부담이 없는 무상의 수집방법으로 증여와 유증이 있음
복제		현존하지 않거나, 기증자가 없거나, 예산상의 문제로 구입·대여가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 추진
대여		기획전시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료이거나 구입·기증·복제·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추진
교환		쌍방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사료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 필요이상으로 중복된 소장품이 있거나 사료수집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소장품이 있는 경우에 추진

표 138. 유물 확보 방법

3.5. 관리 및 운영계획

3.5.1. 유사시설 운영조직 및 제반사항 검토

1) 시설운영 관련 사항 검토

□ 조례 마련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문화시설을 비영리 법인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조례 주요 내용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구 분	내 용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소속 및 인력구성, 전문요원 채용,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전시물 및 사료관리	사료의 수집, 사료의 정리, 평가, 폐기, 열람 및 대출 규정
사료활용 및 교육관리	학술연구지원, 전시 및 출판, 교육 프로그램
시설운영 및 관리	시설장비기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보칙	관리실태 점검, 보안규정, 기타 규정

표 139.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구성

2) 관리 및 운영방식 구분

- 박물관의 관리 운영방식은 직접경영, 민간위탁, 혼합경영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경영은 박물관 조직 및 인력이 행정조직제계의 일부분으로 흡수, 직접 경영관리하는 방식이며, 위탁은 행정기관, 법인, 연구기관, 개인 등에 비용부담과 관리책임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혼합경영은 일부시

설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다.

-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은 아래 표와 같다. 본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 대한 공익성을 보장하고 시설내 일부 유료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식음료, 판매 시설에 대한 위탁경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장점	단점
직접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사업수행 가능 • 공공성 확보 용이 • 공급 안정성 유지, 자금조달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적 운영 • 경영마인드 결여 • 기술, 서비스 질 향상 곤란
위탁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절감, 민간 전문성 • 고용 탄력성, 신속 대응 • 결과중심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필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소재 • 공익성 훼손, 서비스 중단 우려
혼합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성과 수익성 고려 • 운영인력 감소 •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수탁관리 포기 우려

표 140. 관리·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3) 관리 및 운영 주체 선정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건립규모, 향후 운영을 맡을 재정여건, 박물관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외부 위탁 경영이나 혼합 경영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고려인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목적인 것을 고려하면, 혼합 경영을 통해, 공공성이 반영된 수익활동과 공격적인 인삼 및 공간마케팅(인삼관련한 체험 경험 등을 의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조직구성 및 인력 검토

□ 조직구성 검토

- 조직을 설계한다는 것은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으로, 담당자와 담당업무를 전문화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박물관의 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에 의해 직무를 설계하여 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설정되는 직위를 체계적으로 조합함으로써 편성됨.
- 이와 같이 직위의 설정과 집합과정을 거쳐 작업집단이 형성되고 작업집단간 각 직위간의 관계가 설정된 것이 조직임.
- 이러한 조직구조는 집권적 조직, 분권적 조직, 수평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조직설계는 현장의 기능 및 권한의 강화가 가능한 분권적 조직으로 구성함.
- 여기서 분권적 조직이란 집권적 조직과 달리 업무계획 및 의사결정권한을 현장에 대폭 위임하여 현장에서 자주적으로 계획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직으로, 현장에서 독창력을 직무수행과정에서 발휘하게 하고 창의적 경영·관리를 할 수 있게 함.
- 사례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공립박물관 조직은 관장 아래 기본적으로 학예연구부를 필두로 두고, 그 외 박물관 관리와 운영을 보조하는 부서를 두고 있음. 또한 점차 부서를 세분화하여 전문화해 나가고 있으며, 박물관의 정보화추세에 따른 정보화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있음.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경우 홍보 마케팅이 주요 목적이므로, 학예 및 전시디자인, 홍보, 마케팅 담당부서의 공격적인 인적 구성과 권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박물관의 주요업무 검토

-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중심업무가 될 수 있으며, 그 외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로

구성됨.

- 박물관의 업무를 구분하면 크게 일반관리, 회계, 시설관리, 고객서비스, 전시교육 관련 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업무내용
일반관리	총무, 인사, 기획
회계	예·결산, 회계 및 서무, 계약관리
시설관리	시설공사관리,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전기·통신·기계의 유지관리
고객서비스	안내 및 편의제공, 안전점검 및 홍보
전시교육	전시, 조사연구, 전시물 보존·관리, 교육

표 141.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주요업무

- 박물관 관장은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전문직으로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합리적임.
- 행정지원팀은 박물관의 일반관리 업무와 방문객 편의제공 관련 업무 등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담당함.
- 학예·전시운영팀은 박물관의 전시기획, 소장품 관리, 유물구입, 기본운영계획, 섭외, 교육, 홍보의 역할을 담당함.
- 시설관리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함

5) 유사규모 박물관 운영사례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연면적은 7,000㎡(안)⁶⁾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 2015년 1월 1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부한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박물관 중 연면적 7,000㎡ 내외, 전시면적 2,000-6,000㎡의 유사 규모의 박물관 8개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함. 성격이 다른 대학박물관은 제외하였음.

□ 유사규모 박물관 현황

지역	시군구	1종 /2종	기관명	개관 연월일	주소
서울	성동구	1종	수도박물관	2008.4.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제주	제주시	1종	민속자연사박물관	1984.5.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강원	태백시	1종	태백석탄박물관	1997.5.27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95
서울	서대문구	1종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03.07.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광주	북구	1종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87.11.1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8-25
경기	수원시	1종	수원박물관	2008.10.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이의동)
서울	서초구	미등록	외교사전시실	2006.4.2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번지
경남	진주시	1종	국립진주박물관	2005.3.23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

표 142. 유사규모 박물관 현황

6) 지자체 제공부지에 적합한 규모는 9,000(1안), 8,000(2안), 7,000(3안) 중에 3안이 가장 많은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에 3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유사규모 박물관 시설 면적

기관명	총 부지면적	건물 총면적	상설 전시실	기획/특별전시실	수장고	사회교육실 (세미나, 강당)	자료·도서실	사무실
수도박물관	20,837	6,663	5,478	-	49	94	59	35
민속자연사박물관	31,515	6,719	2,822	190	46	-	11	36
태백석탄박물관	23,811	6,876	3,669	-	510	218	39	154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0,351	7,001	2,667	183	476	123	152	318
광주시립민속박물관	72,655	7,076	2,535	1,068	424	149	54	2,829
수원박물관	39,885	7,118	1,356	327	743	351	89	158
외교사전시실	39,996	7,337	6,086		505	495	-	251
국립진주박물관	17,773	7,588	1,496	787	1,197	182	163	512
시설면적 평균	32,102.88	7,047.25	3,263.63	365.00	493.75	201.50	70.88	536.63

표 143. 유사규모 박물관 시설 면적

□ 유사규모 박물관 소장자료 현황

기관명	소장유물		등록유물	등록문화재	
	유물 종류	유물 개수 (점)	유물 개수 (점)	주요 문화재명	개수(점)
수도박물관	상수도관, 계량기 등 상수도관련유물	841	841	본관, 완속여과지 (시도지정문화재)	1점
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 및 자연사자료	39,047	-	탐라지도병서, 제주삼읍도총지도 등	고고민속10,263점 자연사28,595점
태백석탄박물관	광산장비류 등	7,731	7,731	-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동물, 곤충, 식물 등	34,432	26,605	독수리 등	68점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고문서, 민속품 등	13,859	13,859	정지장군 갑옷 등	보물1건1점, 사적1건 중요민속문화재2건66점 시도지정문화재10건441점
수원박물관	선사유물~근현대 수원관련 및 서예유물	38,921	13,869	박유명초상화 영조어필-음궁진장첩 등	보물3건3점 시도지정문화재9건36점
외교사전시실	조약문서, 외교용품 등	905	905	-	-
국립진주박물관	고고, 서화, 고문서 등	46,179	36,607	도기바퀴장식뿔잔	보물9건9점 시도지정문화재4건270점

표 144. 유사규모 박물관 소장자료 현황

□ 유사규모 박물관 관람료 현황

기관명	연 관람 인원	일평균 관람인원	상 설 전 시 관람료			
			일반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중/고)	19-25세
수도박물관	152,631	491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민속자연사박물관	796,707	2,256	1,100	-	500	500
태백석탄박물관	246,403	737	2,000	700	1,500	2,000
서대문자연사박물관	379,370	1,206	3,000	1,000	2,000	3,000
광주시립민속박물관	318,421	1,040	500	200	300	-
수원박물관	54,954	188	2,000	무료	1,000	2,000
외교사전시설	21,243	7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국립진주박물관	440,350	1,398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평균	301,259.88	923.25				

표 145. 유사규모 박물관 관람료 현황

□ 유사규모 박물관 관람료 할인 현황

기관명	관람료 할인			
	개인할인	단체할인	기타할인	무료
수도박물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민속자연사박물관	1,100	800	지역주민 50%	노약자, 장애
태백석탄박물관	-	500	-	경로, 장애우, 국가유공자, 태백시민 등
서대문자연사박물관	-	2,400	지역주민 1500	경로, 장애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400/100/200	군인(300/200)	경로, 장애우, 국가유공자
수원박물관	-	-	-	경로, 장애우 등
외교사전시설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국립진주박물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표 146. 유사규모 박물관 관람료 할인 현황

□ 유사규모 박물관 인력운영 현황

기관명	총계		관장			
	현원 (c+d+e+f+g+h)	정원	겸직 여부		관장외 겸임직책	학예사자격증 소지여부
			전임	겸임		
수도박물관	13	8	○			
민속자연사박물관	15	16	○			
태백석탄박물관	8	10		○	소장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5	15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34	18	○			○
수원박물관	20	12	○			
외교사전시실	12		○	○	팀장	
국립진주박물관	45	23	○			○
평균	20.25	14.57				

표 147. 유사규모 박물관 인력운영 현황 1

기관명	학예인력					일반인력		
	총계 (c=a+b)	학예직공무원		공무원 (일반직, 전문계약직, 별정직 등) 소계(d)	계약직등 비정규직 소계(e)	일반직 공무원 (f)	계약직 등 비정규 직(g)	인턴 (h)
		학예 연구관	학예 연구사					
		소계(a)	소계(b)					
수도박물관	1		1		2	3		7
민속자연사박물관	5	1	4	10				
태백석탄박물관	1		1			5	2	
서대문자연사박물관	6	1	5			9		
광주시립민속박물관	6	1	5			15	13	
수원박물관	3		3	8		9		
외교사전시실	0			2	1	7	2	
국립진주박물관	7	2	5	1	9	15	13	
평균	3.63	1.25	3.43	5.25	4.00	9.00	7.50	7.00

표 148. 유사규모 박물관 인력운영 현황 2

□ 유사사례 분석으로 인한 규모

시설 규모가 유사한 형태의 공립박물관의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 20.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적은 인원의 경우 8명에서 최대 45명까지이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면, 약 20명 내외가 정도가 적절한 규모의 인력이라고 판단됨.

□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한 운영인력 산출

최근의 연구⁷⁾에 의하면, 단순한 전시관규모에 따른 인력산출보다는 수도권 서울과 지방도시, 지방군에 소재한 박물관의 규모에 따른 적절한 인력운영 현황이 분석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경우 연면적이 약 7,000㎡ 정도이므로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이 지방시에 건립된다면 가정하에 해당하는 적절한 인력운영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약 15명으로 추산될 수 있다. 또한 통계자료에서 예상되는 연 관람객 수는 약 223,709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인근 부지의 특수성

임진각 인근의 지자체 제안 부지는 다른 지방 소도시와 비교하여 연간 방문객이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한국의 분단과 관련한 관광 콘텐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막대한 유동인구, 특히 해외 관광객에게 노출되는 것은 시설 운영비와 별도로 매우 큰 광고 홍보 효과가 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인삼”의 역사, 문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토록 하는 것은 그 어떤 홍보효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7) 문정목, 뮤지엄 운영인력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56호 2016.11. p.20

□ 체험 및 판매시설의 운영인력

박물관은 공공문화시설로써, 상기의 인력들은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에 맞는 운영인력이며, 체험 및 판매시설의 운영인력은 해당 시설의 수익성과 프로그램에 맞는 적절한 인력이 산출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체험 및 판매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른 위탁 또는 혼합경영시에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연면적 (평균)	현재운영인력 (평균)	면적 m ² 운영인력 (명/m ²)	운영인력 1인당 면적 (m ² /인)
서울시	전체	14,900	46	0.003087	323.913
	40,000이상	91,394	212	0.002320	431.104
	8,000-40,000	16,556	71	0.004288	233.183
	4,500-8,000	6,608	12	0.001816	560.667
	1,500-4,500	2,220	7	0.003153	317.143
	1,500미만	882	8	0.009070	110.250
지방시	전체	3,615	11	0.003043	328.636
	40,000이상				
	8,000-40,000	12,455	34	0.002730	366.324
	4,500-8,000	5,995	13	0.002168	461.154
	1,500-4,500	2,852	9	0.003156	316.889
	1,500미만	1,384	7		197.714
지방군	전체	2,205	6	0.002721	367.500
	40,000이상				
	8,000-40,000	11,532	19	0.001648	606.947
	4,500-8,000	5,828	7	0.001201	832.571
	1,500-4,500	2,518	6	0.002383	419.667
	1,500미만	1,165	5	0.004292	233.000

표 149. 행정단위 및 규모별 운영인력 1인당 면적(m²/명) 현황

	연면적규모(m ²)	현재운영인력(명)	연간관람인원(명)	운영인력 1인당 연간관람인원(명)
서울시	40,000이상	212	1,780,217	8,397
	8,000-40,000	71	1,033,596	14,558
	4,500-8,000	12	236,566	19,714
	1,500-4,500	7	74,287	10,612
	1,500미만	8	63,707	7,963
지방시	40,000이상	-	-	-
	8,000-40,000	34	374,012	11,000
	4,500-8,000	13	191,635	14,741
	1,500-4,500	9	127,547	14,172
	1,500미만	7	107,064	15,295
지방군	40,000이상	-	-	-
	8,000-40,000	19	324,976	17,104
	4,500-8,000	7	142,599	20,371
	1,500-4,500	6	71,970	11,995
	1,500미만	5	76,757	15,351

표 150. 각 행정단위 및 규모별 운영인력 1인당 연간관람인원(명) 현황

3.5.2. 운영조직 및 운영방식 산출

1) 본 사업의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규모 제안

본 사업의 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규모는 앞선 분석들을 고려하면 본 연구진은 관장 포함 정규직 20명을 제안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상황은 현재 7,000㎡(3안)의 일반적인 규모와 범위를 고려하였을 경우이며, 해당 시설이 위치할 지역의 방문인구와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위탁, 혼합경영의 경우 해당 하는 사업의 성격과 운영방식, 수익예상에 따라 별도로 구성되며, 해당 조직은 운영조직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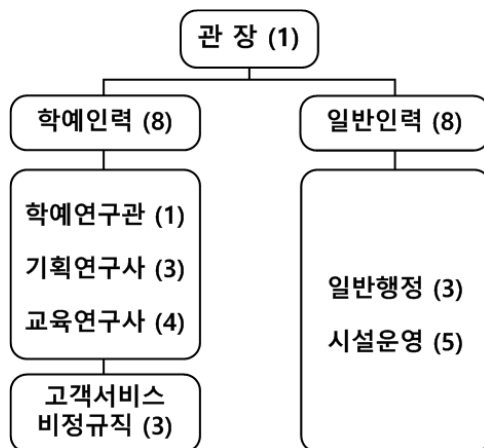


그림 56. 인력 운영 조직

총인원 (상주인원)	관장급 (겸직)	학예인력 (전시운영)				일반인력(행정, 시설관리)	
		학예 연구관	학예연구사 (기획)	학예 연구사 (교육,디자인)	고객 서비스	행정	시설관리
20명 (명)	1	1	3	4	3	3	5

표 151. 운영인력 규모

□ 관람료 책정

국내 국립박물관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산술적으로 약 400명이 일일 방문하게 되고, 상설전시의 관람료는 무료 또는 1,000원이 다수이며, 일부 2,000원, 3,000원까지 구성되어 있다. 상징적 의미로써 1,000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기타 관람료 할인은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등에게 1,000원 단위로 할인이 되는 등 유사한 관람료 체계를 갖추고 있음. 본 사업에서도 1,000원의 상징적 입장료를 받되, 내부의 식음료,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유료화가 합리적일 것임.

2) 전시관 운영 경비 산출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운영비는 경상비용으로 초기 투자 이후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운영비용은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하여 분석

□ 인건비

구분	직급	인원	월(기본급)	수당포함 연봉	총액
관장	행정 5급	1	4,213,900	75,850,200	75,850,200
학예	연구관(전시총괄)	1	4,195,400	75,517,200	75,517,200
	연구사(기획)	3	2,994,600	53,902,800	161,708,400
	연구사(전시)	2	2,094,100	37,693,800	75,387,600
	연구사(교육)	2	2,094,100	37,693,800	75,387,600
	고객서비스(9급) 안내	3	1,346,400	24,235,200	72,705,600
행정	행정 7급	1	2,274,700	40,944,600	40,944,600
	행정 9급	2	1,346,400	24,235,200	48,470,400
	기능직 8급	3	1,799,400	32,389,200	97,167,600
	시설관리 (9급) 환경미화	2	1,346,400	24,235,200	48,470,400
인건비 계		20			771,609,600

- 근거 : 2016년 공무원 임금표

- 5급 25호봉, 7급 8호봉, 8급 5호봉, 9급 1호봉, 연구관15호봉, 연구사(기획) 15호봉, 연구사 5호봉

표 152. 운영인력 인건비 산출 1

- 인력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공무원을 급수별로 세분화하고 급수별 급여표를 적용하였으며, 각 운영 사례의 기본급 대비 수당의 비율은 50%를 적용 20명의 연간 인건비는 총 771,609,600원으로 추정됨
-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인건비의 약 2배로 예상되는 바, 연간 운영비는 약 2,314,828,800원(23억원)으로 추정됨

(단위 : 천원)

	비용	면적	학예사 수
수도박물관	1,000,130	6,663	17
대가야박물관	1,008,899	6,048	1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636,000	6,473	5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244,983	6,949	14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2,348,360	6,207	9
목포자연사박물관	2,399,875	6,611	30
수원화성박물관	3,115,903	5,635	14
평균	1,964,897	66,369	15.17

표 153. 유사 규모 박물관의 운영비 2011년 국립박물관 운영실태

※ 2011년도에 조사된 위의 표를 토대로 7,000㎡(안)의 운영비를 산출하면, 약 2,159,401(천원) 산출이 가능하다. 그 동안 물가인상비를 고려하면, 검토 결과 인건비의 약 2배를 경상비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3) 운영비 조달 방안

□ 연간 방문객 추정

현재 부지의 확정전 단계에서는 최근의 공립박물관의 연간 방문객 추정자료에 의하면, 약 223,709명으로 예상됨

□ 연간 운영 수익

구분	내용	추정방법
1) 입장 수익	입장료 수입 (유료 입장객만 고려함)	중소도시 공립박물관(7,000㎡규모) 통계추정치 223,709명
2) 관람객 지출예상액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념품 구입 등 식음료 소비 등	1인지출 5,000원 (입장수입 포함) 200,000명 × 4,000원(입장료 제외) 800,000,000원
3) 대관 수익	기획전시실 및 시설 대 관수익	기획전시실 50만원/일 연 200일 대관 추정시 100,000,000원
4) 임대 수익	카페테리아 등 수익시설	2) 항목에 포함
5) 교육 수익	체험프로그램 등	2) 항목에 포함
6) 판매 수익	기념품 판매 등	2) 항목에 포함

표 154. 연간 수익 추정

연간 방문객 223.709명일 경우 연간 유료 입장료 수입은 약 2억2천만원으로 산출이 가능하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지출의향 금액을 1인당 4,000원(입장료 제외)을 적용할 경우 최대 8억9천만원의 매출(교육프로그램, 식음료 등 수익전체)을 예상할 수 있음. 매출 8억원의 순수익 약 60%를 고려하면 약 5.3억원이 순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관 수익이 약 1억 원을 예상할 경우 8억3천만원 내외가 연간 최대 수익으로 예상됨.

- 약 23억원의 운영경비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판단한 수익 분기점은 연간 방문객 597,288명으로 약 60만명 이상의 방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6. 사업비 투자계획

3.6.1. 사업비 검토

□ 건축공사비의 추정

건축공사비의 추정은 조달청을 통해 수집된 2013년, 2014년, 2015년도 전시시설의 조달 비용을 토대로 추정하였으며, 2015년도 000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000종합수장고 조성사업이 건립규모가 가장 유사하며, 이들의 건축공사비 292만원, 285만원을 고려하면,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사업시행이 예상되는 2017년도에는 m²당 공사비가 약 3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공사비 단가를 m² 당 300만원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추정하였다.

연도	연면적	내용	공사비(원)/m ²
2013	1,506/m ²	00미술관 신축공사	3,044,454/m ²
	6,311/m ²	00미래디자인센터 신축공사	2,575,495/m ²
2014	9,092/m ²	000보존센터 건립 신축공사	2,289,010/m ²
	1,762/m ²	00 홍보교육관 건설공사	2,488,770/m ²
2015	5,350/m ²	000테마파크 조성사업	2,925,865/m ²
	9,242/m ²	000 종합수장고 조성사업	2,856,817/m ²
	2,540/m ²	000건립공사	2,670,540/m ²

표 155. 조달청 2013년~2015년 전시시설 건축공사비 분석

□ 전시예산의 추정

전시예산의 경우 최근들어 전시연출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전시예산은 m²당 약 270만원 내외에서 2016년의 최근의 발주 사업, 특히 본 사업과 같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체험연출을 적극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² 36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시점에서는 m²당 360만원의 전시예산 단가를 적용하고자 한다.

연도	전시면적	내용	공사비(원)/m ²	공사비(원)/3.3m ²
2016	1,603.84/m ²	00기념관 전시 설계·제작·설치	2,581,304/m ²	8,518,303.2
	674.8/m ²	000박물관 리모델링·전시제작·설치	3,704,801/m ²	12,225,843.3
	2,100/m ²	000박물관 전시 제작·설치	4,072,289/m ²	13,438,553.7
	1,305.14/m ²	00생태체험관 전시 기획·제작·설치	3,831,006/m ²	12,642,319.8
2015	495.37/m ²	00박물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3,633,647/m ²	11,991,035.1
	352.8/m ²	000박물관 전시설계·설치	2,125,850/m ²	7,015,305.0
	612/m ²	00체험관 전시 설계·제작·설치	3,594,771/m ²	11,862,744.3
	2,333/m ²	00기록관 전시 제작·설치	2,246,035/m ²	7,411,915.5
	3,700/m ²	00과학관 전시 설계·제작·설치	3,356,756/m ²	11,077,294.8

표 156. 나라장터 전시공사비 분석

□ 체험부대시설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체험부대시설은 해당 시설의 성격이 “고려인삼”의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전시시설에 준하는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전시단가의 최저 수준인 m²당 250만원을 적용하였다.

연면적	1안 9,000㎡	2안 8,000㎡	3안 7,000㎡	비 고 (천원)
지하시설 20% 적용시 (수장고 등)	7,200㎡	6,400㎡	5,600㎡	
A. 공사비	49,245,000	44,088,000	38,577,000	
A-1. 건축공사비	27,000,000	24,000,000	21,000,000	㎡ 당 3백만원
A-2. 전시	11,340,000	10,080,000	8,820,000	연면적 35% × ㎡ 당 3.6백만원
A-3. 체험부대서비스공사비	5,400,000	4,800,000	4,200,000	연면적 20% × ㎡ 당 2.5백만원
A-4. 신재생에너지설비	1,350,000	1,200,000	1,050,000	공사비의 약 5% 산정
A-5. 부가가치세	4,155,000	4,008,000	3,507,000	
B. 부대비	3,264,030	2,901,360	2,538,690	
B-1. 설계비	1,428,300	1,269,600	1,110,900	3중복잡5.29%(개략)
B-2. 감리비	1,269,000	1,128,000	987,000	4.70% (개략)
B-3. 측량비및조사비	270,000	240,000	210,000	건축공사비1% 산정
B-4. 부가가치세	296,730	263,760	230,790	
소계(A+B)	52,509,030	46,989,360	41,115,690	
C. 사업추진예비비	5,250,903	4,698,936	4,111,569	A+B, 10%
D. 유물구입비등	4,924,500	4,408,800	3,857,700	A 공사비10%
E. 총사업비	62,684,433	56,097,096	49,084,959	

표 157. 건축 규모 및 예산 검토

3.6.2.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구 분	연 도	2017		2018		2019		2020	
	금 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A. 공사비	38,577,000				4,620,000		11,642,400		22,314,600
A-1. 건축공사비	21,000,000		-	20%	4,200,000	40%	8,400,000	40%	8,400,000
A-2. 전 시	8,820,000		-		-	20%	1,764,000	80%	7,056,000
A-3. 체험부대 서비스	4,200,000		-		-	10%	420,000	90%	3,780,000
A-4. 신재생 에너지설비	1,050,000		-		-		-	100%	1,050,000
A-5. 부가가치세	3,507,000				420,000		1,058,400		2,028,600
B. 부대비	2,538,690		841,995		828,135		434,280		434,280
B-1. 설계비	1,110,900	50%	555,450	50%	555,450		-		-
B-2. 감리비	987,000		-	20%	197,400	40%	394,800	40%	394,800
B-3. 측량비 및 조사비	210,000	100%	210,000		-		-		-
B-4. 부가가치세	230,790		76,545		75,285		39,480		39,480
소계(A+B)	41,115,690		841,995		5,448,135		12,076,680		22,748,880
C. 사업추진예비비	4,111,569		84,200		544,814		1,207,668		2,274,888
D. 유물구입비등	3,857,700							100%	3,857,700
E. 총사업비	49,084,959	1.9%	926,195	12.2%	5,992,949	27.1%	13,284,348	58.8%	28,881,468

3.7. 향후 사업추진 방안

3.7.1. 사업 추진 방식 (부록 3.사업추진방안별 프로세스 참조)

1) 관공사 발주체계

- 사업추진은 사전기획, 설계, 시공의 순서로 진행되며, 크게 설계시공 일괄발주와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방법이 있음 (아래 일정은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사업여건과 환경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1)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 입찰단계에서 약 30개월 소요

단계	비고	내용
1단계	기획단계	건립 추진 결정 / 타당성 조사 용역 TF팀 및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 예산확정
2단계	입찰단계 4개월	심의 및 확정 / 안내서 작성 및 심의 / 공고 및 설명회 / 기본설계서 제출 / 당선자 선정 및 계약
3단계	설계단계 5개월	건축 및 전시 실시 설계
4단계	공사단계 18개월	토목 공사, 건축 공사, 전시 공사
5단계	개관단계 3개월	준공 및 시험 운영 / 개관 준비 및 홍보

표 158. 설계 시공 일괄발주 방식 소요일정

(2)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 : 공모단계에서 약 34개월 소요

단계	비고	내용
1단계	기획단계	건립 추진 결정 / 타당성 조사 용역 TF팀 및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예산확정
2단계	공모단계 4개월	설계 경기 지침서 작성 / 설계 경기 공모 / 당선자 선정 및 계약
3단계	설계단계 5개월	건축 및 전시 기본 설계 / 건축 및 전시 실시 설계
4단계	시공사 선정 단계 4개월	입찰에 의한 시공사 선정
5단계	공사단계 18개월	토목 공사 / 건축 공사 / 전시 공사
6단계	개관단계 3개월	준공 및 시험 운영 / 개관 준비 및 홍보

표 159. 설계 시공 분리발주 방식 소요일정

3.7.2. 발주 방식 장·단점 비교

- 발주 방식은 설계·발주 일괄방식(툰키방식)과 설계·시공 분리발주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음.
- 일괄방식은 책임한계가 분명하고, 대안의 선정, 공사비 증액이 없다는 장점과, 발주자의 의지 반영이 어렵고, 공사비 산정의 불확실성 등 단점이 있음.
- 분리발주의 경우 발주자의 의지대로 시행되며, 설계변경이 원활하고, 전문업체가 선정 가능하다는 장점과,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우려 등 단점이 존재
- 디자인이 중요한 박물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과 전시 모두 현상설계를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건축은 시공사를 별도 입찰로 선정하고 전시는 설계와 시공권을 같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프로세스임

구분	장점	단점
설계·시공 일괄방식 (툰키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책임, 설계·시공으로 책임한계가 분명 · 최적대안 선정가능 · 공사비 증액 없이 사업준공 · 품질관리의 효율적 수행 · 변경 및 추가 작업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 의지 반영이 어려움 · 공사비 산정의 불확실 · 발주준비의 복잡성 · 발주자 지도감독 및 설계변경제한으로 품질확보 한계
설계·시공 분리발주 (기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의 의지대로 시행 · 설계변경 등 조정이 원활 · 공정 특성 별 전문업체 선정가능 · 사업의 위험부담 분산 · 우수한 디자인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공사비 증가 우려 · 사업 완료 후 잉여인력 발생 · 발주자 전문지식 부족 시 사업관리의 한계

표 160. 발주 방식 비교

3.7.3.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사업의 발주 방식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경우 건축과 전시의 유기적인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분리발주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설계 및 공사와 전시기획은 밀접하게 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건축공

사 설계 및 시공 발주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작성에 있어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자문이 필요함

1) 단계별 건립 추진 일정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이 건립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건축·전시 업체선정 및 발주, 실시설계, 시공 그리고 개관준비 업무가 필요함
- 조직 및 인력의 운영, 경영의 효율화, 사업추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업준비단계, 사업진행단계 및 사업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준비단계

-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를 차고하기 이전까지의 단계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입지선정, 기본 계획의 수립, 재정문제 해결,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개정 등의 업무가 추진됨
- 건축 및 전시 현상설계 진행, 업체 선정, 시공업체 선정
- 건립자문위원회 및 기본계획 수립부터~설계까지의 업무를 담당할 건립전담팀 구성

3) 사업진행단계

- 공사 착공 시점부터 준공단계까지의 기간으로 건축·전시 실시 설계~착공~준공까지의 업무가 추진됨
-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부터 개관준비 단계 시행
- 건립전담팀을 확대 개편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

4). 사업운영단계

- 준공 이후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지속적 운영과 이용률 확대를 위한 단계로서 개관행사 준비,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관람객 유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 전립전담팀을 흡수하여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운영 조직을 구성. 건물 완공 시점부터 개관 준비, 개관 행사 준비, 건물 관리운영 및 공사 이후 후속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을 주도

3.7.4. 사업 추진 단계별 개요

1) 사업 준비단계

(1)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성격, 입지분석, 전시, 체험 및 운영프로그램, 건축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연구
-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제 등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2) 유물 조사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은 유물중심의 박물관을 지향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인삼관련 박물관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통한 전시구성에 필요한 적절한 유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 및 전시 설계

- 건축·전시 공모 방식
 - 건축분야와 전시분야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분리 형식과 통합형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더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3. 사업추진방안별 프로세스 참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계에 집중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최고의 안을 선정할 수 있음 · 건축설계 공모에서 개념적 수준의 전시디자인을 제시하고 추후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전시설계 공모를 단계적으로 진행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으로 두 번의 공모를 해야 하는 부담 · 전시보다 건축이 우선되는 박물관이 될 우려 · 건축설계 이후 전시설계가 진행되므로 전시설계에 제약조건이 발생 우려

표 161.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공모 분리 시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의 특성이 고려된 전시공간을 반영한 건축설계 결과 가능 · 건축과 전시를 한 번의 공모로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설계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편리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은 우수하나, 전시계획이 미비한 경우 혹은 건축계획이 미비하나 전시계획이 우수한 경우 등 구체적인 장단점 비교, 판단이 어려움 무난한 안이 당선될 수 있음 · 전시공사 시기에 비해 너무 일찍 전시설계를 마무리 하게 됨

표 162. 건축설계와 전시설계 공모 통합시 장단점

○ 건축설계 공모 방식 검토

- 건축설계 공모방식에는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가 있음
- 지명초청의 경우는 우수한 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설계경기 참여의 대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함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

일 반 공 개 경 기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방식 · 우수작품을 공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설계자를 참여하게 하여 작품성이 뛰어난 자를 설계자로 선정 · 공모절차가 필요하고 관리상 시간과 비용 다수 소요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한 응모 기회 지공 · 우수작품을 설계자로 선정 · 신진 건축가의 참여 가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현상에 따른 관리에 시간과 비용 소요 과다 · 작품 수준의 상대적 저하 · 영세 설계사무소 당선 시 작품성은 뛰어날 수 있으나 자본 및 조작 등 신뢰성 확보 곤란
제 한 공 개 경 기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경기방식 · 지역이나 실적 기준으로 참여 자격을 제한 · 공공 발주 등에서 많이 시행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수의 적절한 제한 가능 · 시간과 비용의 절감 · 적절한 실적 수준 유지(유경험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신한 아이디어 제한 · 우수업체 제외 우려 · 설계 의도와 상이한 작품 선정 우려
지 명 초 청 경 기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경기 방식 · 발주하고자 하는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발주자와 거래 실적이 있는 다수(통상 3-5개 업체)를 선정한 후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자 선정 · 민간발주에서 많이 시행됨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수준 보장 ·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를 선별 지정하여 작품을 제고하고 공개 현상으로 손실되는 비용과 관리를 최소화 함 · 발주자와의 거래실적을 통하여 발주자의 설계 의도 등을 쉽게 반영할 수 있고 거래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 확보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효과 위축 · 지명을 위한 기준 확보 불투명 · 지명 설계 업체들 간의 담합 우려

표 163. 건축설계 공모방식

2) 사업진행단계

(1) 건축 및 전시 시공

- 실시설계에 따라 건물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공사하고 공사발주 후, 건설관리 및 예산 집행을 수행하고 제반 기술적 사항을 관리
 - 토목공사 : 현장개설, 착공준비, 대지정지, 토공, 오·배수관 및 토목구조물설치, 토목시설물설치, 포장공사
 - 건축공사 : 공통가설공사, 골조공사, 외부마감공사, 내부마감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 실내공사 : 실내 인테리어공사
 - 전시공사 : 체험시설, 진열장, 전시장치, 전시기기 설치
 - 공사 준공

(2) 유물 확보

- 전시기획에 따라 요구되는 유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물 확보 우선순위 결정과 기증·구입·대여 등 확보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확보 및 임시수장

3) 사업 운영 단계

- 개관 준비는 건물이 개관되기 전에 체험시설, 소장품 전시 및 관리,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시험 운영하는 단계

4) 단계별 건립 추진 조직

(1) 사업준비단계 : 건립 자문위원회 및 건립전담팀 구성

- 박물관 건립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위원회와 설계부터 개관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의 설립이 필요
- 건립추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은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건립 준비단계에서는 기본계획 및 건축프로그램 확정, 설계자 선정, 기본설계 확정, 공사 입찰 준비 등을 담당

(2) 사업진행단계 : 건립전담팀 확대 개편

- 공사 단계에서 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기술적 제반 사항 등을 관리 운영하며, 진행관리, 예산집행, 행정관리, 행정 업무 처리 및 지원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 건립 전담팀 확대 개편

(3) 사업운영단계 : 박물관 운영팀 및 운영 위원회 구성

- 박물관 건립 전담팀을 흡수하여 건물 완료단계부터 개관 준비, 기관 행사 준비, 건물 관리운영 및 공사 이후 후속 관련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을 주도하며, 개관 이후에는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운영조직으로 흡수 운영
- 개관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이벤트와 기획공연을 마련하고, TV, 인터넷 및 각종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효율적인 기획이 필요
-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을 운영 관련하여 행정, 학계, 산업계, 일반시민 등 대표로 구성하여 박물관운영에 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며,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자문의 기회를 확보

3.7.5. 사업 추진 일정표

□ 건축, 전시 분리 발주시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일정 (건축, 전시 분리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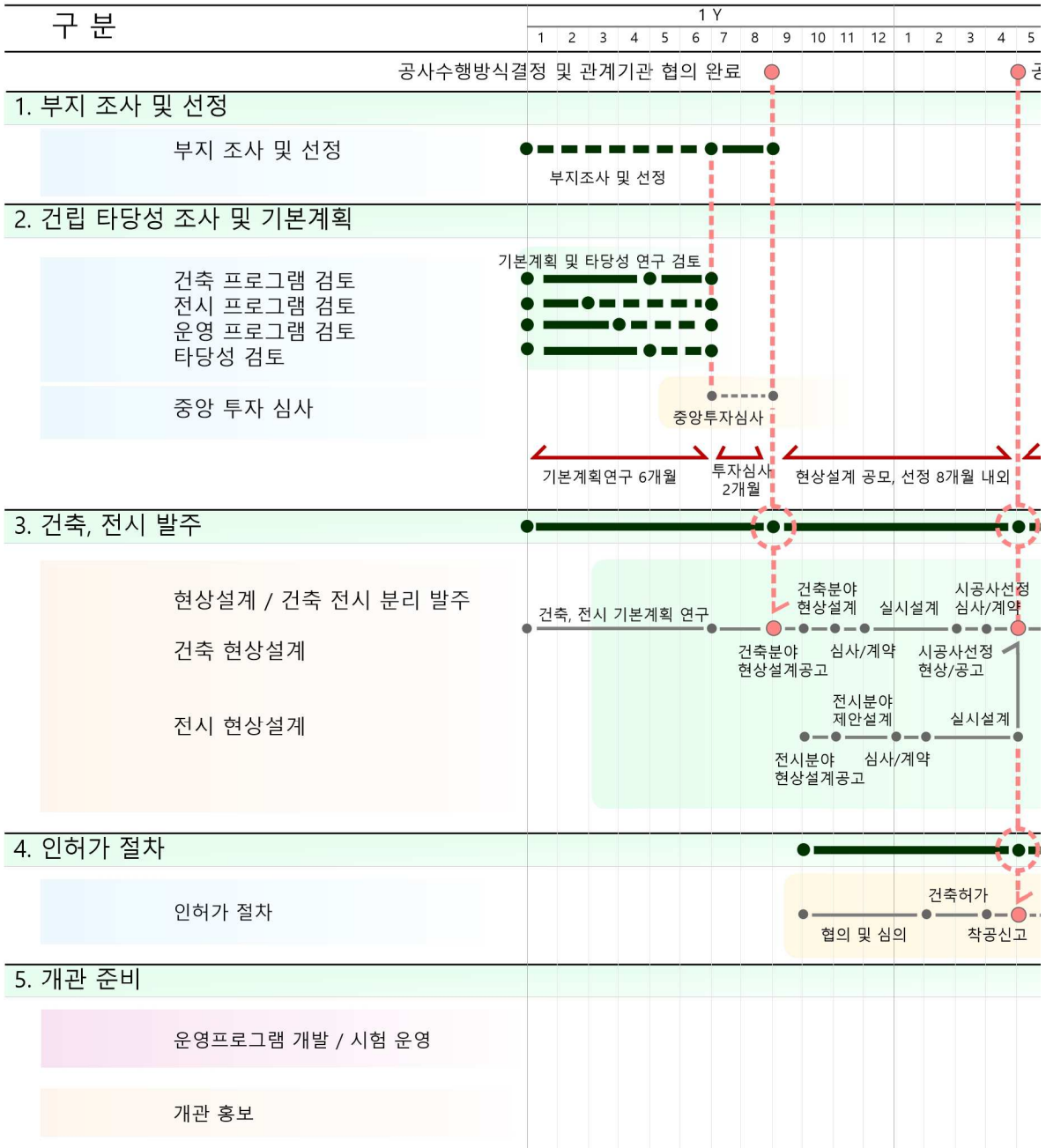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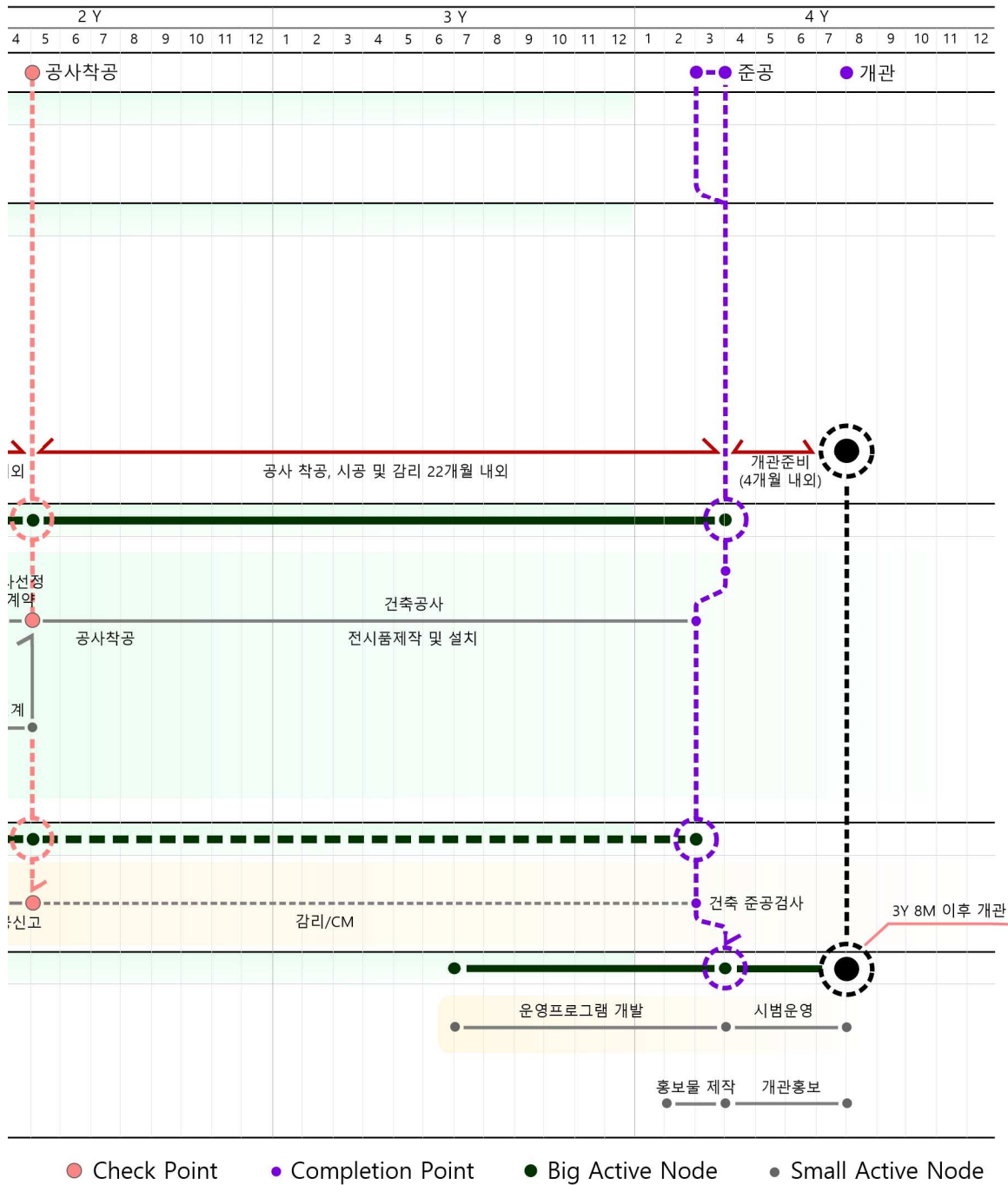


그림 57. 건축, 전시 분리 발주시 사업추진 일정



일반적인 일정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기간이 증감될 수 있음

IV.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4.1. 타당성 검토 개요

4.2. 정책적 타당성 검토

4.2.1. 정책적 타당성 검토

4.2.2. 기술적 타당성 검토

4.2.3. 법률적 타당성 검토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4.3.1. 재무적 타당성 검토

4.3.2. 제안 부지별 경제적 타당성 검토

IV.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4.1. 타당성 검토 개요

- 공공사업에서의 타당성 검토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책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일을 의미함
- 공공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 달리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 및 혜택 등 사회 전체적인 형평성과 편익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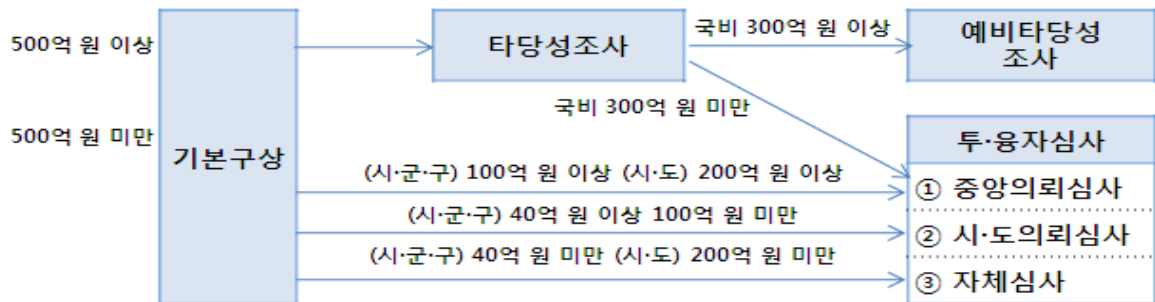


그림 58. 타당성 조사 프로세스

- 건립 타당성 검토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내 인삼산업의 소비증진과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이 큰 시설로, 국립박물관 건립을 통해 국내외 잠재소비층에 대한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체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임
-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업적 측면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 공익적 측면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행정적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건립 타당성을 검토함
- 여기서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전 평가 제도상의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요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함

4.2. 정책적 타당성 검토

4.2.1.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 개요

- 정책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전평가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사전평가 타당성 검토 항목에 따라 기반현황(물리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 필요성, 박물관 건립의 목표, 정책방향의 부합성, 파급성 등을 검토함

□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사전평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평가 기준	비고
기반 현황	물리적 환경	지역 및 건립부지의 물리적 환경고려 여부	부지 선정 후 평가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쉽게 접근가능한 교외지역
	정책적 환경	정책적 환경	최대 방문객 유치 가능지역
필요성		상위계획과 부합성	필요성 충분함
		기반환경 총괄적 고려여부	
		기반환경 조사내용 적정 여부	
		의견수렴 절차 여부	
목표	구체성	시설 건립운영 달성목표의 구체성	구체성 확보됨
	적합성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 부합여부	부합함
	파급성	목표의 기반현황, 필요성과의 적절성	적절성 확보됨

표 164. 정책적 타당성 검토

□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재, 산업으로의 한국인삼

종주국으로서의 국내외 위상제고의 필요성

구분	주요 내용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건강식품	오랜 재배역사와 축적된 재배 및 가공기술 세계일류상품 55선(산자부), 한국일등상품 10선(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인이 연상하는 한국 대표 관광상품 3(관광공사) 등
해외 교역과 한국문화의 상징	조선 8포 무역과 홍삼전매로 왕실과 국가의 중요 재원 전통적 명약으로서 상징, 한국문화상징 120(문광부)
대표적 수출상품 고소득 작물	단일품목으로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농산물 한계자원(재배지, 노동력 등) 활용 단위당 고소득 작물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상징	동양의학에서 가장 효능이 있는 '상약'과 건강식품의 상징 신기능 첨단 의약품 원료의 소재로 다양한 활용

표 165. 한국 인삼(고려삼)의 세계적인 상징성과 이미지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인삼산업 발전 전략,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생산과 소비의 정체

한국인삼은 2009년을 기점으로 생산과 소비가 주춤하고 있어 이에 대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인삼을 활용한 제품 연구와 개발을 비롯한 홍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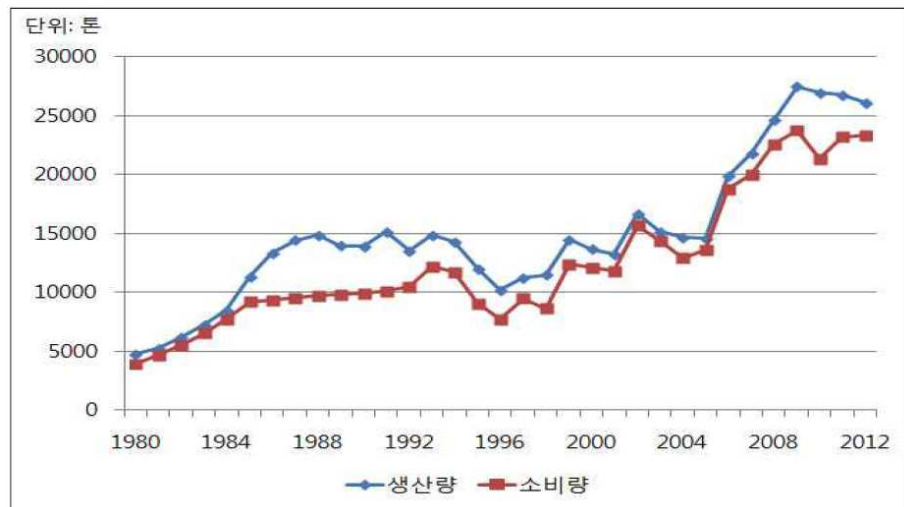


그림 59. 인삼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인삼산업 발전 전략,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중 FTA를 통한 인삼산업의 기회 및 위협요인

한중 FTA를 통한 자국 산업의 보호와 이를 위한 정보와 홍보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 홍보 전시관이 필요함

구분	주요내용
기회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고부가가치 인삼제품류(홍삼)의 수출 증대 전망 - 한국의 우수한 인삼가공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중국의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제품 수요 증대 - 한국산 고품질 인삼제품의 시장개척의 용이성
위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동북 3성 수삼의 수입 급증 전망 - 국내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급감 전망 - 국내 인삼 및 제품의 가격하락과 인삼산업 전체의 쇠퇴 - 전통적 고려삼의 국제명성과 인지도 및 가격경쟁력 저하 - 고려삼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문화체계 붕괴 등

표 166. 한중 FTA 체결시 인삼산업의 기회 및 위협요인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인삼산업 발전 전략,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소비자의 인삼제품 구매시 애로사항

인삼관련 제품을 구매할 시 소비자들은 많은 종류의 인삼제품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하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 또한 부족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구분	비중
인삼제품을 파는 곳을 잘 찾을 수 없다.	2.3
구매를 해도 인삼제품의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	15.7
인삼제품의 브랜드와 제조업체가 많아 선택하기 어렵다	11.4
홍삼 등 많은 종류의 인삼제품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26.6
품질인증표시, 가격, 산지에 대한 정보 표시가 없어 선택하기 어렵다.	13.2
상품의 품질에 대해 잘 모르며, 판매하는 상인에 따라 설명이 다르다	12.8
한번 구매한 인삼제품은 반품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구매해야 된다.	3.2
인삼제품의 복용방법이나 성분 등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6.8
식품, 건강보조식품, 약품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선택하기 곤란하다.	7.9
기타	0.1
계	100.0

표 167. 소비자의 인삼제품 구매 시 애로사항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인삼산업 발전 전략,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하여 한국인삼 “고려삼”에 대한 우수성과 품질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체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변화 여건	변화 내용
생산 재배환경	재배적지 확보의 어려움과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추세 이동경작 패턴의 고착화와 품질저하 우려 국내 수요량 대응능력 저하와 수입량 증가 전망 노동력 부족과 경영비 상승으로 경영여건 악화
소비 수요환경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 상품에 대한 니즈 급증 인삼을 통한 건강 웰빙 관심고조와 소비량의 지속적 증대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요구 증대 신뢰성 있는 브랜드에 대한 절대적 충성도 심화
유통환경	수삼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관련 정보의 공개 필요성 급증 체계적 도매유통기구의 탄생 움직임(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등) 인삼제품 유통경로의 다원화와 경쟁심화 쾌적하고 안락한 구매환경에 대한 니즈 급증
인삼제품환경	인삼제품의 일반 및 건강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 인삼의 제약 및약용 수요에 대한 수요 증대 첨단 제조방법과 배양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인삼제품의 규격, 표시, 인증 등에 대한 요구 증대
법제도적 환경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른 수삼의 안전성 확보 등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약용 인삼제품의 안전성 강화

표 168. 인삼산업의 대내적 환경변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인삼산업 발전 전략,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변화 여건	변화 내용
시장개방화 가속화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시장개화 추진과 국내 인삼산업 영향 한-EU, 한-미, 한-중 FTA 타결
중국 인삼산업 육성정책 활성화	중국정부(길림성 등)의 인삼산업 육성정책 활성화 중국 동북 3성의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 추세 중국의 인삼품종 개량 및 상품 개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동북 3성의 인삼가공시설 현대화 등 인삼을 주력산업화 육성
국제인삼시장의 구조변화	국제시장에서 중국 미국 캐나다삼과의 경쟁 심화 중국시장에서 고려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착화 중국시장에서 백두산인삼보다 고려인삼의 품질을 평가 절하 화기삼과 중국삼에 비해 국제시장 가격경쟁력 열세 홍콩과 중국의 고부가가치 인삼제품 역수출 현상 증가

표 169. 인삼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인삼산업 발전 전략,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2.2. 기술적 타당성 검토

1) 기술적 타당성 검토 개요

-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사전평가 항목에 따라 조직 및 인력 계획, 활동계획, 시설 기능 지원, 운영내용과 운영비, 시설내용과 건축비 등 계획 내용을평가함.

2) 기술적 타당성 검토 결과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결과 정책적 의지와 준비과정을 고려할 때 기술 타당성에 문제 있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평가항목		평가내용
조직 및 인력계획의 우수성	업무분장의 적정성	운영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원들(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적정성
	조직의 전문성 확보	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분야, 자격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활동계획의 우수성	소장품 수집계획 수량 및 내용의 적정성	현재 소장품 수량 및 내용과 앞으로 수집할 소장품의 수량과 내용이 해당 문화시설의 운영목표와 위상 등에 적합한지 판단
	데이터베이스화 계획의 적정성	운영과정에서 수집계획에 따른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개발, 타 기관과의 호환여부 등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의 적정성
	소장품 보호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집된 소장품의 보존을 위한 보존계획(보존대상, 보존방법 등)의 적정성
조사연구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와의 부합성	조사연구의 대상, 영역, 목표 등 기본방향이 시설이 지향하는 정책(운영)목표에 적합한지를 판단
전시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전시기본방향(또는 전시주제)와 운영(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정체성 확보	전시기본방향(또는 전시주제)의 정체성 확립 여부
	운영활성화	상설전시 교체계획 및 기획전시실 운영방향의 적정성
홍보. 마케팅 및 교류협력	홍보.마케팅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수요반영 등의 홍보효과의 극대화 가능성
	교류협력계획의 적정성	교류협력 대상 문화시설의 특성 감안, 시설의 특성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시설기능 지원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공간구성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개별 공간 규모 산정의 적정성
	설비내용의 적정성	운영계획 지원을 위한 설비내용의 적정성
운영내용과 운영비의 적합성	정성적 적합성	운영비 내역에 운영계획 반영의 적절성
	정량적 적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운영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운영비와의 일치정도
시설내용과 건축비의 적합성	정성적 적합성	건축비내역에 건축계획의 반영의 적절성
	정량적 적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건축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건축비와의 일치정도
지자체의 준비정도	제반 절차 이행여부	토지구입, 의회보고, 시장보고 등의 제반절차 이행여부
	내용의 적정성	미래의 운영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수준, 건축비 등의 보고 여부
전문성 확보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전문조직 구성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조직에 운영 및 건축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운영비의 조달가능성	정책실적에 따른 운영의지 확인	지자체의 문화 분야 정책실적(문화 분야 지원실적 문화 분야 예산 규모 차이, 지역 내 유사시설의 운영비 규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운영의지를 평가
	지속적 예산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문화 분야 중장기 정책 등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
건축비의 조달가능성	건축비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전체 예산규모, 타 건축 및 토목사업의 예산지급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의 건축비 확보 가능성

표 170. 기술적 타당성 검토 항목

4.2.3. 법률적 타당성 검토

1) 법률적 타당성 검토 개요

-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0조 에 따른 박물관의 등록요건을 검토함
- 본 박물관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진법 시행령」 제10 조의 별표2에 따라 기본적으로 박물관 자료(100점 이상), 학예사(1명 이상), 시설(100 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시설,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 장치)의 기준을 갖추어야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사전평가 항목에 따라 검토함

구분	평가 기준	검토결과
자료	100점 이상 자료 수집 계획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수집계획 예산 반영 여부	
인력	개관시까지 1명 이상 학예사 고용계획	정규직 학예사 8인이상 반영됨
	학예사 인건비, 비용계획 반영 여부	
시설	다음 시설의 계획여부 - 100㎡ 이상 전시실 또는 2,000㎡ 이상 야외전시장 - 수장고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자료실 /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 화재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있음

표 171. 법률적 타당성 평가항목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4.3.1. 재무적 타당성 검토

1)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개념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란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사업 자체 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편익(수입)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임

새로 건립되는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에 국한된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본 사업만의 건립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2)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

□ 수익성 지수

수익성지수법은 자본비용으로 할인된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으로 정의할 수 있음. 즉 장래에 발생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자본비용, k)로 할인하여, 경제성 분석 기간 중의 기대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총액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총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지표로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되며, PI가 1보다 클수록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PI = \sum \frac{CI_t}{(1+k)^t} / \sum \frac{CO_t}{(1+k)^t}$$

CI_t : 연차별 현금유입액, CO_t : 연차별 현금유출액, k, t는 각각 할인율, 기간을 의미함

□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법

순현재가치법은 경제성을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재금유입액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순현재금유입의 현재(現價)에서 순현재금유출의 현재(現價)를 공제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음. 순현재가치는 대안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산이 용이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됨.

$$NPV = \sum \frac{CI_t}{(1+k)^t} - \sum \frac{CO_t}{(1+k)^t}$$

B_t : 연차별 현금유입액, C_t : 연차별 현금유출액, k , t 는 각각 할인율, 기간을 의미함

단일투자안의 경우 투자안의 NPV가 0(零)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 여러 투자안들의 경우에는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NPV가 가장 큰 투자안을 채택함.

3)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1) 현금흐름의 추정

- 본 사업으로 인한 현금흐름(Cash Flow)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흐름이란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현금유입액(Cash Inflow)과 현금유출액(Cash outflow)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한 것임
- 분석기간은 박물관 개관 후 부터 총 40년간을 분석하며⁸⁾, 할인율은 5.5%를 적용함(KDI 예비타당성조사 사회적 할인율 기준)

(2) 현금유입 추정 (박물관 수요 추정)

8) 노병옥 외, 공공건축 사업타당성 분석 실무, (주)교문사 p.149

공공청사, 박물관, 주민편익시설 건립 등 공공사업은 그 특성상 분석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감가상각기간을 고려할 때 분석기간을 40-5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수요예측 방법은 명확한 수치적인 기술을 문제삼지 않고 주관적인 관점을 주로 이용하는 정성적 예측과, 시계열 자료를 연장하거나 예측을 위한 인과변수를 이용하는 정량적 예측방법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7년에 연구된 국내 박물관들을 상대로한⁹⁾ 7,000m²(안)을 토대로 예상 방문객은 223,709명 으로 산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공립박물관은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s)이고 비수익사업이므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 (Value)를 조건부가치평가법¹⁰⁾에 의하여 추정된 뒤,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함
- 편익은 박물관의 가치(지불의사액 : WTP-Willing To Pay)를 고려한 이용 가치로 산정함
- 지불의사액은 2016년 10월에 완료된 “지리산 역사문화체험 단지 조성사업 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실시한 박물관 방문시 지불의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입장권 포함 1인당 5,000원의 답변을 얻어 이를 반영하여 적용함

□ 연간 운영 수익

구분	내용	추정방법
1) 입장 수익	입장료 수입 (유료 입장객만 고려함)	중소도시 공립박물관(7,000m ² 규모) 통계추정치 223,709명
2) 관람객 지출예상액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념품, 식음료 소비	1인지출 5,000원 (입장수입 포함) 순수익을 반영 1인당 지출 입장료 포함 3,400원 고려
3) 대관 수익	기획전시실 및 시설 대 관수익	기획전시실 50만원/일 연 200일 대관 추정시 100,000,000원
4) 임대 수익	카페테리아 등 수익시설	2) 항목에 포함
5) 교육 수익	체험프로그램 등	2) 항목에 포함
6) 판매 수익	기념품 판매 등	2) 항목에 포함

표 172. 연간 수익 추정

9) 문정목, 뮤지엄 운영인력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56호 2016.11. p.20, 해당 연구에 활용된 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 배포한 2015년도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해 연구되어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활용하였다.

연간 방문객 223,709명일 경우 연간 유료 입장료 수입은 약 2억2천만원으로 산출이 가능하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지출의향 금액을 1인당 4,000원(입장료 제외)을 적용할 경우 최대 8억9천만원의 매출(교육프로그램, 식음료 등 수익전체)을 예상할 수 있음. 매출 8.9억원의 순수익 약 60%를 고려하면 약 5.3억원이 순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관 수익이 약 1억원을 예상할 경우 8억6천만원 내외가 연간 최대 수익으로 예상됨.

□ 편익비용 추정

- 운영비 2,314,828,800원 (23억원), 운영수익 : 860,610,600원 (8.6억원)
-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수익성지수(PI)는 0.278로 1보다 작고, 순현재가치(NPV)는 8억4천8백만원으로, 재무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재무성 분석

- 재무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추정치를 토대로 40년 운영을 기준으로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B/C ratio (수익-비용)은 0.14으로 낮게 나타남

구분	추정치
사업비	49,084,959,000
수익(Benefit)	13,809,464,992
비용(Cost)	98,610,334,400
순현재가치(NPV)	-84,800,869,407
수익-비용 (B/C ration)	0.140

표 173. 재무성 분석 종합결과

연차	수입	지출	할인계수	수입현재가(A)	지출현재가(B)	수지흐름(A-B)
		49,084,959,000	5.5%		49,084,959,000	- 49,084,959,000
1	860,610,600	3,086,438,400	0.948	815,744,645	2,925,534,028	-2,109,789,384
2	860,610,600	3,086,438,400	0.898	773,217,673	2,773,018,036	-1,999,800,364
3	860,610,600	3,086,438,400	0.852	732,907,747	2,628,453,115	-1,895,545,369
4	860,610,600	3,086,438,400	0.807	694,699,286	2,491,424,754	-1,796,725,468
5	860,610,600	3,086,438,400	0.765	658,482,735	2,361,540,051	-1,703,057,316
6	860,610,600	3,086,438,400	0.725	624,154,252	2,238,426,588	-1,614,272,337
7	860,610,600	3,086,438,400	0.687	591,615,404	2,121,731,363	-1,530,115,959
8	860,610,600	3,086,438,400	0.652	560,772,895	2,011,119,776	-1,450,346,881
9	860,610,600	3,086,438,400	0.618	531,538,289	1,906,274,669	-1,374,736,380
10	860,610,600	3,086,438,400	0.585	503,827,762	1,806,895,421	-1,303,067,659
11	860,610,600	3,086,438,400	0.555	477,561,860	1,712,697,081	-1,235,135,221
12	860,610,600	3,086,438,400	0.526	452,665,270	1,623,409,556	-1,170,744,286
13	860,610,600	3,086,438,400	0.499	429,066,607	1,538,776,830	-1,109,710,223
14	860,610,600	3,086,438,400	0.473	406,698,205	1,458,556,237	-1,051,858,032
15	860,610,600	3,086,438,400	0.448	385,495,929	1,382,517,760	-997,021,831
16	860,610,600	3,086,438,400	0.425	365,398,985	1,310,443,375	-945,044,390
17	860,610,600	3,086,438,400	0.402	346,349,749	1,242,126,422	-895,776,673
18	860,610,600	3,086,438,400	0.381	328,293,601	1,177,371,016	-849,077,415
19	860,610,600	3,086,438,400	0.362	311,178,769	1,115,991,484	-804,812,715
20	860,610,600	3,086,438,400	0.343	294,956,179	1,057,811,833	-762,855,654
21	860,610,600	3,086,438,400	0.325	279,579,316	1,002,665,245	-723,085,928
22	860,610,600	3,086,438,400	0.308	265,004,091	950,393,597	-685,389,506
23	860,610,600	3,086,438,400	0.292	251,188,712	900,847,011	-649,658,299
24	860,610,600	3,086,438,400	0.277	238,093,566	853,883,423	-615,789,857
25	860,610,600	3,086,438,400	0.262	225,681,105	809,368,173	-583,687,068
26	860,610,600	3,086,438,400	0.249	213,915,740	767,173,624	-553,257,885
27	860,610,600	3,086,438,400	0.236	202,763,734	727,178,791	-524,415,056
28	860,610,600	3,086,438,400	0.223	192,193,113	689,268,996	-497,075,883
29	860,610,600	3,086,438,400	0.212	182,173,567	653,335,541	-471,161,974
30	860,610,600	3,086,438,400	0.201	172,676,367	619,275,394	-446,599,028
31	860,610,600	3,086,438,400	0.190	163,674,281	586,990,895	-423,316,614
32	860,610,600	3,086,438,400	0.180	155,141,499	556,389,474	-401,247,975
33	860,610,600	3,086,438,400	0.171	147,053,553	527,383,388	-380,329,834
34	860,610,600	3,086,438,400	0.162	139,387,254	499,889,467	-360,502,213
35	860,610,600	3,086,438,400	0.154	132,120,620	473,828,879	-341,708,259
36	860,610,600	3,086,438,400	0.146	125,232,815	449,126,899	-323,894,084
37	860,610,600	3,086,438,400	0.138	118,704,090	425,712,701	-307,008,610
38	860,610,600	3,086,438,400	0.131	112,515,725	403,519,148	-291,003,422
39	860,610,600	3,086,438,400	0.124	106,649,977	382,482,604	-275,832,628
40	860,610,600	3,086,438,400	0.117	101,090,025	362,542,753	-261,452,728
계				13,809,464,992	98,610,334,398	-84,800,869,407

표 174. 재무성 분석 결과

□ 경제성 분석

- 재무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추정치를 토대로 관람객 1인당 약 5,000원을 향후 인삼 제품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반영하면 경제성을 검토하면 B/C 비율은 0.322로 나타남.

구분	추정치
사업비	49,084,959,000
수익(Benefit)	31,757,777,529
비용(Cost)	98,610,334,400
순현재가치(NPV)	-66,852,556,871
수익-비용 (B/C ration)	0.322

표 175.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4.3.2. 제안 부지별 경제적 타당성 검토

1) 부지선정에 따른 편익비용 예측

본 사업은 공공문화시설인 박물관으로 편익비용이 1을 넘기 어려우며, 0.5에 도달하지 못하는 박물관이 많은 현실임. 다만, 수익추정에 있어 방문객의 수가 현재 계산의 22만명이 아닌 약 88만명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부지일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을 넘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음.

수입, 지출		7,000㎡(안), 20명	흑자운영을 위한 방문객
연간방문객		223,709명	878,365명
수입 B	입장수익	223,709,000	878,365,000
	판매수익	536,901,600	2,108,076,000
	임대수익	100,000,000	100,000,000
지출 A	연간 인건비	771,609,600	771,609,600
	일반 운영비	2,314,828,800	2,314,828,800
운영비 A-B		- 2,225,827,800	2,600
수익성 지수		0.278	1.000

표 176.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 연간방문객

※ 관람객의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을 통한 제품구매 동기 부여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 진작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관람객 수 증가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 또한 반영하지 않은 단순 관람객수를 고려한 입장수익만 반영함.

※ 관광객에 대한 인삼관련 제품의 산업유발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음.

- 8개 건립 예상 부지 인근에 위치하는 주요 관광지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아래와 같다.

건립예상부지	대상지 인근 관광지	관광객 (명)	비고	통계 해당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5,800,219		2015
강화군 강화읍	강화역사박물관	230,514		2014
강원도 홍천군	-	-	인접 관광지 부재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인삼관	832,788		2014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성, 순교성지	1,843,289		2012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역사문화관	682,753	(입지 부적격)	2014
충청북도 음성군	-	-	(입지 부적격) 인접 관광지 부재	-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827,378		2014

표 177. 건립예상부지 인근 주요 관광객 현황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각 시군별 통계연보, 2012-2015)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건립목적은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 소비층에 홍보하는 역할이 크므로, 국내외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할 필요가 있다.
- 8개 지자체에서 제안된 부지중에 2개 부지(부여군, 음성군)의 경우 박물관의 규모가 반영되기 어려운 부지이며, 홍천군의 경우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8개 부지중에 사업성이 유력한 곳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금산군, 서산시 세 곳으로 압축할 수 있다. 다만, 금산군의 경우 금산인삼관과 중복투자되는 우려가 있어 상호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파주시의 경우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해당 부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한국문화를 함께 다루는 콘텐츠가 구성될 경우 해외관광객에 대한 건립목적인 고려인삼의 홍보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파주시의 경우 2시간 이내(가족단위 관광객의 이동거리)를 고려할 경우 수도권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홍보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파주시(임진각)의 연간수익 추정

구분	내용	추정방법
1) 입장 수익	입장료 수입 (유료 입장객만 고려함)	임진각 방문객 580만명 임진각 방문객의 1/5(20%) 유료 방문시 약 116만명
2) 관람객 지출예상액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념품, 식음료 소비	1인지출 5,000원 (입장수입 포함) (순수익을 고려하면 입장료 포함 1인지출 3,400원)
3) 대관 수익	기획전시실 및 시설 대 관수익	기획전시실 50만원/일 연 200일 대관 추정시 100,000,000원
4) 임대 수익	카페테리아 등 수익시설	2) 항목에 포함
5) 교육 수익	체험프로그램 등	2) 항목에 포함
6) 판매 수익	기념품 판매 등	2) 항목에 포함

표 178. 연간 수익 추정

수입, 지출		7,000㎡(안), 직원 20명	임진각 방문객 20% 유치시
연간방문객		223,709명	1,160,000명
수입 B	입장수익	223,709,000	1,160,000,000
	판매수익	536,901,600	2,784,000,000
	임대수익	100,000,000	100,000,000
지출 A	연간 인건비	771,609,600	771,609,600
	일반 운영비	2,314,828,800	2,314,828,800
운영비 A-B		- 2,225,827,800	957,561,600
수익성 지수		0.278	1.310

표 179.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 연간방문객

□ 자체 수입을 통한 운영 필요 관람객 : 연간 878,365명 방문시 경제성 분석

- 관람객 1인당 약 5,000원의 제품구매영향력을 반영하여 경제성을 검토하면 B/C 비율은 1.217으로 나타남

구분	추정치
사업비	49,084,959,000
수익(Benefit)	119,997,188,666
비용(Cost)	98,610,334,400
순현재가치(NPV)	21,386,854,266
수익-비용 (B/C ration)	1.217

표 180.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 임진각 사례 : 연간 116만명 방문시 경제성 분석

-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검토시에 B/C 비율은 1.602로 나타남

구분	추정치
사업비	49,084,959,000
수익(Benefit)	157,958,051,403
비용(Cost)	362,542,753
순현재가치(NPV)	59,347,717,003
수익-비용 (B/C ration)	1.602

표 181.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V. 연구요약 및 제언

5.1. 연구 요약

- 5.1.1. 연구 배경 및 목적
- 5.1.2. 건립 기본계획
- 5.1.3. 사업비 투자계획 등
- 5.1.4. 건립 타당성 검토

5.2. 연구 제언

- 5.2.1. 정책 제언
- 5.2.2. 부지 선정에 따른 특성 반영 제언

V. 연구요약 및 제언

5.1. 연구 요약

5.1.1. 연구 배경 및 목적

- 고려인삼 종주국 위상 확립을 위한 종합전시박물관 건립
- 인삼 생산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강화
- 인삼수출증대를 위한 고려인삼 브랜드 강화
- 미래 건강산업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거점지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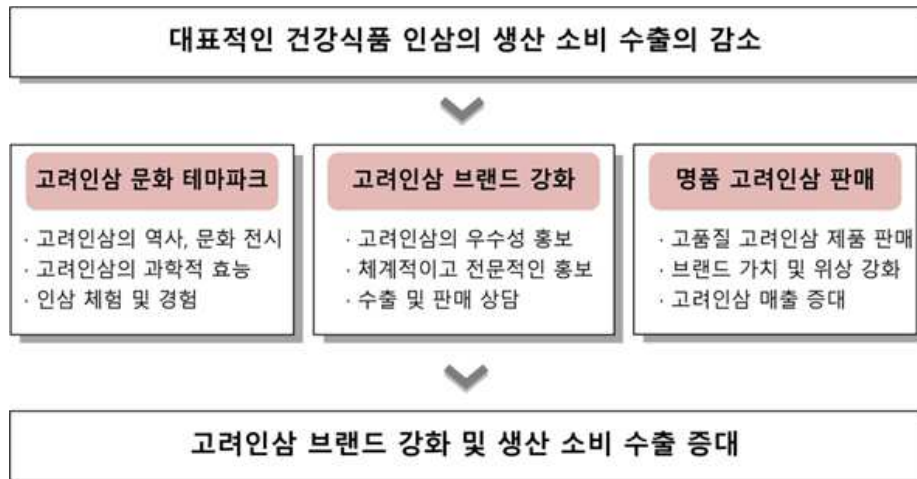


그림 60. 고려인삼 브랜드 강화 및 생산 소비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

5.1.2. 건립 기본계획

1) 건립기본방향

- 건축공간 : 공간적 다양성 부여, 방문객의 방문 및 장시간 체류 유도, 지역관광명소화에 적합한 건축양식 도입
- 전시공간 : 참여와 재미를 통한 고려인삼의 역사, 문화, 과학의 체험
외국관광객 및 해외바이어들에 대한 고려인삼의 명품이미지 전달

- 외부공간 : 지역관광인프라와 연계된 자연스런 방문객 유도, 야외 체험 전시공간의 적극적 활용, 지역프로그램과 적극적 연계 운영
- 서비스 공간 : 인삼관련 제품의 판매 및 체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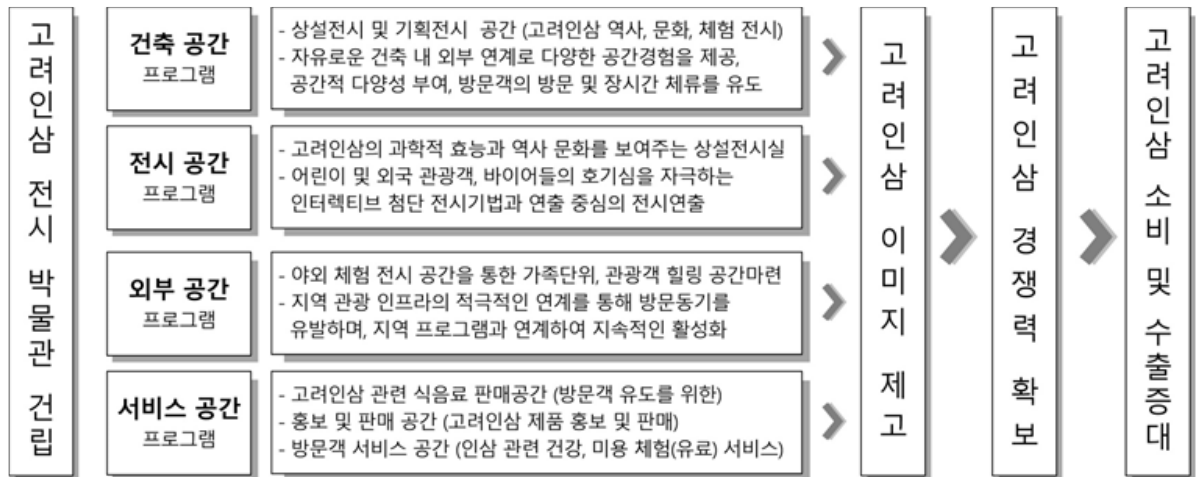


그림 61.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2) 건축 형태 및 스타일 검토

- 부지에 따른 규모 검토상 저층형으로 건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려인삼의 역사적 전통성과 과학, 고급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디자인 검토
- 건축 내외부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구조를 가진 구성, 동양적 재료 사용, 등으로 고려인삼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 반영



그림 62. 사례 : Tomioka-city-hall in japan / Kengo-kuma

3) 건축 공간구성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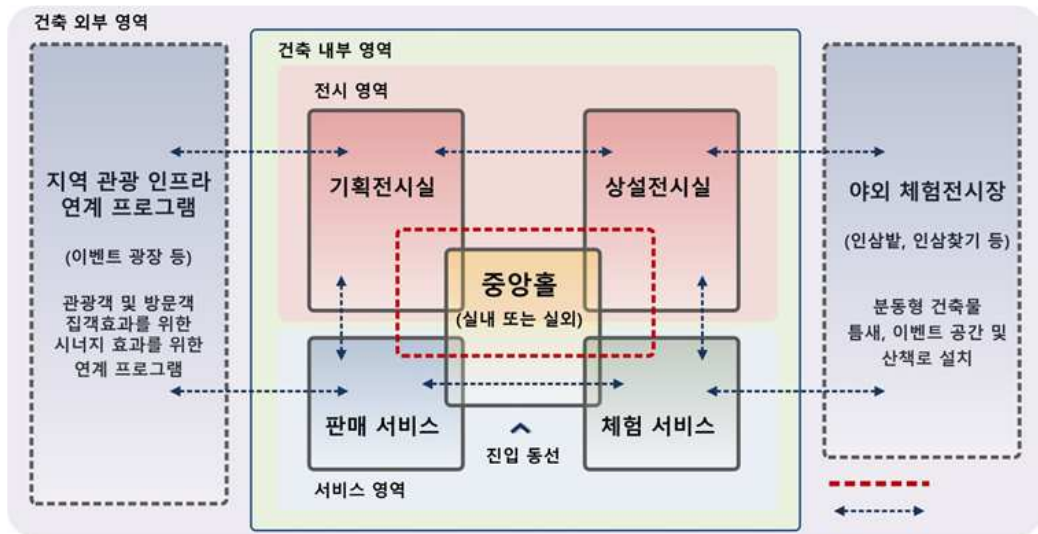


그림 63.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공간구성 기본구상

- 상설전시실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상설전시실로 고려인삼의 역사, 문화, 과학을 주제로 하는 전시실
- 기획전시실 : 지역관광인프라, 예술 및 고려인삼 이벤트 등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기획전시실
- 체험서비스 공간 : 고려인삼과 관련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 공간(일부 유료)
- 판매서비스 공간 : 고려인삼 제품을 쇼핑하고 구입할 수 있는 판매공간

4) 공간 규모 검토

- 부지선정은 경기도 파주시 외, 7개(총 8개 부지)의 지자체에서 제안받은 부지를 상대로 타당성을 검토함,
- 부지선정 검토 결과 일부 지자체 제안 부지는 본 연구에서 추진중인 건축 규모를 반영하기 어려움 (건축법상 규모제한)

- 현재 단계에서는 다양한 부지에 반영이 가능한 3안(총 7,000m²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제안함.

연면적 지하시설 20% 적용시 (수장고 등)	1안 9,000	2안 8,000	3안 7,000
구 분	면적		
A : 상설전시동	2,400	2,140	1,900
B : 기획전시,수장고	2,750	2,440	2,100
C : 체험및판매	3,600	3,200	2,800
D : 옥외판매관리	250	220	200
총계	9,000	8,000	7,000

단위 m²

표 182. 공간 규모 검토 (안)

5) 전시기본 방향

- 차별화(쉽고 빠른 이해)된 전시연출 방향
- 이미지 중심의 전시연출, 감성적, 정서적 연출
- 관람객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터랙티브
- 전시물의 내용은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달
- 관람객 개인이 아닌 다수가 함께 동시 경험이 가능한 형태

6) 전시 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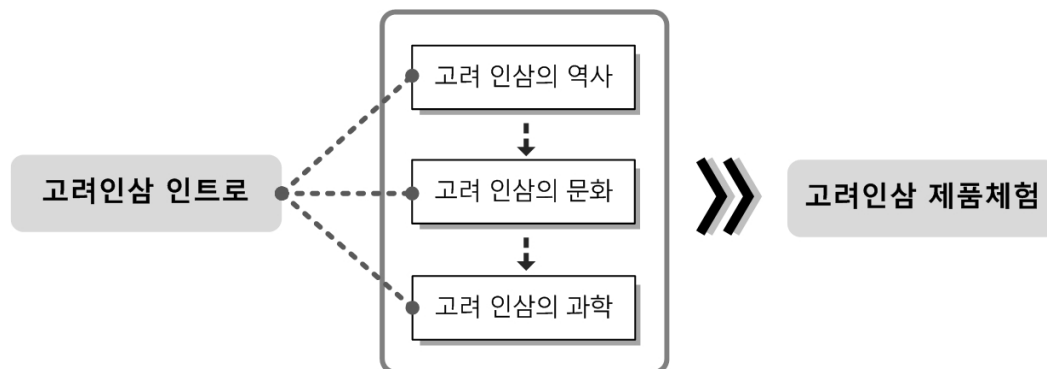


그림 64. 주요 전시컨텐츠

□ 상설전시 - 인삼의 역사

전시주제	세부 전시 내용
신이 내린 축복	인삼의 유래, 역사속의 인삼
	홍삼의 기원
	개성 인삼 이야기
조선의 보물 세계로 나아가다.	인삼을 둘러싼 역사속 인삼이야기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인삼)
	세계로 나아간 조선의 보물 (서구문화와 인삼)
	17세기 유럽의 한류, 인삼

표 183. 상설전시(인삼의 역사) 전시 내용

□ 상설전시 - 인삼의 과학

전시주제	세부 전시 내용
생명의 뿌리	고려인삼과 사포닌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인삼의 정체
인삼과 건강	현대인의 질병과 인삼의 효능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동반자, 인삼의 효능
첨단과학과 고려인삼	첨단과학으로 키우는 고려인삼 이야기

표 184. 상설전시(인삼의 과학) 전시 내용

□ 상설전시 - 인삼의 문화

전시주제	세부 전시 내용
한국문화와 인삼	한국인의 삶과 고려인삼
	근대 이후의 우리역사와 인삼 이야기
세계인이 사랑하는 인삼 이야기	세계인이 사랑하는 인삼 (세계 유명인사들의 인삼 사랑 이야기)
	인삼 전쟁 (인삼의 역사, 문화, 과학의 비교)

표 185. 상설전시(인삼의 문화) 전시 내용

□ 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실 운영

7) 관리 운영계획

□ 관리 운영 주체선정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운영은 박물관 자체의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운영이 적절하지만, 현재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건립취지를 고려하면 국내 인삼관련 제품의 판매활성화, 국가 대표상품화를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홍보판매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혼합경영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됨.

□ 조직구성 규모 검토

- 유사 사례 및 최근 관련 연구¹⁰⁾를 검토한 결과 7,000㎡ 규모의 박물관 건립 시에 조직인원은 약 20명이 적절한 규모로 검토됨. (일반운영원들은 별도 선발 운영)
- 최근 연구자료의 통계내역을 고려하면 연간 방문객은 약 223,709명으로 추산됨.

총인원 (상주인원)	관장급 (겸직)	학예인력 (전시운영)				일반인력(행정, 시설관리)	
		학예 연구관	학예연구사 (기획)	학예 연구사 (교육, 디자인)	고객 서비스	행정	시설관리
20명 (명)	1	1	3	4	3	3	5

표 186. 운영인력 규모

5.1.3. 사업비 투자계획 등

□ 건축공사비 추정

- 조달청 최근 3년간 전시관, 박물관 등 동종 시설의 건축비를 검토한 결과 ㎡당 300만원을¹¹⁾ 반영하여 공사비를 추정

□ 전시에산의 추정

- 나라장터 최근 3년간 유사성격 전시설치 사업 검토결과 ㎡당 360만원을 반영하여 전시 예산을 추정

10) 문정목, 뮤지엄 운영인력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56호 2016.11. p.20

11) 현실적으로 실제 착공시에는 조달청 자료와 물가상승률 고려 약 320-330만원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전체 사업비 추정

연면적	1안 9,000㎡	2안 8,000㎡	3안 7,000㎡	비 고 (천원)
지하시설 20% 적용시 (수장고 등)	7,200㎡	6,400㎡	5,600㎡	
A. 공사비	49,245,000	44,088,000	38,577,000	
A-1. 건축공사비	27,000,000	24,000,000	21,000,000	㎡ 당 3백만원
A-2. 전시	11,340,000	10,080,000	8,820,000	연면적 35% × ㎡ 당 3.6백만원
A-3. 체험부대서비스공사비	5,400,000	4,800,000	4,200,000	연면적 20% × ㎡ 당 2.5백만원
A-4. 신재생에너지설비	1,350,000	1,200,000	1,050,000	공사비의 약 5% 산정
A-5. 부가가치세	4,155,000	4,008,000	3,507,000	
B. 부대비	3,264,030	2,901,360	2,538,690	
B-1. 설계비	1,428,300	1,269,600	1,110,900	3중복잡5.29%(개략)
B-2. 감리비	1,269,000	1,128,000	987,000	4.70% (개략)
B-3. 측량비및조사비	270,000	240,000	210,000	건축공사비1% 산정
B-4. 부가가치세	296,730	263,760	230,790	
소계(A+B)	52,509,030	46,989,360	41,115,690	
C. 사업추진예비비	5,250,903	4,698,936	4,111,569	A+B, 10%
D. 유물구입비등	4,924,500	4,408,800	3,857,700	A 공사비10%
E. 총사업비	62,684,433	56,097,096	49,084,959	

표 187. 건축 규모 및 예산 검토

구 분	연 도	2017		2018		2019		2020	
	금 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A. 공사비	38,577,000				4,620,000		11,642,400		22,314,600
B. 부대비	2,538,690		841,995		828,135		434,280		434,280
소계(A+B)	41,115,690		841,995		5,448,135		12,076,680		22,748,880
C. 사업추진예비비	4,111,569		84,200		544,814		1,207,668		2,274,888
D. 유물구입비등	3,857,700							100%	3,857,700
E. 총사업비	49,084,959	1.9%	926,195	12.2%	5,992,949	27.1%	13,284,348	58.8%	28,881,468

표 188.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5.1.4. 건립 타당성 검토

□ 정책적 타당성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사전평가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국은 세계인삼시장에 대한 공격적 지원과 육성사업 등을 통해 고려인삼과 차별화하고 자국산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음. 이러한 세계적 인삼시장의 격동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하는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추진 사업은 고려인삼의 세계적 위상과 국내 인삼산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국가적 건립 당위성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음.

□ 경제적 타당성 검토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가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측된 예상방문객 약 223,709명, 7,000 m²건축규모(안) 적용시) B/C =0.322 로 나타남.

구분	추정치
사업비	49,084,959,000
수익(Benefit)	31,757,777,529
비용(Cost)	98,610,334,400
순현재가치(NPV)	-66,852,556,871
수익-비용 (B/C ration)	0.322

표 189.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 부지 선정시에 방문예상 인원이 약 88만명 수준을 확보해야 B/C=1.0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지자체에서 제안된 부지들 중에 부지규모(건축법상)와 방문객이 88만명 이상인 곳은 임진각(580만명) 1곳 뿐임.

건립예상부지	대상지 인근 관광지	관광객 (명)	비고	통계 해당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5,800,219		2015
강화군 강화읍	강화역사박물관	230,514		2014
강원도 홍천군	-	-	인접 관광지 부재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인삼관	832,788		2014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읍성, 순교성지	1,843,289		2012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역사문화관	682,753	(입지 부적격)	2014
충청북도 음성군	-	-	(입지 부적격) 인접 관광지 부재	-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827,378		2014

표 190. 건립예상부지 인근 주요 관광객 현황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각 시군별 통계연보, 2012-2015)

□ 임진각 : 연간 116만명 방문시 경제성 분석 (임진각 방문객의 20% 유치 가정)

-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검토시에 B/C 비율은 1.602로 나타남

구분	추정치
사업비	49,084,959,000
수익(Benefit)	157,958,051,403
비용(Cost)	362,542,753
순현재가치(NPV)	59,347,717,003
수익-비용 (B/C ration)	1,602

표 191. 경제성 분석 종합결과

5.2. 연구 제언

5.2.1. 정책 제언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은 국내 인삼제품의 상품성 제고와 소비시장 활성화, 세계시장에 대한 국가적 홍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부지선정시 많은 관람객의 방문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주변 관광지 및 지역의 문화프로그램의 활용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은 세계시장을 고려한 홍보 전시관의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문화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세계인들에게 “고려인삼 =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고려인삼”을 각인시키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소비시장 진작을 위해, 잠재 소비계층에 대한 체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사업준비를 위한 “건립 자문위원회 및 건립 전담팀 구성”, 사업의 진행단계에는 “건립전담팀의 확대 개편”,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전시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 사업운영단계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등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면세점의 활용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경우 건립 목적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박물관으로서, 판매 및 휴게시설로서 면세점의 활용이 현재 알려진 국내 사례는 없으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 3장 제7조 3항을 고려하면,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3. 법 제 176조의 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면세점 설치를 타진할 필요성이 있음.
- 면세점의 설치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면세점이 설치 될 경우 현재 건축 프로그램 중 판매시설의 일부를 면세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5.2.2. 부지 선정에 따른 특성 반영 제안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사업 성공을 위한 부지선정

- “고려인삼 전시박물관”의 기능과 프로그램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며, 국내외 방문객의 많은 방문이 가능한 부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임직각 부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됨, 향후 지자체의 부지제안 및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부지 선정에 따른 예상관람객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반영 필요

- 현재 건축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임직각과 같은 100만명을 상회하는 경우 전시, 체험, 판매시설에 대한 동선과 방문객들의 체류시간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람객 등에 대한 적절한 완급조정이 가능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 부록

1. 사례 분석
2. 관련 법규 사항
3. 사업추진방안별 프로세스

1. 사례 분석

1.1. 국내사례

1.1.1. 인삼 및 한의학

1) 정관장 인삼박물관

- 충청남도 부여군 고려인삼창 본관에 위치한 정관장 인삼박물관은 110년 전통의 KGC인삼공사가 인삼 종주국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설립함

구분	내용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46
설립연도	· 2004년
면적	· 전시면적 약 830㎡
시설구성	· 상설전시실 1관, 체험관 1관, 영상실 1관 등

표 192. 정관장 인삼박물관 개요 (자료 : 정관장 인삼박물관 홈페이지, 2017)

○ 상설전시실

- 인삼의 역사 : 인삼의 기원과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삼 실물 전시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설화 전시
- 고대의서 : ‘상한론’, ‘신농본초경’을 전시해 인삼의 다양한 약효와 인삼의 기록을 직접 확인
- 인삼의 재배 : 인삼 재배 예정지 선정 및 관리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인삼의 일생을 전시, 인삼의 생장연수에 따른 모습 전시
- 인삼의 제조 : 홍삼 제조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였으며,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홍삼 가공 기술의 변천 과정과 현대의 홍삼 가공 공정을 전시
- 인삼 산업 : ‘정관장’의 다양한 제품과 홍삼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 광고 영

상, 수출 현황 등을 전시, 위조 및 사제품과의 구별법 설명

· 기업 역사 : 한국인삼공사의 역사적 발자취를 사진자료로 전시

○ 체험관

· 체험 공간 : 심마니 모형과 기념촬영 및 인삼의 성장환경을 재현한 모형 전시, 동영상 통해 인삼이 우리의 신체부위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전시

○ 영상실

· 영화 상영 : 기업 홍보 영화 상영 및 강연, 세미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표 193. 정관장 인삼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 영주시 인삼박물관

-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인삼박물관은 1541년 신재 주세붕 선생이 인삼을 재배한지 500여년이 지난 역사와 함께, 선인들의 슬기와 지혜를 어린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목표로 건립됨

구분	내용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452
설립연도	· 2013년 5월
면적	· 부지면적 5,097.1㎡, 전시면적 913.36㎡
시설구성	· 상설전시실 1관, 기획전시실 1관, 어린이체험관, 뮤지엄샵, 영상실, 카페테리아 등

표 194. 영주시 인삼박물관 개요 (자료 : 영주시 인삼박물관 홈페이지, 2017)

○ 상설전시실

- 풍기인삼의 전파 : 영주시 위성사진을 보며 영주시의 문화 유적 및 산업과 특산물에 대해 이해
- 한국인삼의 시작 : 인삼이 왜 명약인지 설명하고, 사람들이 인삼을 찾는 이유와 한국인삼의 시작점을 소개
- 죽령옛길 : 주세붕과 인삼에 관련한 이야기, 소백산의 동삼전설 등 인삼과 관련된 설화와 무역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
- 인삼의 종류 : 인삼밭 모형전시를 통해 인삼의 생육, 인삼의 구조와 용어를 설명하고 인삼의 재배과정 및 인삼의 종류에 대해 전시
- 풍기인삼의 역사 : 풍기 인삼실을 통해 풍기 지역의 인삼문화의 흐름 이해
- 풍기사람들의 삶 : 인삼 최고의 품질 생산지 풍기에 대해 설명하고, 인삼과 풍기사람들의 삶, 인삼 가게를 전시

○ 기획전시실

- 가변형 공간으로 인삼 역사 및 사람들과 함께 한 인삼 문화에 대한 기증 유물을 전시

○ 체험전시실

- 어린이 놀이공간 : 암벽타기 및 놀이기구 등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 카페테리아 : 관람객들이 간단하게 음료 및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
- 어린이 도서관 : 인삼캐릭터로 구성 된 도서관 내부로, 어린이 도서 약 500권 이상 비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 인삼캐기 체험 : 놀이용 모래 공간에서 인삼모형을 심고, 캐보는 체험

○ 편의시설

- 영상실 : 인삼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세미나 가능
- 야외소강당 : 소규모 공연, 연극, 체험활동이 가능
- 뮤지엄샵 : 풍기 인삼 제품과 인삼 캐릭터 관련 제품을 판매



표 195. 영주시 인삼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3)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 서울시 동대문구 동의보감타워에 위치한 한의약박물관은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한의약 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의약 관련 자료 전시와 문화 공간을 갖춘 박물관을 건립

구분	내용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87 동의보감타워
설립연도	· 2006년 09월
면적	· 전체면적 2335.37㎡, 전시면적 733.1㎡, 교육공간 145.9㎡
시설구성	· 상설전시실 1관, 특별전시실 1관, 한방문화쉼터, 한방 체험실, 한방정보 체험실, 다목적 강당, 뮤지엄샵 등

표 196.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개요 (자료 :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홈페이지, 2017)

○ 상설전시실

- 한의학 역사와 문화 : 조선시대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돌보던 보제원이 축소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허준과 이제마의 생애와 업적 소개 및 고서를 통해 우리 전통의학의 학문적 의미 전시
- 전통 의약기구 : 옛 사람들이 사용한 의약기구를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설명과 함께 전시
- 한방과 인체 : 인체는 대우주인 자연계와 천체 속에 속한 또 하나의 우주이므로 대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으로 인체의 현상을 해설할 수 있음을 설명
- 경락과 경혈 : 경락과 경혈의 종류와 기능을 패널과 영상으로 소개
- 사상체질 : 이제마 선생의 독창적 업적인 사상체질에 대해 소개하고, 각 체질별 특성과 섭생을 설명하고 전시
- 약초마을 이야기 :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약초들과 각 약초의 효능에 관한

내용을 축소모형으로 전시

- 한약재 대백과 : 500여 종의 한약재를 구분하고, 기원과 약효를 설명 전시
- 생활문화와 한방 :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한방차, 한방음식, 한방목욕법이 식물약재와 모형으로 소개
- 어린이 한방체험 : 다양한 동·식물이 그려진 패널을 통해 한약재에 대해 학습
- 서울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 : 우리나라 약령시의 역사와 현황 및 약재산지를 소개하고, 1960년대 한약방 모형 전시

○ 특별전시실

- 약선, 약초꽃 사진 전시 및 한의약 문화체험, 인삼 소장품 전시

○ 편의시설

- 한방문화쉼터 : 한방차를 마시며 한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
- 한방정보체험실 : 한방·건강·의약·전통 문화 관련 도서 열람 및 약첩싸기 체험 공간
- 다목적 강당 :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공간
- 한방체험실 : 체질감별과 건강나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공간
- 뮤지엄샵 : 한방 식음료 및 한방제품 판매



표 197.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4)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한의약박물관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약령시의 전통 및 한약재 유통의 본 고장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위하여 건립

구분	내용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15길49(남성로)
설립연도	· 1993년 3월 (2011년 박물관으로 승격)
면적	· 전체면적 1,600㎡, 전시면적 1,150㎡, 교육공간 121㎡
시설구성	· 상설전시실 1관, 체험실 1관, 전통문화교육장 1관 등

표 198.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개요 (자료 :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홈페이지, 2017)

○ 상설전시실

- 약전골목 : 100년전 약전골목을 재현해놓은 공간으로 한약재의 매매 및 주막, 한약방, 약초꾼의 집 전시
- 한방 치료 : 옛날 한약방에서의 치료방법과 약령시 사람들의 일상을 전시
- 한방 약재 : 식물, 동물, 광물, 희귀약재 실물 전시
- 한방 도구 : 약초를 썰 때 사용하는 도구나 한약을 만드는 도구인 약연, 약탕기, 한의원에서 사용하던 침구 등을 전시
- 한의약서 :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한의약서와 동의보감(인쇄판), 향약집성방 등의 옛 의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전시
- 약초이야기 : 약재의 채취 및 약이 되는 식물(잎, 뿌리, 열매, 꽃, 껍질), 약재 손질과 보관법에 관하여 전시
- 약초 구별하기 : 모양이 비슷한 약초들 및 독초, 토종약초, 수입약초를 감별하는 법을 전시
- 역사와 문화 : 대구 약령시의 유래와 역사적 발전과정, 문화적 의의를 전시

- 약령시 변천사 : 대구 약령시의 기원, 세월에 따른 변천사를 사진으로 전시
- 대구읍성 : 대구읍성과 객사 파괴, 약령시 연대기를 모형 및 패널 전시

○ 체험실

- 한의약 탐험 : 민족의약의 기원과 특성, 음양오행의 원리, 허준의 오행이야기 등을 다양한 체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전시
- 몸 속 탐험 : 얼굴색·눈·입술로 보는 몸 속 건강, 경락·경혈의 치료, 사상체질에 대한 전시
- 한방건강 : 귀비탕, 인삼양위탕, 십전대보탕 등과 같은 나만의 보약만들기
- 내 몸 살리기 : 건강체크와 한방건강체조로 내 몸 살리기 대작전
- 체험 프로그램 : 족욕체험·비누만들기·향첩만들기 등 한방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 및 교육

○ 편의시설

- 약령공원 : 한의약박물관 광장에 있으며, 약초와 약용식물등이 작은 동산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성분과 약리적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
- 브랜드샵 : 약령시 명품 브랜드 제품 및 한방제품 등을 판매
- 약초동산 : 한의약박물관 2층 테라스에 조성되어 있으며, 관람객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약초로 구성



표 199.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1.1.2. 농업

1) 서울시 농업박물관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업박물관은 산업화에 밀려 관심이 줄어드는 실정에 이르러, 전통농경문화를 통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고자 설립함

구분	내용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문안로 16
설립연도	· 1987년 11월
면적	· 전체면적 4,698㎡, 전시면적 2,600㎡, 교육공간 487㎡
시설구성	· 상설전시실 1관, 기획전시실 1관, 체험실, 영상실 등

표 200. 서울시 농업박물관 개요 (자료 : 서울시 농업박물관 홈페이지, 2017)

○ 상설전시실

- 농협 홍보관
 - 협동조합의 역할과 목적, 국내는 물론 세계인에게도 사랑받는 농협식품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과 농협 브랜드에 대해 전시
 - 쌀에 대한 각종 상식과 함께 쌀의 재배과정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및 농협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 전시
 -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김치의 역사와 김치 담그는 방법 및 발효과정 등을 전시
- 농업 역사관
 - 선사시대부터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농업발달사를 시대순으로 전시
 - 한반도 농경의 시작부터 농사도구의 발달과정을 영상자료와 연출모형으로 전시

· 농업 생활관

- 옛 농촌들판 풍경과 농경민속, 농가주택, 전통장터의 모습을 전시
- 논밭의 사계 : 국내 최초로 시도한 초대형 논밭모형 전시로 옛 농촌의 들녘 모습을 사계절별로 연출
- 마을신앙 동제 : 마을 공동체 제사로, 우리 민속 신앙에 대하여 전시
- 전통농가의 삶 : 안채와 사랑채, 방앗간 등으로 구성된 전통 농가의 구조와 각 공간에서 이루어진 생활 모습을 전시
- 전통장터전경 : 장터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가게들의 모습과 거래 물품들, 물품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전시

○ 기획전시실

- 농업인의 날, 기증품, 전통농기구 및 사진자료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전시

○ 편의시설

- 영상실 : 농업의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 농축산물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
- 체험실 :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구별하는 게임을 비롯하여 농축산물 생산이력 추적등 관람객들의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야외체험장 : 도시민, 학생을 위한 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



표 201. 서울시 농업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농업박물관은 농업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전통 농경 문화유산을 연구·수집·보존·전시하여 우리문화의 옛 모습을 후손들에게 이 해시키고자 설립함

구분	내용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653-11
설립연도	· 1993년 9월
면적	· 전체면적 4,324㎡, 전시면적 2,717㎡, 교육공간 108㎡
시설구성	· 농경문화관, 남도생활민속관, 쌀문화관, 기획전시관, 야외전시장 등

표 202.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개요 (자료 :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홈페이지, 2017)

○ 상설전시실

- 농경문화관
 - 농경 역사실 : 구석기 문화, 신석기 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농경 문화 발달사를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전시
 - 농경 사계실 : 옛 농촌의 풍경과 사계절 농경생활 모습을 각종 농경 유물들을 전시
 - 3D 영상실 : ‘쌀 왕국과 황금 들판’, ‘지구의 탄생’, ‘지구의 엄마 태양’ 등의 동영상을 상영
 - 휴게·전이실 : 조선 현종때 정학유가 지은 농가월령가와 전남의 각종 노동요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간
 - 공동체 문화실 : 농경문화와 관련된 신앙, 놀이문화를 전시
- 남도생활민속관 : 남도의 마을과 가옥 모형, 주생활, 의생활 등을 전시
- 쌀 문화관

- 쌀 전시실 : 쌀의 역사, 일생, 문화 등을 전시
- 3D 영상실 : 쌀 주제 입체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
- 남도음식체험실 : 남녀노소 각종 요리실습체험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 먹을거리 장터 : 남도의 다양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식당과 연중수시로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는 공간

○ 기획전시실

- 매년 연 1~2회 정도 농경문화와 쌀을 주제로 한 기획(특별) 전시를 개최

○ 야외전시실

- 마을 공동체 신앙물 : 국가 및 전라남도 지정 민속자료인 석장승 20기를 비롯하여 목장승, 솟대, 돌탑, 남근석 등이 전시
- 농촌풍물 : 여름철의 휴식공간 모정을 비롯하여 원두막, 전통 초가삼간, 나락뒤지 등이 전시
- 자연학습장·텃밭 : 소망이 열리는 넝쿨터널과 계절별 일반꽃 및 갖가지 채소류 등의 작물이 재배관리 되는 공간
- 작은 동물원 : 토끼, 닭, 진돗개 등 가축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작은 동물원
- 야생화 동산 :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해왔던 토종식물 50종 1천여본이 심어져 관리되는 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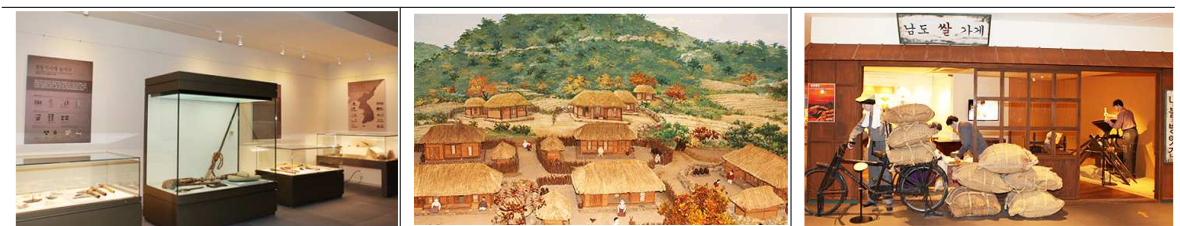


표 203.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1.2. 해외사례

1.2.1. 농업

1) 베이징 중국농업박물관

- 중국 베이징시에 위치한 중국농업박물관은 농업의 오랜 역사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중국농업유산의 보호, 수집, 연구 및 중국 농업 선진화를 이끌기 위하여 건립됨

구분	내용
위치	·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동삼환 북로 16호
설립연도	· 1986년 9월
면적	· 부지면적 430,000㎡, 전시면적 6,600㎡ (옥외10,000㎡)
시설구성	· 기본전시 및 주제전시실 10관, 중국 농업 역사연구실, 박물관 예술설계연구실, 옥외정원전시 등

표 204. 베이징 중국농업박물관 개요

(자료 : 국립농어업박물관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제고방안 연구, 2012)

○ 상설전시실

- 중국농업문명 : 현대 농업의 특징을 보여주며 현대 농업의 발전과 번영을 강조하여 중국의 농업문화와 고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업적을 소개
- 농업 문명의 기원과 확산 : 고대 농업의 발전 및 중국 농업 문명의 성취와 가치에 대해 전시
- 발명품 및 농기구의 승계 : 쟁기, 팽이, 낫, 맷돌, 개발 역사 등 네가지 대표적인 농장 도구 전시
- 수자원 프로젝트 : 초기 관개 농업과 중국의 유압 공구 발명에 대하여 전시
- 가금류 및 축산업의 기원과 개발 : 유물, 모델 및 샘플을 전시하여 가금류

및 가축 사육의 오랜 역사를 전시

- 섬유 산업의 기원과 확산 : 중국의 실크 및 면직 기술의 기원과 발전을 다양한 종류의 섬유 공구 및 고대 실크 의류 전시
- 서양의 실험적인 농업 경제학 배우기 : 서양의 농업 기술을 현대에 소개하고 전통 농업에서 중국의 현대농업으로의 발전을 전시
- 중화 인민 공화국의 농업 개발 : 중화 인민 공화국 설립 후 중국 농업 발전의 역사와 성취도 및 미래전망에 대하여 전시

○ 특별전시실

- 옥외 정원을 포함한 야외공간에서 공연 및 농업 문화 박람회 워크샵과 같은 다양한 형태 전시



표 205. 베이징 중국농업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 일본 식과농박물관

- 일본 도쿄시에 위치한 일본 식과농박물관은 동경농업대학의 방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의 장소와 농산물에 익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됨

구분	내용
위치	· 일본 도쿄시 세타가야구 카미요가 2-4-28
설립연도	· 2004년 4월
면적	· 지상 2층
시설구성	· 전시실 2관, 사무실 1관, 연구실, 회의실 등

표 206. 일본 식과농박물관 개요

(자료 : 국립농어업박물관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제고방안 연구, 2012)

○ 상설전시실

- 일본의 술잔 : 양조학과의 설립자 住江金之의 수집에 의한 것으로, 지역마다 특징있는 술잔을 전시
- 닭 표본 : 닭의 조상 및 천연 기념물로 지정받은 품종의 박제 전시
- 옛 농기구 : 일본 각 지역의 자연 조건과 농업 조건에 따라 발전한 농기구 및 역사적 배경과 우수한 문화를 전시
- 농가의 옛 민가 : 많은 옛 농기구를 활용해 관동 지방 농가의 옛 민가를 그 환경과 배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디오라마 전시로 재현
- 농업대학의 역사 : 농업대학의 초창기부터 최근까지의 역사를 사진과 간략한 문장으로 전시
- 목재 표본 : 농업대학내에 산림종합과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300-400년 이상 된 목재의 표본을 전시

○ 기획전시실

- 지구의 기록 20년 사진전 및 사람과 숲의 관계 등을 전시

○ 편의시설

- 식당 및 조리실 : 농산물로 만들어지는 음식을 조리하고 맛볼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도서를 비치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



표 207. 일본 식과농박물관 전시구성 관련 이미지

2. 관련 법규 사항

□ 법규 관련 일반사항

“고려인삼 전시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주요 법규사항은 아래표와 같다.

법규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지 선정 이후 해당 지자체의 부지에 대한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법규 검토는 건축설계 단계에서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법규사항(개정 사항등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 4	건축물의 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5. 문화 및 집회시설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 전시장 용도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	문화시설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9.5>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이 가능 (향후 필요에 의해 정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공연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또는 「과학관육성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책 판단 필 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별표2	<p>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5.31]</p> <p>①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p> <p>①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라 한 다)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 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이하 "협의요청시기" 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행정계획의 종류·규모</th> <th>협의요청시기</th> </tr> </thead> <tbody> <tr> <td>가.도시개발</td> <td>(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td> <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td> </tr> </tbody> </table>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도시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판단할수 없으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도시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및 범위 별표1	<p>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18. 중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3. 중략</p> <p>③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① 법 제4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분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3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th> <th>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th> </tr> </thead> <tbody> <tr> <td>1. 도시의 개발사업</td> <td>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td> <td>「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td> </tr> </tbody> </table>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p>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p>	부지 선정 이후 판단 필요 사전재해영향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별표1	3-8. 중략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제6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d> <td>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td> <td>협의 시기</td> </tr> <tr> <td>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td> <td>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td> <td>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td> </tr> </table>	구 분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성검토협의 대상일 가능성 높음
구 분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6〕	실시계획인가 대상임 건축허가와 의제처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⑥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9.25>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p> <p>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p> <p>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p> <p>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p> <p>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p>	
건축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p>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p> <p>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p> <p>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나. 16층 이상인 건축물</p> <p>4.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6.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p> <p>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p>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p>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12.29]</p>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p>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9, 2007.12.31></p>	

번호	항목	법적 기준	적용
<p>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p>	<p>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p>	<p>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15></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p> <p>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p> <p>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p> <p>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p> <p>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②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의 수행 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p> <p>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p> <p>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p> <p>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p> <p>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p> <p>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p> <p>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⑤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0.12.13.]</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경관법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p>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p>	계획안에 따라 해당사항 여부 확인.
경관법 제24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p>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5. 종략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건축 허가	<p>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④ -종략</p> <p>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건축허가 대상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고</p> <p>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p> <p>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p>	
<p>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p>	<p>건축허가등의 동의</p>	<p>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意的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意的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소방서장 동의대상임.</p>
<p>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p>	<p>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p>	<p>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2011.4.6></p> <p>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p> <p>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p> <p>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p> <p>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p> <p>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p> <p>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p> <p>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p>	<p>소방서장 동의대상임.</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p>	
<p>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p>	<p>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p>	<p>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p>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p>③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8][중전 제15조는 제33조로 이동 <2008.3.28>]</p>	<p>부지선정에 따라 해당 사항 검토 필요</p>
<p>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p>	<p>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p> <p>별표1</p>	<p>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20. 종약 <p>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p>	<p>부지선정 및 설계안에 따라 해당 사항 검토 필요</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1.개발사업</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대상사업의 범위</td> <td>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시 기 또는 심의요청시기</td> </tr> <tr> <td>가. 도시 의 개발</td> <td>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td> <td>「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td> </tr> </table> <p>2.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p> <table border="1"> <tr> <td>주용도</td> <td>세부용도</td> <td>도시교통 정비지역</td> <td>교통권역(㎡)</td> </tr> <tr> <td>4) 문화 및 집회시설</td> <td>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 관, 기념관 등)</td> <td>건축연면적 15,000㎡이상</td> <td>건축연면적 22,500㎡ 이상</td> </tr> </table>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시 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가. 도시 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 정비지역	교통권역(㎡)	4)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 관, 기념관 등)	건축연면적 15,000㎡이상	건축연면적 22,500㎡ 이상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시 기 또는 심의요청시기															
가. 도시 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 정비지역	교통권역(㎡)														
4)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 관, 기념관 등)	건축연면적 15,000㎡이상	건축연면적 22,500㎡ 이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p>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p> <p>1. 국가</p> <p>2. 지방자치단체</p> <p>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p> <p>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에너지관리 공단 사전협의 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제26조	신축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p>① 공공기관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하고,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비를 50%미만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사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000㎡이상의 신축건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관련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그 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한 대상 건축물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74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인 허가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이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	에너지성능 지 표검토서의 평점합계 계획의 평점이 지침74점의 이상 필요.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 지침 제27조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의무 및 인증 설비 사용의무	<p>① 공공기관에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 3,000㎡이상인 경우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총건축비의 5%(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로 한다)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야 한다.</p>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신재생에너지 센터 검토 승인 필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27조의2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 취득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향후 계획 규모에 따라 검토 필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p>	선정된 부지의 지자체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확인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향후 계획 규모에 따라 검토 필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해당사항 없음.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부지선정에 따라 해당 사항 검토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p>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속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p> <p>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p> <p>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나. 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라.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울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마.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p> <p>1.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p> <p>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p> <p>3.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p> <p>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p>	필요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p>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p> <p>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p> <p>④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적법하게 조성토록 함.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조경	<p>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닌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건립부지에 따라 해당 사항 검토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p>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개정 2009.7.16, 2010.12.13></p> <p>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p> <p>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p> <p>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p> <p>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p> <p>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p> <p>6. 축사</p> <p>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p> <p>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p> <p>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p> <p>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p> <p>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p> <p>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p> <p>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p> <p>①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p>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p> <p>2. 상업지역</p> <p>3. 준공업지역</p> <p>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p> <p>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선정된 부지 현황에 맞는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등의 확보	<p>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p> <p>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p> <p>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p> <p>②~⑥ - 생략</p>	
건축법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p>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p> <p>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p>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p> <p>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p> <p><개정 2009.6.30, 2009.7.16>[전문개정 2008.10.29]</p>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p>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p>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p> <p>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9.16></p> <p>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p>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p> <p>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p> <p>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p> <p>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p> <p>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p> <p>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p> <p>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16>[전문개정 2008.10.29.]</p>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소화전), 저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사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p>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p> <p>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 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p>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p> <p>④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다. <신설 2009.7.16>[전문개정 2008.10.29] ①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건축법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갯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④ 삭제 <1995.12.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⑥ 삭제 <1999.4.30>[제목개정 1999.4.30]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감종방화문을 설치할 것</p> <p>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p> <p>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p> <p>가-라. 생략</p> <p>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p> <p>가-가. 생략</p> <p>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p> <p>④ 영 제35조제2항에서 "갯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p>	
건축법시행령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p>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p> <p>2. 종교시설</p> <p>3. 위락시설</p> <p>4. 장례식장[전문개정 2008.10.29]</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p>① 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 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p> <p>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p> <p>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법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p>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p> <p>2. 종교시설</p> <p>3. 판매시설</p> <p>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p> <p>5. 위락시설</p> <p>6.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p> <p>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p> <p>8. 장례식장</p> <p>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p> <p>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29]</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기준	<p>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p>	<p>건축계획시</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p> <p>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p> <p>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 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p> <p>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p> <p>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p> <p>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p>	<p>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법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p>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전문개정 2008.10.29]</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법시행령 제4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p>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p> <p>1.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p>	<p>건축계획시 검토</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p> <p>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13></p> <p>[전문개정 2008.10.29]</p>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p>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p> <p>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p> <p>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p> <p>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p> <p>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키아리나·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p> <p>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p> <p>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p> <p>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p> <p>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p>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p> <p>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p> <p>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p> <p>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p> <p>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p> <p>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p> <p>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p> <p>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p> <p>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p> <p>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p> <p>⑤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p> <p>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p> <p>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p> <p>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⑥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⑧ 삭제 <2005.7.22></p>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2</p>	<p>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p>	<p>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51 1496 1257 1727"> <thead> <tr> <th>구 분</th> <th>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th> <th>기타의 복도</th> </tr> </thead> <tbody> <tr> <td>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td> <td>2.4미터 이상</td> <td>1.8미터 이상</td> </tr> <tr> <td>공동주택·오피스텔</td> <td>1.8미터 이상</td> <td>1.2미터 이상</td> </tr> <tr> <td>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td> <td>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이상)</td> <td>1.2미터 이상</td> </tr> </tbody> </table> <p>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 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p> <p>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p> <p>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p>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이상)	1.2미터 이상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이상)	1.2미터 이상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p> <p>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p> <p>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본조신설 2005.7.22]</p>	
<p>건축법시행령 제50조</p>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p>	<p>거실반자의 설치</p> <p>거실의 반자높이</p>	<p>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29]</p> <p>①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p>건축법시행령 제51조</p>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p>	<p>거실의 채광 등</p> <p>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p>	<p>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p> <p>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전문개정 2008.10.29]</p> <p>① 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p> <p>②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성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p> <p>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p>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주택 중 다가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전문개정 2008.10.29]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밀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 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밀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공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법시행령 제57조	방화벽의 구조	<p>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p>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0.29]</p> <p>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③. - 생략</p>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p>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p> <p>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p> <p>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p> <p>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p> <p>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p> <p>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p> <p>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p> <p>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p> <p>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p> <p>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p> <p>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p> <p>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p> <p>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p> <p>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p> <p>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번호	항목	법적 기준	적용																																																															
	별표1	<p>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p> <p>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p> <p>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p> <p>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p> <p>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p> <p>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p> <p>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p> <p>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p> <p>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p> <p>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p> <p>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p> <p>라. 철골조</p> <p>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p> <p>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p> <p>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p> <p>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p> <p>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p> <p>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p> <p style="text-align: center;">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 : 시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용도</th> <th rowspan="3">구성 부재</th> <th colspan="6">벽</th> <th rowspan="3">보·기둥</th> <th rowspan="3">바닥</th> <th rowspan="3">지붕</th> </tr> <tr> <th rowspan="2">내력벽</th> <th colspan="2">외벽</th> <th colspan="2">내벽</th> </tr> <tr> <th>연소우려가 있는부분(가)</th> <th>연소우려가 없는부분(나)</th> <th>내력벽</th> <th>비내력벽(다)</th> </tr> </thead> <tbody> <tr> <td>용도구분 (1)</td> <td>용도규모(2) 층수/최고높이(m)(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일반 시설</td> <td rowspan="2">12/50</td> <td>초과</td> <td>3</td> <td>1</td> <td>0.5</td> <td>3</td> <td>2</td> <td>2</td> <td>3</td> <td>2</td> <td>1</td> </tr> <tr> <td>이하</td> <td>2</td> <td>1</td> <td>0.5</td> <td>2</td> <td>1.5</td> <td>1.5</td> <td>2</td> <td>2</td> <td>0.5</td> </tr> <tr> <td>4/20 이하</td> <td>1</td> <td>1</td> <td>0.5</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0.5</td> </tr> </tbody> </table>	용도	구성 부재	벽						보·기둥	바닥	지붕	내력벽	외벽		내벽		연소우려가 있는부분(가)	연소우려가 없는부분(나)	내력벽	비내력벽(다)	용도구분 (1)	용도규모(2) 층수/최고높이(m)(3)									일반 시설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1	0.5	
용도	구성 부재	벽						보·기둥	바닥	지붕																																																								
		내력벽			외벽		내벽																																																											
			연소우려가 있는부분(가)	연소우려가 없는부분(나)	내력벽	비내력벽(다)																																																												
용도구분 (1)	용도규모(2) 층수/최고높이(m)(3)																																																																	
일반 시설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1	0.5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p><개정 2009.12.29></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제목개정 2009.12.29]</p> <p>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p> <p>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2~7. - 생략</p>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p>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p> <p>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p> <p>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p> <p>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p> <p>③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p> <p>④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p> <p>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p> <p>[제목개정 2010.12.30]</p>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난연재료	<p>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p> <p><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p>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p>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2008.3.14></p> <p>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p>	<p>준불연재료</p>	<p>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p> <p>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p> <p>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p> <p>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p> <p><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p>	
<p>건축법 제53조</p>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p>	<p>지하층</p> <p>지하층의 구조</p>	<p>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p> <p>①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p> <p>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p> <p>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p> <p>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p> <p>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p> <p>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p> <p>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p> <p>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p> <p>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p> <p>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p> <p>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건축법시행령 제6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0.29]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 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 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전문개정 2003.1.6]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4. 생략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생략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21. 생략 ②~⑦ 생략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4. 생략 ②~⑤ 생략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21. 생략 ②~④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17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21. 생략 ②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파. 생략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⑦항이 개정(2009.7.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높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7.28>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법 제58조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8.10.29]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1.11>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법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p>각 부분의 높이는 <u>그 부분으로부터 전면(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u>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p>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p> <p>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p> <p><개정 2010.2.18></p> <p>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3.4.15, 2009.11.11></p>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법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p>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p>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p> <p>⑥이하 생략</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건축법 시행령 51조</p> <p>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14조</p>	<p>거실의 채광 등</p> <p>배연설비</p>	<p>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p> <p>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p>②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공기유입방식을 급기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p>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0조</p>	<p>피뢰설비</p>	<p>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II 이상이어야 한다.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p>3-8. 생략</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별표1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나. 생략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러. 생략 3~4. 생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법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10.29]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6조	별표1의2 승강기의 구조	<p>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전문개정 1999.5.11.]</p> <p>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관련)</p> <table border="1"> <tr> <td>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td> <td>3천제곱 미터 이하</td> <td>3천제곱미터 초과</td> </tr> <tr> <td>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td> <td>1대</td> <td>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td> </tr> </table> <p>비고:승강기의 대수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 강기는 위 표에 의한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p> <p>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승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p>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3천제곱 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3천제곱 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건축법 제66조 건축법시행령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 용과 폐자재 활용 건축물의 에너지 이 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p>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 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 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42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조정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12 생략 <p>⑥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 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0.29]</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 용과	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4항에 따라 건축기 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폐자재의 활용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p>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전자 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p> <p>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축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삭제 <2001.1.17>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7></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5.11, 2001.1.17, 2009.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2.8.31, 2008.3.14, 2008.7.10, 2009.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p>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7.10></p> <p>① 삭제 <1999.5.11></p> <p>②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p> <p>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1.1.17]</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법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p>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p> <p>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 의 협력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p>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p>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p> <p>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 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건축법시행규칙 제36조의 2	관계전문기술자	<p>2009.7.16></p> <p>⑥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p> <p>① 삭제 <2010.8.5></p> <p>②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p> <p>1. 지질조사</p> <p>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p> <p>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p>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p>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이하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p>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너비</th> <th>길이</th> </tr> </thead> <tbody> <tr> <td>경형</td> <td>1.7미터 이상</td> <td>4.5미터 이상</td> </tr> <tr> <td>일반형</td> <td>2.0미터 이상</td> <td>6.0미터 이상</td> </tr> <tr> <td>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td> <td>2.0미터 이상</td> <td>5.0미터 이상</td> </tr> </tbody> </table> <p>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너비</th> <th>길이</th> </tr> </thead> <tbody> <tr> <td>경형</td> <td>2.0미터 이상</td> <td>3.6미터 이상</td> </tr> <tr> <td>일반형</td> <td>2.3미터 이상</td> <td>5.0미터 이상</td> </tr> <tr> <td>확장형</td> <td>2.5미터 이상</td> <td>5.1미터 이상</td> </tr> <tr> <td>장애인전용</td> <td>3.3미터 이상</td> <td>5.0미터 이상</td> </tr> </tbody> </table> <p>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p>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p>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번호	항목	법적 기준	적용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p>한다.</p> <p>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p> <p>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p> <p>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51 862 1252 1037"> <thead> <tr> <th>구분</th> <th>너비</th> </tr> </thead> <tbody> <tr> <td>평행주차</td> <td>3.0미터</td> </tr> <tr> <td>직각주차</td> <td>6.0미터</td> </tr> <tr> <td>60도 대향주차</td> <td>4.0미터</td> </tr> <tr> <td>45도 대향주차</td> <td>3.5미터</td> </tr> <tr> <td>교차 주차</td> <td>3.5미터</td> </tr> </tbody> </table> <p>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p> <p>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p> <p>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p> <p>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10.10.29]</p> <p>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9.5, 1992.9.5, 1995.8.5, 1996.6.29, 1999.3.12, 2004.7.1, 2006.5.30, 2008.2.22></p> <p>1~5. -생략</p> <p>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p>	구분	너비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 주차	3.5미터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구분	너비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 주차	3.5미터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p>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p> <p>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한 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10.29]</p> <p>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p> <p>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p> <p>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p> <p>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651 987 1257 1193"> <thead> <tr> <th rowspan="2">주차형식</th> <th colspan="2">차로의너비</th> </tr> <tr> <th>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th> <th>출입구가 1개인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평행주차</td> <td>3.3</td> <td>5.0</td> </tr> <tr> <td>직각주차</td> <td>6.0</td> <td>6.0</td> </tr> <tr> <td>60도 대향주차</td> <td>4.5</td> <td>5.5</td> </tr> <tr> <td>45도 대향주차</td> <td>3.5</td> <td>5.0</td> </tr> <tr> <td>교차주차</td> <td>3.5</td> <td>5.0</td> </tr> </tbody> </table> <p>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p> <p>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p> <p>5.6. - 생략</p> <p>7.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ppm 이</p>	주차형식	차로의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도 대향주차	4.5	5.5	45도 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주차형식	차로의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도 대향주차	4.5	5.5																					
45도 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하)로 유지되어야 한다.</p> <p>9. - 생략</p> <p>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1. - 생략(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p> <p>12. - 생략(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p> <p>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3. - 생략(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p> <p>②~⑦. - 생략</p>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⑨. 생략</p> <p>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⑪~⑬. 생략(전문개정 2010.3.22)</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p>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2008.7.31, 2009.7.7></p> <p>1~6. - 생략</p> <p>②~④ - 생략</p>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번호	항목	법적 기준	적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39 322 911 344">시설물</th> <th data-bbox="911 322 1268 344">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39 344 911 367">1. 위락시설</td> <td data-bbox="911 344 1268 367">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td> </tr> <tr> <td data-bbox="639 367 911 568">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td> <td data-bbox="911 367 1268 568">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td> </tr> <tr> <td data-bbox="639 568 911 680">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td> <td data-bbox="911 568 1268 680">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td> </tr> <tr> <td data-bbox="639 680 911 770">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td> <td data-bbox="911 680 1268 770">○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td> </tr> <tr> <td data-bbox="639 770 911 882">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td> <td data-bbox="911 770 1268 88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td> </tr> <tr> <td data-bbox="639 882 911 994">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td> <td data-bbox="911 882 1268 994">○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td> </tr> <tr> <td data-bbox="639 994 911 1039">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td> <td data-bbox="911 994 1268 1039">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td> </tr> <tr> <td data-bbox="639 1039 911 1061">8. 창고시설</td> <td data-bbox="911 1039 1268 1061">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td> </tr> <tr> <td data-bbox="639 1061 911 1077">9. 그 밖의 건축물</td> <td data-bbox="911 1061 1268 1077">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td> </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검토사항)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p>비 고</p> <p>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p> <p>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 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p> <p>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p>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p> <p>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1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p> <p>④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별도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p> <p>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적용범위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p> <p>1~15. 생략</p> <p>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p> <p>17.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p>① 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p> <p>1. 공공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p> <p>2. 공공용시설</p> <p>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p> <p>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p> <p>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p> <p>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p> <p>②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p> <p>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p> <p>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p> <p>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p> <p>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p>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p>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p> <p>④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p>

법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전문개정 2011.5.30]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	어린이용대·소변기 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건축계획시 검토 (설계자 기본 검토사항)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 기의 설치 등 별표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0.5.4]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 조 항	항 목	법 적 기 준	적 용
		<p>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p> <p>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p> <p>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p> <p>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p> <p>이하생략</p>	

3. 사업추진방안별 프로세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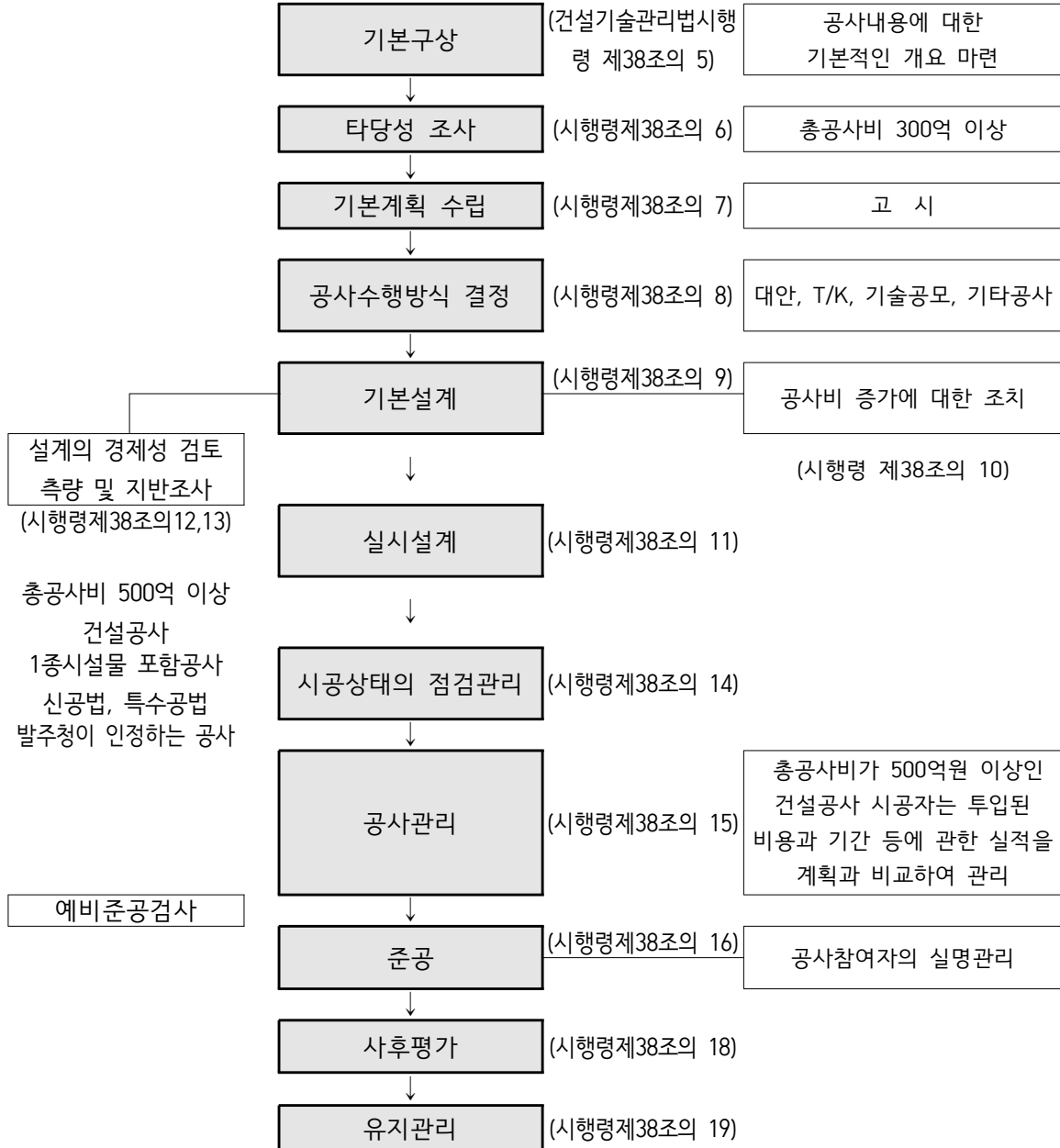


그림 65.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과정

1) 설계발주 방식 및 종류

□ 수의계약 (1개업체)

발주자가 특정 설계자(업체)를 지정하여 선정

□ 현상설계

① 공개현상

- 우수작품을 공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설계자를 참여케 하여 작품성이 뛰어난 자를 설계자로 선정
- 공모절차가 필요하고 관리상 시간과 비용 다수 소요

② 지명현상

- 발주코자 하는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발주자와 거래실적이 있는 다수의 (통상 3-5개업체)를 선정 후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자 선정 (일반적으로 민간발주에서 시행)

③ 제한현상

- 지역이나 실적기준으로 참여자격을 제한
- 공공발주 등에서 많이 시행. 참여자 수의 적절한 제한 가능. 시간, 비용 절감

④ PQ 제한 현상

- 사전심사(기술, 자본, 조직 등)를 통하여 발주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적격자를 다수 선정한 후 현상설계를 통하여 1등 당선자를 설계자로 선정
- 기술 및 작품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발주시 적합

□ T/K(턴키) 발주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한 업체에게 의뢰 발주하는 형식(Design-Build)으

로 단순공사 나 해외공사에 주로 쓰이는 방식

- 공기단축과 발주자의 관리용이 등은 있으나 작품성이 저하될 우려 존재

□ 입찰

① 최저가 입찰

- 일반조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일부 감리 프로젝트 등에서 시행, 통상 추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

② 예가 직상가 입찰

- 복수 예정가격(10~15개)을 선정하여 그중 3~4개를 무작위 추첨, 산술평균하여 예가를 산정한 후 90% 직상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소규모 용역에 적용

③ 기술.가격 분리입찰

- PQ심사를 통하여 5-7개 업체 선정
- 기술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심사로 최종 1,2,3위 선정
- 1위 업체부터 예정가격이내로 가격 협상하여 합의시 낙찰자로 선정

④ PQ(+PP) + 입찰

- PQ(+PP)심사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
- PQ(+PP)점수와 입찰점수를 합산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응찰자중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발주 방식별 설계자 선정과정



그림 66. 발주 방식별 설계자 선정 과정

구 분	소요기간 (月)	장 점	단 점	비고
수의계약	-	- 설계공모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 발주자와 설계자와의 거래실적이 많을수록 Communication이 원활하여 건축주의 의사반영 용이	- 경쟁이 없는 관계로 설계의 품질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현상 설계	공개현상	준비:2.0 진행:3.0	- 우수작품 공모가능	- 영세설계사무소의 경우 작품성은 뛰어날 수 있으나 자본 및 조직 등 신뢰성 확보곤란 - 공개현상에 따른 관리에 시간과 비용 소요 과다 - 설계특성고려 미흡
	지명현상	준비:1.5 진행:3.0	-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확보 하고있는 업체를 선별지정하여 작품을 제고하고 공개현상으로 손실되는 비용과 관리를 최소화. - 발주자와의 거래실적을 통하여 발주자의 설계의도 등을 쉽게 반영할 수 있고 거래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됨	- 지명을 위한 기준확보가 불투명 - 다양하고 작품성 높은 작품기대 곤란
	제한현상	준비:1.0 진행:3.0	- 참여자 수의 적절한 제한 가능 - 시간, 비용 절감	- 우수업체 제외가능
	PQ 제한현상	준비:2.0 진행:3.0	- 발주자가 정한 사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술성 확보 - 기술성과 작품성을 종합하여 업체의 신뢰성과 고품질의 설계 추구 - 대규모 설계작품 공모시 주로사용	- PQ제한 기준작성에 마련 요구 - PQ심사를 위한 시간 및 관리의 비용 과다 우려 - PQ실적이 없는 소형설계사무소의 참여가 곤란하고 그에 따른 독창성 있는 설계작품 추구에 제한
T/K발주	준비:3.0 진행:4.0	- 공기단축과 예산절감가능 - 단일 컨소시엄을 통하여 설계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	- 작품성이 저하, 단순구조물이 될 우려(저가투찰로 인한) - 설계의 작품성이 요구되고 빈번한 설계변경의 Project에는 부적합 - 과당경쟁으로 부작용 발생	
입찰	최저가/직상가	준비:0.5 진행:0.5	- 시간과 비용절감	- 설계의 작품성 저하우려
	기술가격 분리입찰	준비:1.0 진행:1.5	- 최소한의 기술제안과 PQ를 통하여 상위의 업체와 수의시담을 통한 방법	- 발주처 예산에 근접한 낙찰가
	PQ(+PP)+입찰	준비:1.0 진행:1.5	- 시간과 비용절감 - 발주자가 정한 사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술성 확보 - 해당사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업체 선정 가능	- PQ실적이 없는 소형설계사무소의 참여가 곤란하고 그에 따른 독창성 있는 설계작품 추구에 제한

※ 건축물의 종류, 용도, 규모 등 사업추진 제반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소 차이발생 될 수 있음

표 208. 설계발주방식의 장 단점 비교

□ 현상설계 설계자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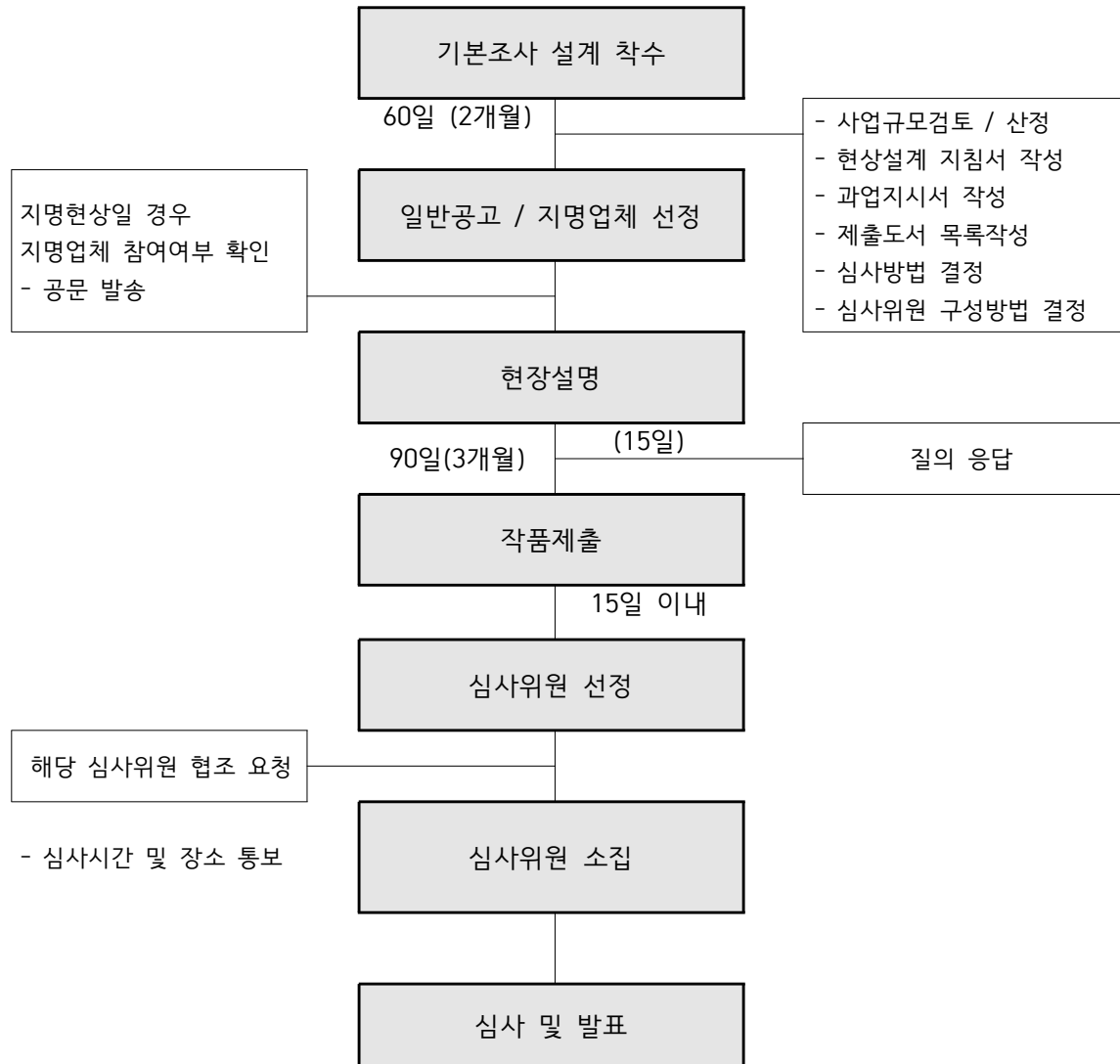


그림 67. 현상설계 설계자 선정절차

2) 입찰제도

□ 입찰의 개념

입찰이란 용역이나 공사등의 발주에 있어서 해당 용역제공자나 공사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복수의 참여희망자간 금액제안을 통하여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경쟁 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국가계약법 제7조) 하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을 신문, 관보,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여 입찰하고 그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요건

- 당해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을 필한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
※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구체적인 요건 정한다.

□ 입찰의 종류

○ 일반공개입찰

① 최저가 입찰

- 일반조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일부 감리 프로젝트 등에서 시행, 통상 추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

② 예가 직상가 입찰

- 복수 예정가격(15개)을 선정하여 그중 4개를 무작위 추첨, 산술평균하여 예가를 산정한 후 90%직상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소규모 용역에 적용

○ 제한경쟁입찰

① 기술.가격 분리 입찰

- 발주청은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 기준에 의한 기술우위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에 의하여 선정 가능
- PQ심사를 통하여 5-7개 업체 선정
- 기술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심사로 최종 1,2,3위 선정
- 1위 업체부터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협상(수의시담)하여 합의시 낙찰자로 선정

② PQ(+PP)+입찰

- PQ(+PP)심사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한다.
- PQ(+PP)점수와 입찰점수를 합산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응찰자중 최저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목적.성질상 당해 계약이행의 능력과 자격을 가진 자가 특정 다수일 경우에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요청하여 승낙을 한 자에 한하여 경쟁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입찰종류에 따른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비고
일반 공개 입찰	최저가 입찰	- 동등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 가격경쟁에 따른 예산절감 - 부정행위방지 및 공정성 유지	-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 실행대비 저가 낙찰로 인한 작품성 결여	
	예가 직상가 입찰	- 동등한 입찰 참가 기회 부여 - 부정행위방지 및 공정성 유지	-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 저하	
제한 경쟁 입찰	기술.가격 분리 입찰	- 최소한의 PQ 및 기술제안을 통하여 기술력이 높은업체에 우선 협상권 부여 - 우수한 기술력 확보 가능	- 발주처 예산에 근접한 낙찰가	
	PQ(+PP) +입찰	- 발주자가 정한 사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정한 기준 이 상의 기술력 확보	- PQ 후 입찰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소요 - PQ 실적이 없는 소형설계사무소의 참여가 곤란하고 그에 따른 독창 성 있는 설계작품 추구에 제한	
지명경쟁입찰		- 우수한 업체로 참여 제한	- 창의성 결여 - 담합 우려	

표 209. 입찰종류에 따른 장.단점 비교

□ 입찰 방식별 설계자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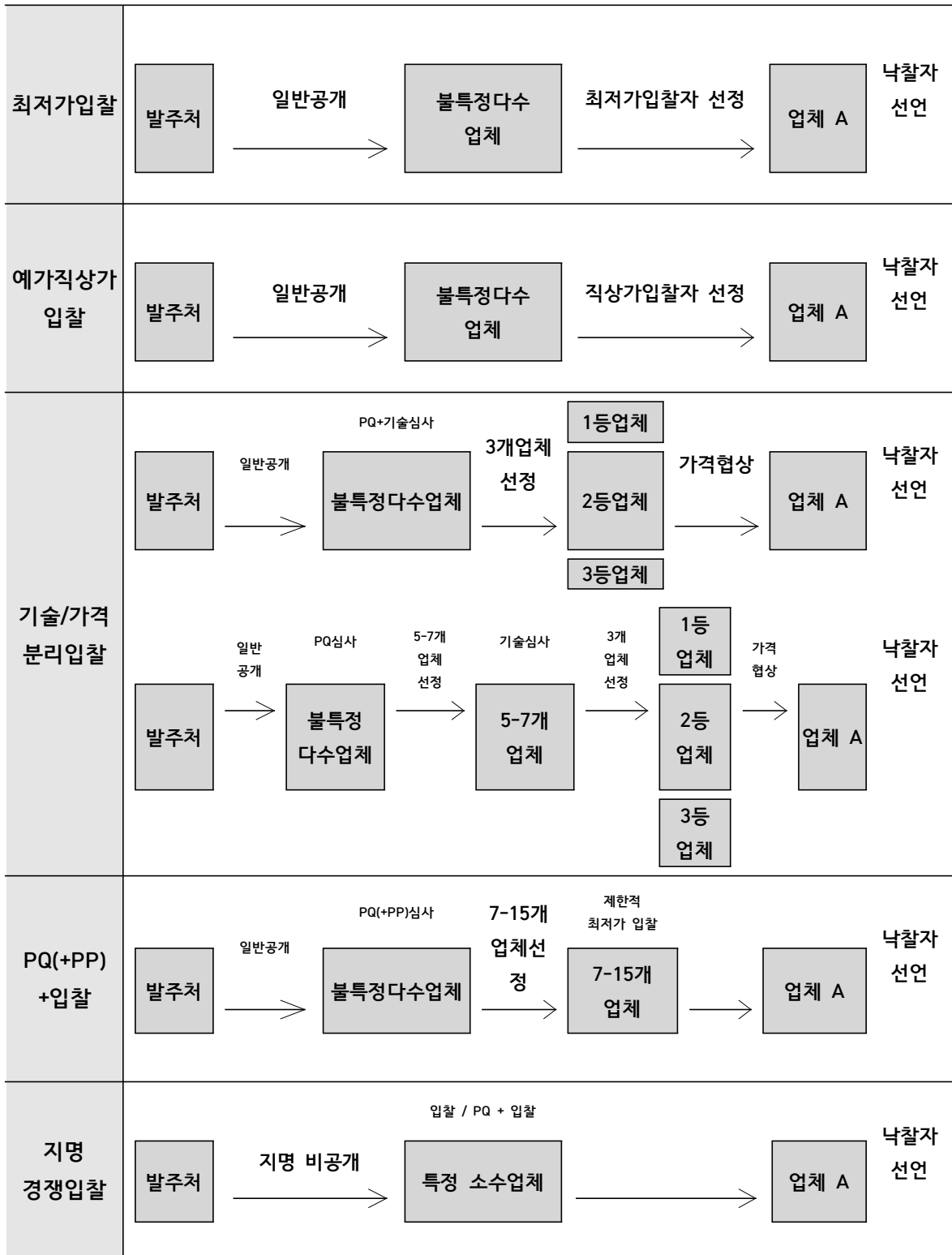


그림 68. 입찰 방식별 설계자 선정 과정

□ 일반 공개입찰 (최저가 입찰 / 예가 직상가 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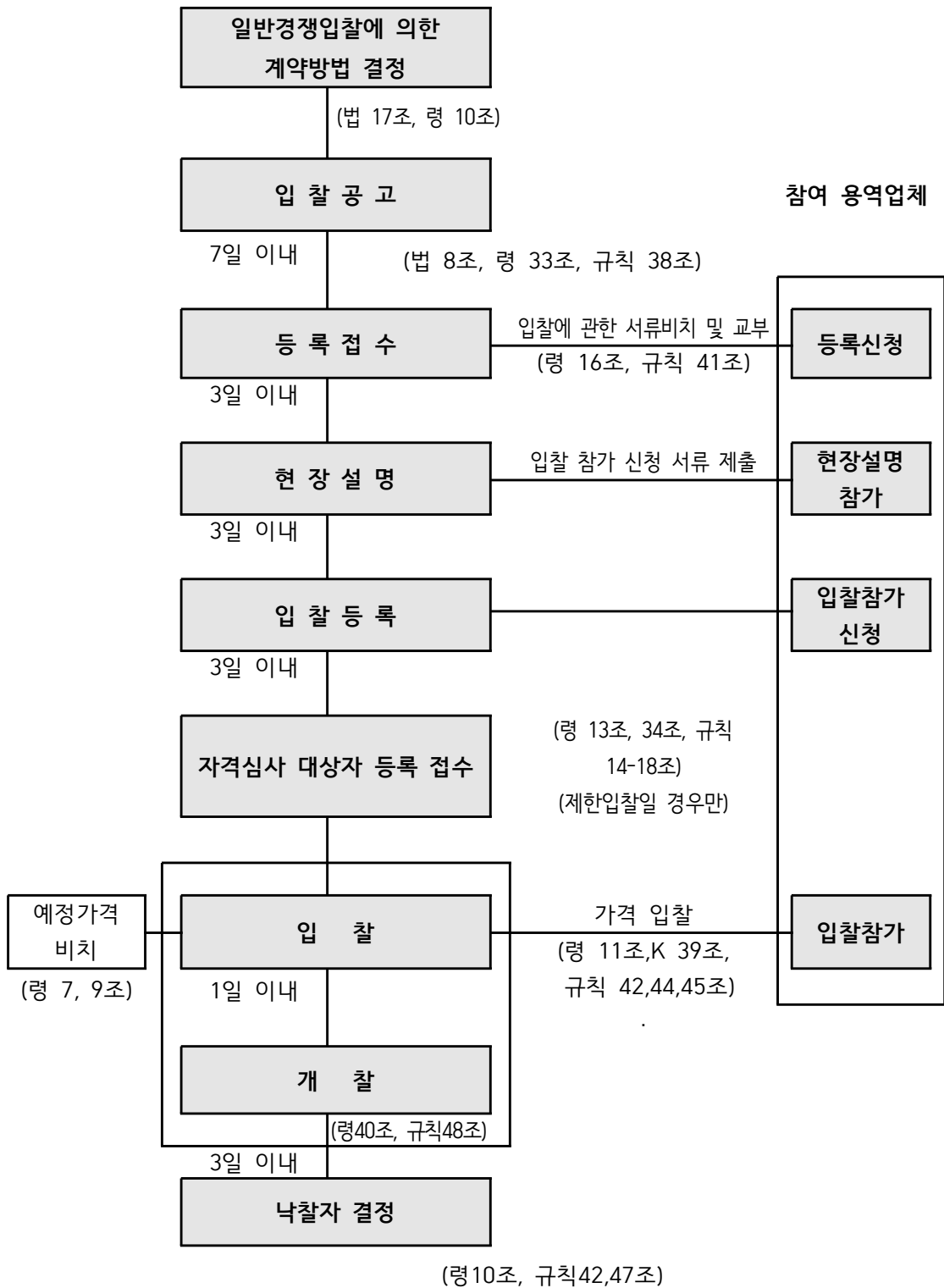


그림 69. 일반 공개입찰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 진행 일정임

※공고 이후 최종 낙찰자 선정까지 약 20일 내외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

□ 기술 가격 분리 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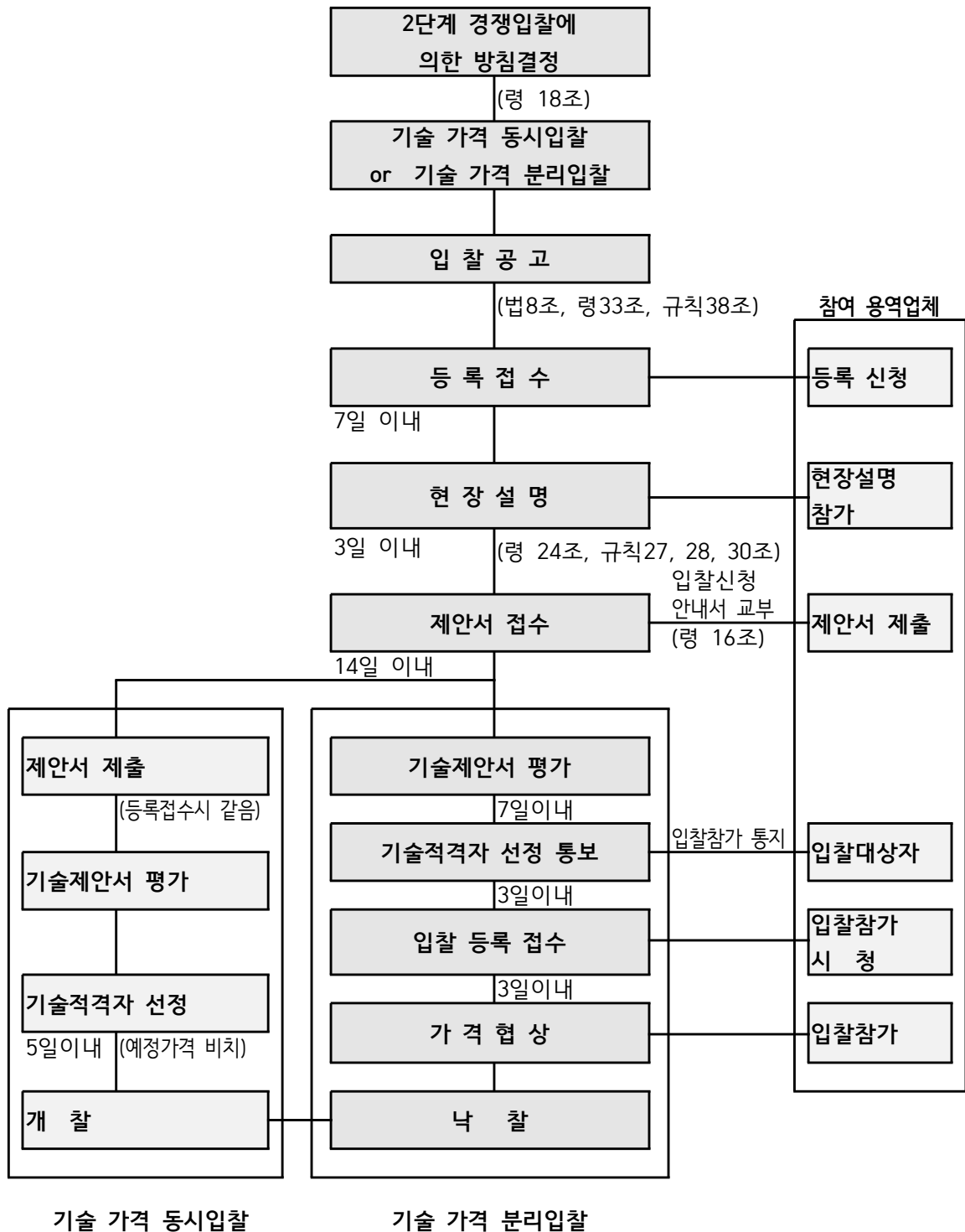


그림 70. 기술 가격 분리 입찰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 진행 일정임

※공고 이후 최종 낙찰자 선정까지 약 40일 내외 정도 소요를 고려

□ PQ(+PP)+ 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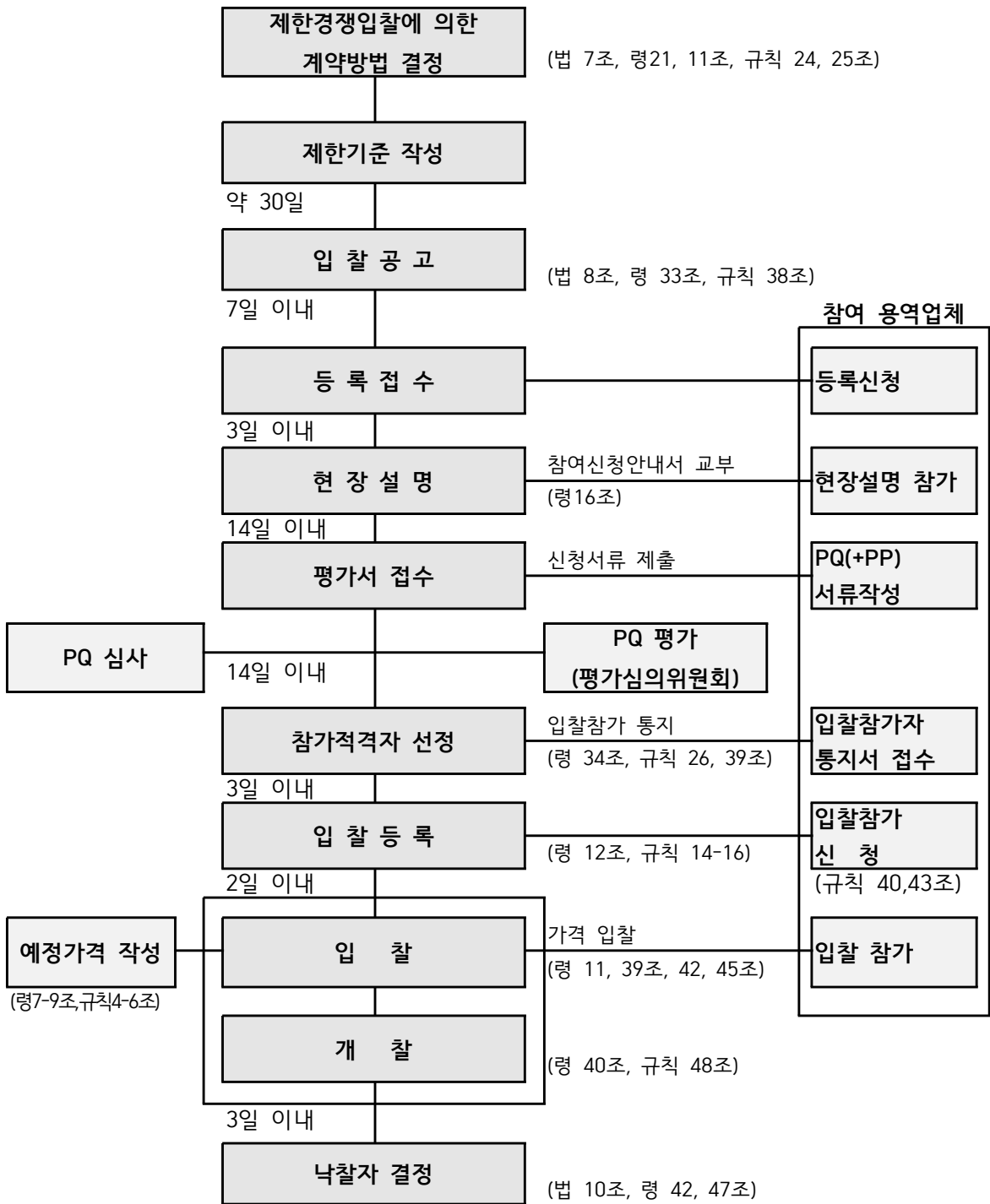


그림 71. PQ(+PP)+입찰

- ※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 진행 일정임
- ※ 공고 이후 최종 낙찰자 선정까지 약40 일 내외 정도 소요를 고려

□ 지명경쟁 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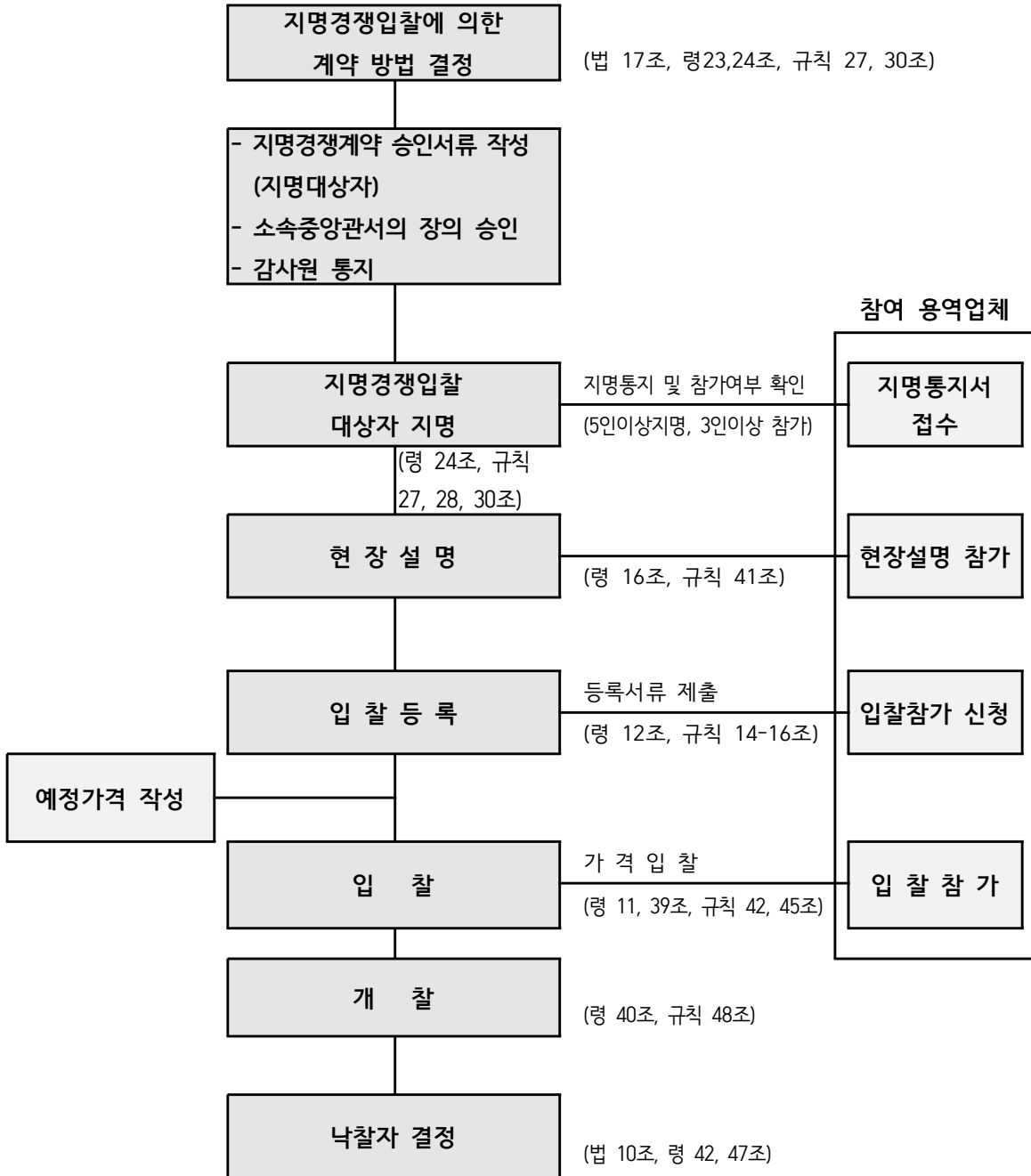


그림 72. 지명경쟁입찰

- ※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 진행 일정이다.(여유 있음)
- ※ 공고 이후 최종 낙찰자 선정까지 약40 일 내외 정도 소요된다.

3) 설계 시공일괄(T/K) 입찰제도

□ 턴키 대안공사의 개요

○ 일괄입찰(기본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입찰공고사항(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가능)가 기본설계도면과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설계·시공일괄 계약방식이다.

○ 일괄입찰의 정의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이다.

□ 대안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 한다는 측면에서 턴키와 유사하다.

□ 대안의 정의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대체 공종 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

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 하지 않는 공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 축 된 것에 한 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방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이다.

□ 턴키제도 장·단점비교

구 분	발 주 자	건 설 업 자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책임 회피 - 최적대안의 선정 - 관리업무의 최소화 - 공기의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의 효율성 제고 - 신기술등 업체보유 기술 활용 - 위험관리기회 증진 - 전문화 촉진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용의 불확실 - 사업관리의 한계 - 발주 준비의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불확실 - 입찰부담 과중 -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표 210. 턴키제도 장·단점비교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발주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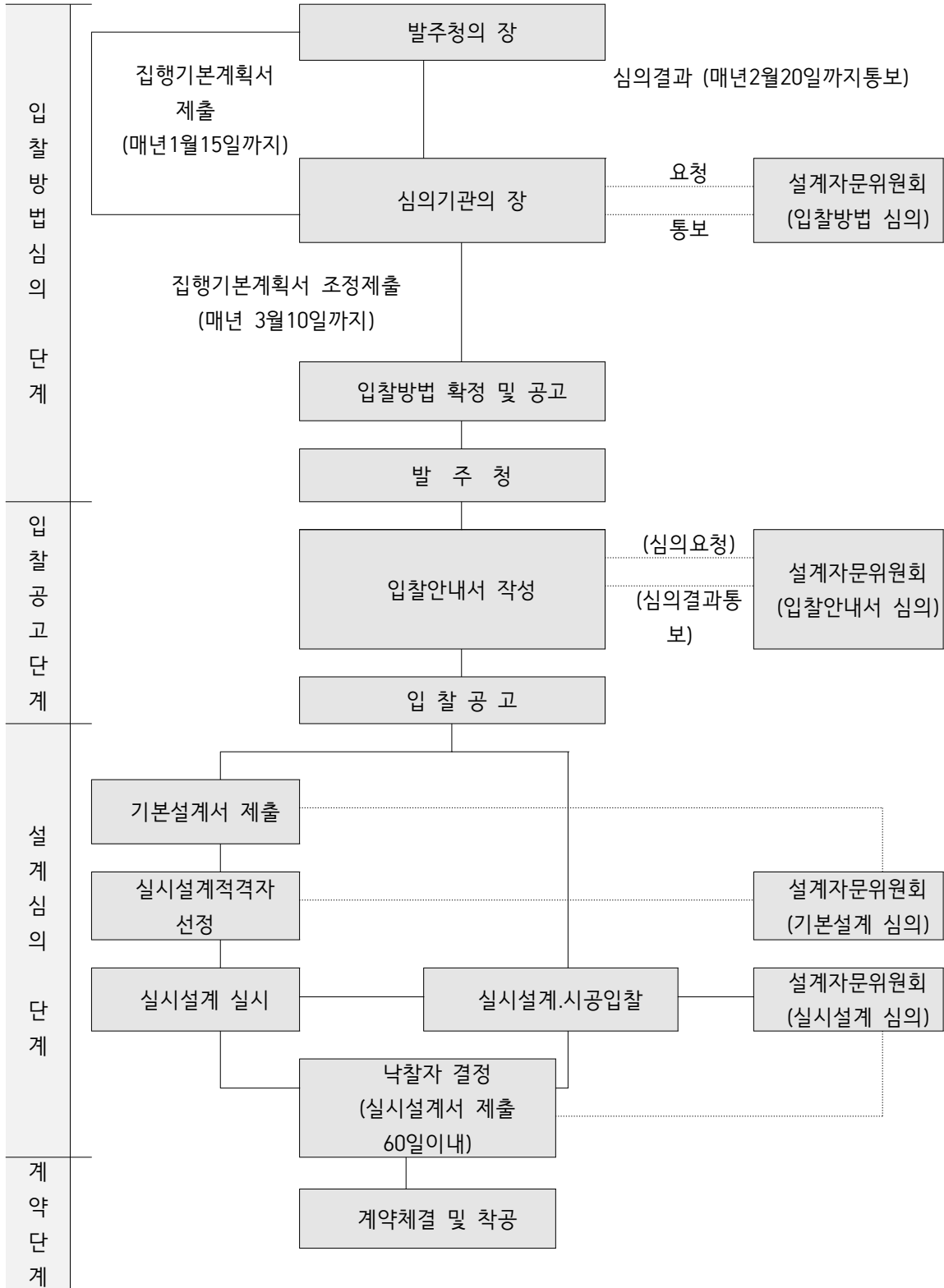


그림 73.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발주절차

□ 현상설계와 턴키방식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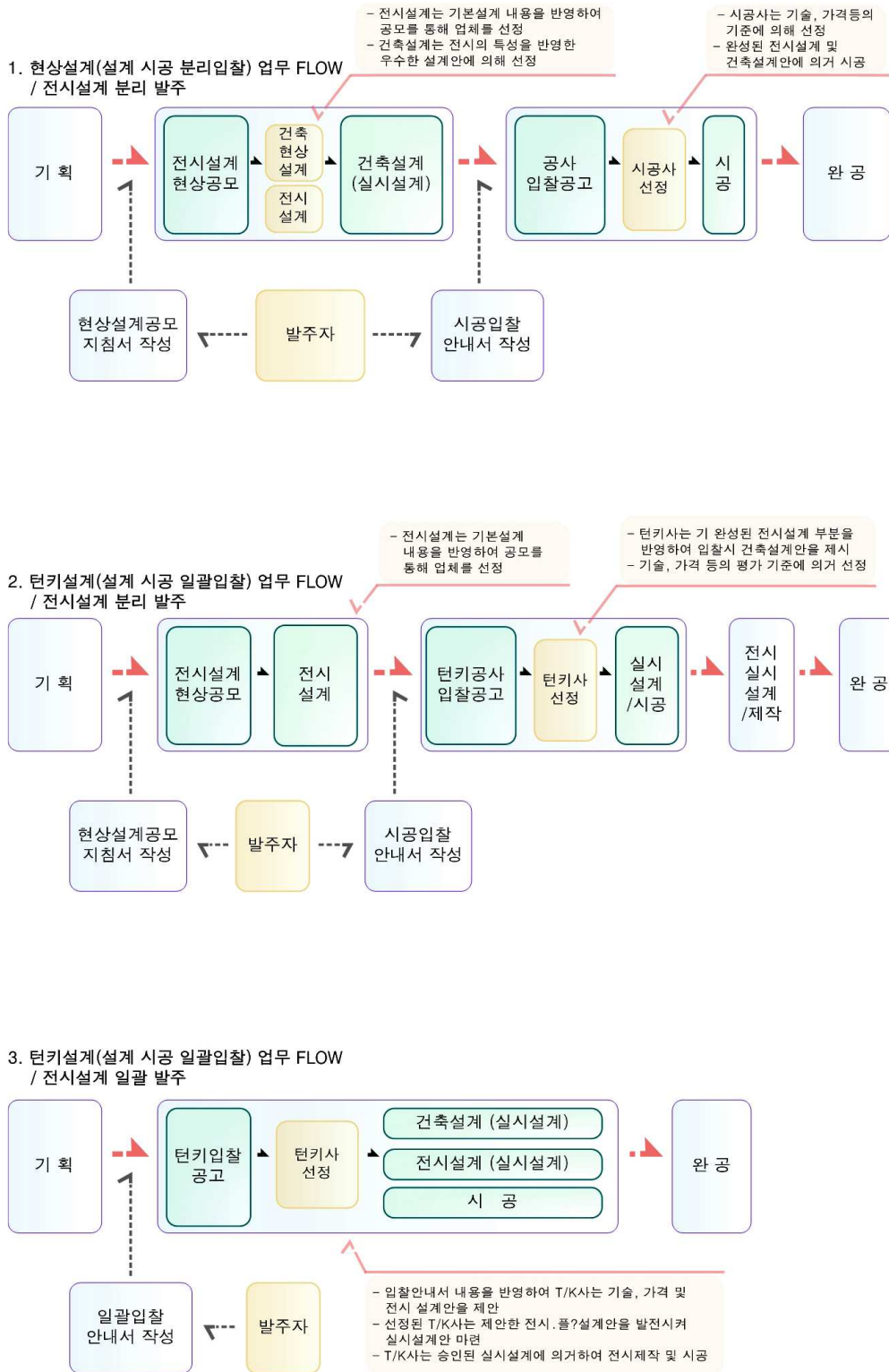


그림 74. 현상설계와 턴키방식 비교검토

○ 현상설계와 턴키방식 비교검토

구 분	현상설계 (설계.시공 분리입찰)	T / K (설계.시공 일괄입찰)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훈령492호)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의 설계의도를 명확히 파악한 우수 업체 선정 가능 -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아이디어 유도 가능 -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성이 확보된 작품평가 가능 - 설계기간중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변경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변경 없이 시공가능 - 일괄 책임에 의한 설계, 시공으로 책임한계 명확 및 보증가능 - 일괄시공업체가 설계 및 시공 품질을 보증 -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구법적용과 시공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 설정 -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관한 경제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물 과다 요구 시 일부 작품성이 뛰어난 소규모 영세업체 참여곤란 (초기비용) - 계약관리가 복잡하며 중복으로 인한 관리비 증대하여 총공사비 상승 및 공시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기술, 경험 부족사 낙찰시 품질 저하 - 관리 및 조정이 용이하지 못하며 관리가 안될 경우 공사일정관리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 전에 건축주 요구사항을 확정짓는 기본계획, 입찰 안내서 작성 등 별도과정이 필요한 관계로 추가예산 및 인력필요 - 별도의 관리 및 추진부서 필요 - 결정된 설계안에 대한 설계변경 난이 - 대형 시공사 및 설계사 위주의 참여로 (보통 2~3개) 다양한 작품 기대 곤란 - 설계자의 창의성이 결여될 소지가 많음 - 건축주의 충분한 의사반영이 미흡

표 211. 현상설계와 턴키방식 비교검토

○ 전시설계 발주 비교 검토

구 분	건축설계.전시설계 분리입찰	건축설계.전시설계 일괄입찰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설계 분리입찰로 독창적이고 발주자의 설계의도를 파악한 우수업체 선정 - 건축과 분리발주로 인하여 건축설계 당선후 건축기본설계에 맞게 전시기본설계조정 필요 (기존 전시개념 변경 우려) - 전시설계 제작 공사비 증가 우려 - 건설설계를 현상설계로 진행시 경쟁력 있는 전시업체 선정에 어려움 (추후 시공까지 고려한 전시설계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의 설계의도로 설계된 전시업체가 선정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건축설계와 같이 진행하므로 추후 전시설계 변경 필요 없음

표 212. 전시설계 발주 비교 검토

4) CM 프로그램

□ CM 프로그램의 정의 및 체계

○ 정 의

"건설사업관리(CM)"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항)

○ 계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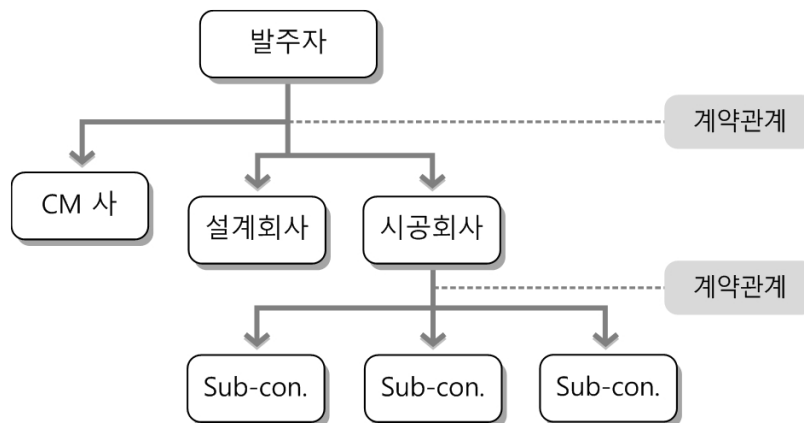


그림 75. 계약체계

○ 특성

-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26조 1항)
- 기존의 전통적인 건설사업 조달방식의 한계 (가격위주, 경쟁체계, 사업 참여자간 이해 관계 대립, 설계시공 분절 등)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식 도입
- 발주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공사관리를 통하여 품질 향상, 원가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의 필요성 해결

- 대규모 복합공종의 건설공사
-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건설공사
-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2항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업무범위



그림 76. 업무범위

□ CM 관리방식 장.단점

○ 설계.시공 분리발주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 발주되는 설계/시공을 CM사가 통합관리 - 설계VE 등 관리기술로 공사비 절감효과 - 설계문제점 사전 예방 가능 - 가격경쟁을 통한 사업비 절감 - 설계관리 및 기성관리 용이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사 각각 선정기간 소요 - 시공자 선정 후 사업비 확정 - 공사기간 및 사업비 증가 요인 등 - 발주자 및 CM의 관리업무 증대

○ 설계·시공 일괄발주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시공자 선정 후 관리업무 감소 - 설계단계에서 사업비 및 시공성 적극 고려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위험 감소 - Fast Track 적용으로 공기단축 가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준비, 설계심의 등 선정절차 복잡 -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 적용 어려움 - 시공단계에서 공사비 절감 여지 축소 - 발주자의 최소 관여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 잠재

□ CM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발주방식별 사업추진공정표

-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 (현상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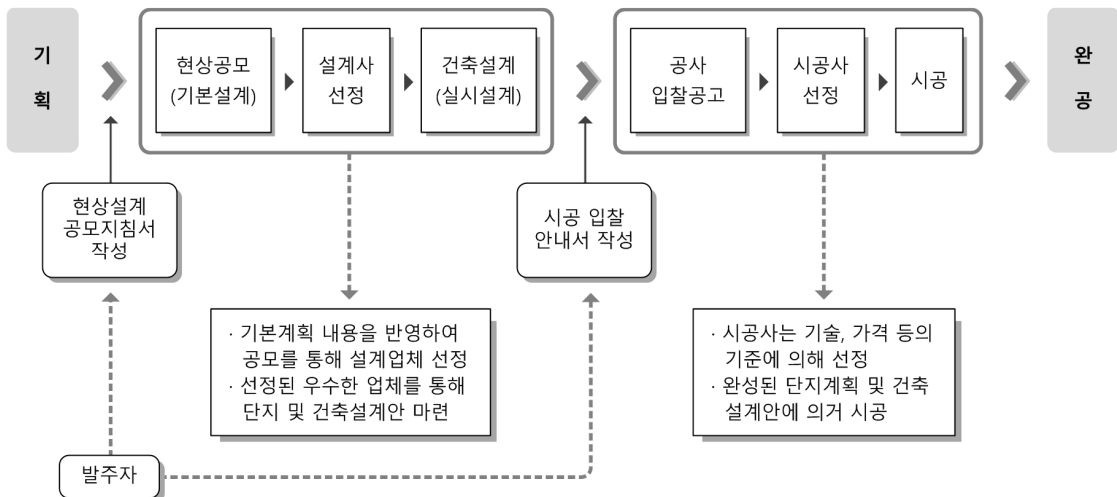


그림 77.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

-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 (Turn 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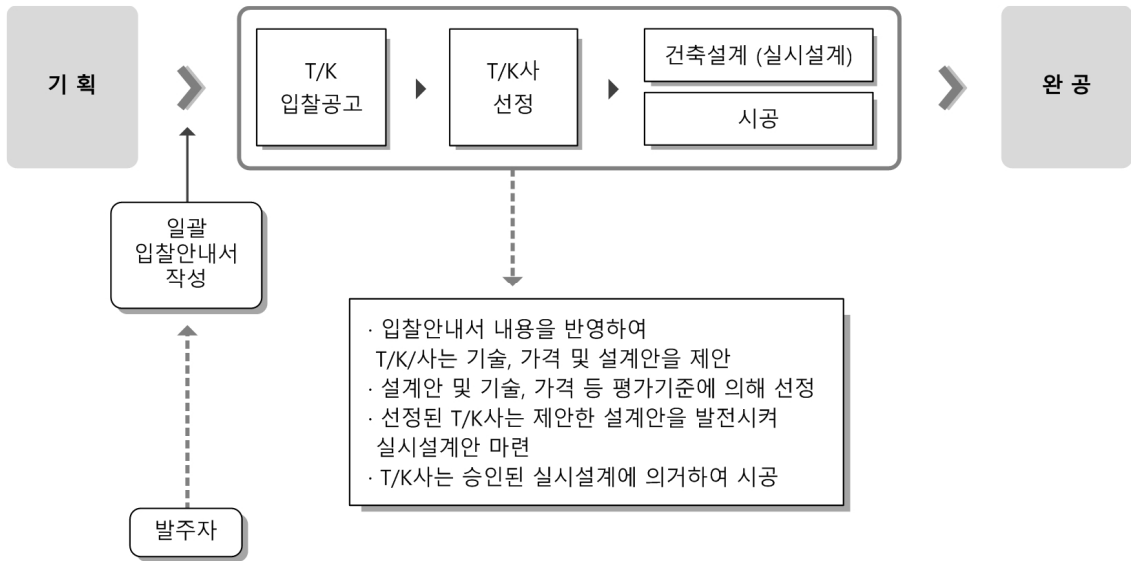


그림 78.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

-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 + CM관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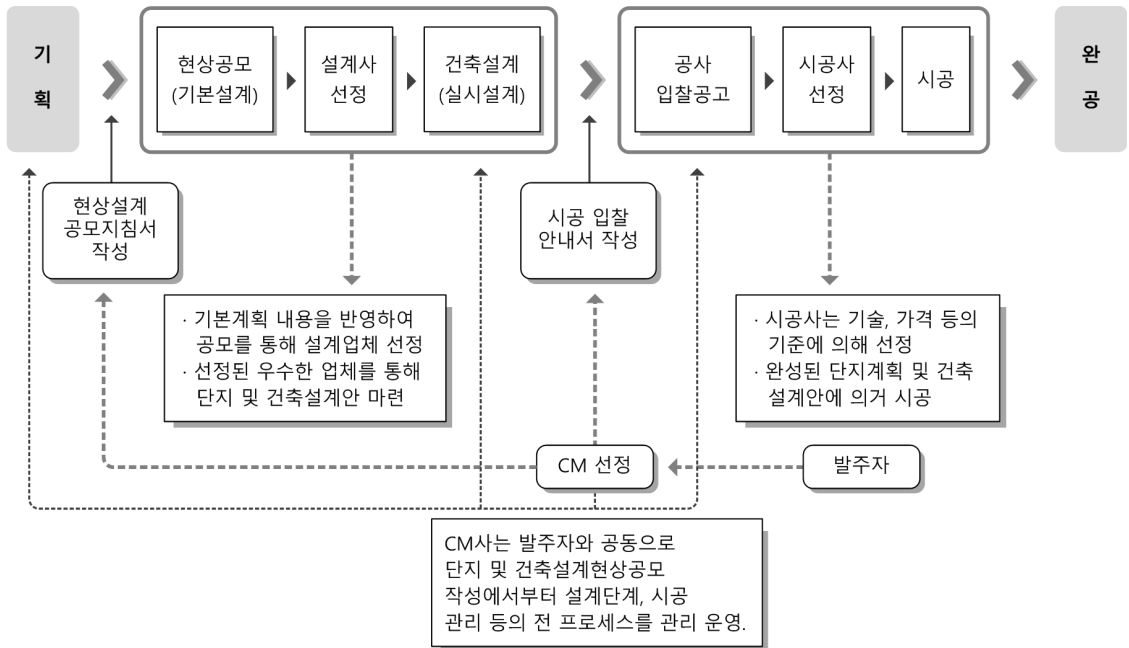


그림 79.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 + CM관리방식

-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 + CM관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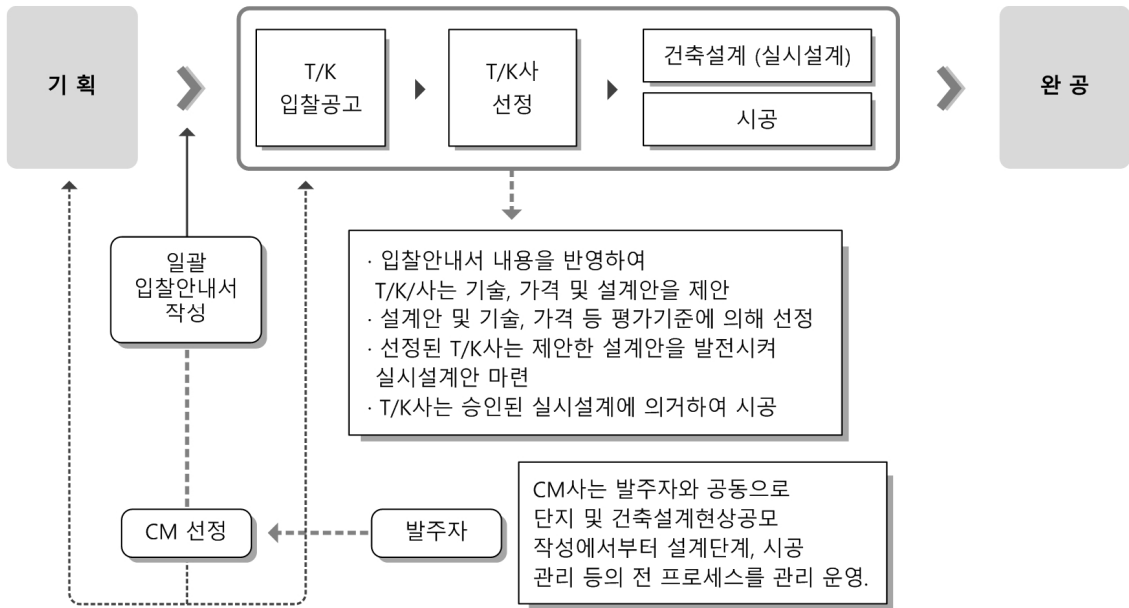


그림 80.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 + CM관리방식